

이었다. 홀로코스트 유대계 생존자 모임 및 미국 연합(American Gathering and Federation of Jewish Holocaust Survivors)은 1980년 여러 홀로코스트 생존자 기구들을 위한 대표 단체로 설치되었으며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설립된 홀로코스트 유대 어린이 생존자 국제 네트워크도 주목할 만하다. 이 네트워크는 유대계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가진 전 세계의 2 세대 단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해 왔다.

이스라엘 기반의 박애주의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신 이스라엘 펀드나 미국에서의 기아퇴치를 위한 Mazon, 국제적인 사회 서비스 니즈 충족을 위한 American Jewish World Service, 반유대주의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 위한 Wiesenthal Center와 환경 및 유대계 삶 연합, 유대 여성들의 다양한 문제를 탐구하고 유대 조직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연구를 후원하는 Maayan, 문화적 표현의 새로운 도구를 찾고 있는 조슈아 벤처 및 미국에서 사회와 경제적 니즈 충족을 후원하는 정의를 위한 유대 펀드 등이 유대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기구들의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대인들의 종교적 표현은 1960년대 말에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에 설치된 세 개의 havurot(기독 단체)로 시작된 유대계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왔다. 하부라와 하부라 이후 시대에 있어서 제도적인 표현은 개별적인 집회나 비정기적인 하부랏 모임이외에는 없었다.

### 3.4 다른 나라에서의 유대인 기관들

#### 3.4.1 캐나다

캐나다에서의 유대인 기관은 강력한 국가 거버넌스와 견전한 지역 및 지방 파트너쉽을 통하여 잘 조직화 되어있다. 그러나 기관에 있어서 1990년대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대 민간 기부자들이 기부수단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으로 바꾸면서 독립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주 자금원이 크게 바뀌는 것은 미국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변화는 기부 구조의 변화를 의미했지만 캐나다에서 이는 기부구조 뿐만 아니라 기부구조변화가 이 주요 기부자들에게 걸맞게 주안점과 어젠다를 바꾸게 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UIA/캐나다 연방은 자금을 모집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모금원이다. 지역 및 이스라엘의 니즈 충족을 위하여 모금활동을 펼친다. 기능적으로는 미국의 UJC와 유사하며 1998년 6월 United Israel Appeal of Canada Inc.와 캐나다 유대 연방간의 합병이 있었고 이는 미국에서 1999년 UJA와 미 연방간의 합병과 유사했다.

정치, 국방 및 공동체 대변인 영역에 있어서 캐나다의 기관은 전통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어 왔다(미국에서 보였던 다양한 목소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20세기에 걸쳐서 목소리를 높였던 기관은 1919년 설립된 캐나다 유대인 총회(Canadian Jewish Congress)였다.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고 안보와 대표제를 위한 공동체의 도구로 활동했으며 오타와를 기점으로 캐나다 프로빈스에 지부를 두었고 UIA/캐나다 연방으로부터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 영역에 있어서 2차적인 목소리를 냈던 기관은 1975년 설치된 Bnai Brith 캐나다이며 CJC 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독립적으로 자금을 받고 있다. CJC와 Bnai Brith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경쟁 관계였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옹호에 있어서 캐나다 이스라엘 위원회가 캐나다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CIC는 캐나다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캐나다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CIC는 의회, 상원의원, 연방 공무원, 프로빈스 및 지자체 정

부, 언론인, 학자와 캐나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한다. CIC도 UIA/캐나다 연방에서 자금을 후원 받는다.

그러나 2001년 이래 그리고 최근 일련의 봉기사태로 거버넌스, 책임성 및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촉발되고 캐나다의 유대인 공동체 안의 전반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일부 영향력 있는 캐나다의 유대인들은 기존의 구조가 반유대주의를 퇴치하고 캐나다 안에서 옹호론을 이끌어 내기에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옹호론을 보다 강력하게 펼치고 안보와 공동체 대변인을 잘 수행할, 미국의 AIPAC와 유사한 새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긴급사태 내각이 구성되었고 후에는 Canada Council for Israel and Jewish Advocacy로 불리게 되었다. 일부는 이미 공동체의 삶에 개입을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새 기관은 현재의 UIA/연방과 자금을 지원 받는 정치, 국방 및 옹호 단체들로부터 자금을 가져오겠다고 위협했다. UIA/연방은 CIJA에게 이 분야에 대한 권한과 힘을 준다는 조건 하에 창설된 지 6개월 후에 대표 기구 하에 CIJA를 가입시킬 수 있었다.

CIJA의 가입으로 CJC는 권한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고 구조조정으로 CJC 지도층과 변화를 실제 이행하는 중 간에 의견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독립적인 Bnai Brith 캐나다는 비교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고 현재는 CIJA와 CJC에게 있어서 경쟁적이지만 세력이 약화된 기관으로 남아 있다. 반면에 CIC는 CIJA의 책임 하에 통합이 되면서 자금이 CIJA를 통해 지원되고 활동을 CIJA로부터 감독 받는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전반적인 공동체 안의 효과성과 불일치의 영향에 더해서 이 변화가 정체성과 연계성 문제에 가져 다준 여파가 무엇인지가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다. 엄청난 양의 자원과 기관의 포커스가 이스라엘과 유대 계 옹호로 옮겨가면서 캐나다의 유대인 공동체 내부 문제들도 바뀌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민족과의 결혼 증가와 같은 캐나다에서의 동화 초기징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현재 캐나다에는 유대계 정체성과 연계성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의 전미 유대민족 연구와 유사한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가 엄청난 재원과 함께 유대인 공동체의 내적 및 외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4.2 유럽

##### a. 범 유럽 기관들(Pan-European Organizations)

유럽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유럽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대표되는가이며 두 번째 문제는 새롭게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유럽연합을 대변할 하나의 목소리가 존재하는가이다. 유럽 기구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유럽 거버넌스 역학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역학관계는 어떤 기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떤 기구는 그렇지 않은가에서 잘 드러난다. 그 해답은 이사진이 서로 얹혀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각 집단의 지도층들의 힘에 좌우된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오랫동안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조율해온 유럽 유대인 공동체 회의(European Council of Jewish Communities)이며 이 회의는 JDC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Joint의 활동은 서구유럽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활동도 최소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에서 미미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동유럽과 FSU 국가들에서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한다. JDC는 ECJC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Joint는 동유럽과 구 소련 지역,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자금을 위해 Claims Conference, UJC 및 Keren Hayesod에 의존을 해왔다. 독일에 있는 유대계 자산매각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대부분은 동유럽에서의 JDC 프로젝트 지원에 쓰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구성기관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대항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없

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유사하게 반유대주의의 증가, 공격적이고 범위가 확대되는 모슬림 세력 및 언론에서 비쳐지는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의 문제를 다룰 범 유럽적인 노력도 전무한 상태이다.

유럽에서 핵심적인 유대계 기관으로는 유럽 유대인 총회(European Jewish Congress), 유럽 유대인 공동체 회의(European Council of Jewish Communities), 세계유대인 총회(World Jewish Congress), 전미 유대인 공동 배분 위원회(American Jewish Joint Distribution Committee)와 미국 유대인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가 있다. 유럽 유대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기구들(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와 같은)은 야망과 목표 그리고 실제 운영효과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에도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앞의 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유럽 유대계의 권력흐름과 거버넌스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파리에 기반을 둔 유럽 유대인 총회는 외교, 정치, 공공문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유럽기관 중의 하나이며 이 문제들에 있어서 유럽 유대계를 대변한다. 1986년 설립되어서 세계 유대인 총회의 자치 지부를 구성하고 있다. EJC는 이전에는 세계 유대인 총회의 유럽지부 였다. EJC는 각 EU국가와 스위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다비아, 발트연안국, 크로아티아, 구유고슬라비아, 지브랄타, 터키 및 모나코의 38개 유대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대부분이 대표기구). 2000년 반유대주의 공격의 분출 아래로 EJC는 특히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일반적으로 모 기관인 세계 유대인 총회와 함께)에 적극 참여해 왔다. 활동은 EU의 다양한 기관 및 국가 수반과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ECJ는 또한 카톨릭교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었다.

유럽 유대인 공동체 회의(ECJC)는 1968년 설치되어서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 서비스를 유럽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을 조율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68년 서유럽 공동체에 의해 복지와 교육 문제에 대해 동유럽 공동체와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90년대에 공산권이 몰락한 후, 구 공산권 지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유대인 공동체기관이 ECJC에 가입하였다.

ECJC 구성의 변화로 목표도 바뀌게 되었다. 복지, 교육 및 문화 제공에 더해서 나치에게 빼앗겼던 유대계 자산을 되찾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04년 ECJC가 후원한 유럽 GA이래로 본부가 런던으로 옮겨졌다. ECJC에 대한 주요 자금지원은 미국 유대인 기관들로부터 나오며 이 기관들과 함께 ECJC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공동 분배기구, 미국 유대인 공동체, Bnai Brith와 Presidents Conference가 그런 기관들이다. 2004년 초에 ECJC는 모든 서유럽, 중유럽, 동유럽 국가, 일부 구 소련 국가(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터키 및 튜니스를 포함한 41개국 출신 7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로코는 그 당시 옵저버의 위치를 부여 받고 있었다. 기관들은 단일하지가 않았고 서유럽이나 중유럽 기관들은 대부분 복지 기관이었다. 오직 소수의 국가만이 하나의 단일한 대표 기구나 여러 기관들로 대표되고 있었다. ECJC와 공동 분배 위원회 간의 공생관계는 이 두 기구가 공동 개최하고 2004년 5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3차 유럽 유대계 총회에서 잘 드러났다. GA는 JDC가 ECJC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이는 도 다른 도구이다. GA는 아직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완전한 정책 및 의사결정 기구가 되지는 못했다.

유럽 랍비 회의(Conference of European Rabbis, CER)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태리, 러시아의 랍비 기구와 20개국가의 민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프랑스의 대표 랍비가장을 맡고 있다. 유럽 랍비 회의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매꾸었고 1980년대에는 강력한 지도층 덕에 교황 바오로 2세의 로마 대교회당 방문과 같은 분수령이 되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성

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CERs은 공동체의 종교와 할라카 문제를 다루고 일년에 한 번 모인다. 다양한 유대인 기구와 함께 특정 할라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 취리히에서 아구넷(남편의 실종이나 거부로 여행을 할 수 없는 버려진 여성들) 문제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유럽 문제에 대한 연구의 질과 그 특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대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Jewish Policy Research, JPR)이다. 이전에는 유대연구소(IJA)로 알려졌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IJA는 유대 인구분포, 문화, 반유대주의 및 유럽 유대계와 관련된 정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정치적 공백상태를 메우고 있는 또 다른 기관이 미국 유대인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이다. AJC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어젠다를 다루었는데 이는 위원회의 20세기 업무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유럽지부는 유럽 정부에 대한 접근과 수행한 많은 임무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고 인지도를 쌓게 되었다.

AJC는 많은 서유럽 및 중유럽 국가 관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유대 지도층에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 b. 지역 유대인 위원회 (Local Jewish Communities)

유럽의 유대인 위원회 대부분은 대표 랍비 밀의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유대인 기관과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유대인 위원회는 공공 문제 업무에 있어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이사회" 모델은 영어권 국가들(예를 들어 영국 유대계 대표 이사회)에서 발견되고 프랑스의 CRIF, 이태리의 UCEI 및 다른 국가 위원회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오니스트 연방은 대부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Jewish Care와 같은 지역별 대규모 복지 기관도 몇 개 존재한다.

프랑스의 유대계에는 3개의 대표 기관이 있다. Conseil Représentatif des Institutions Juives de France (CRIF)는 공식적으로 모든 프랑스 유대인 기구를 프랑스 정부에 대표하는 기관이다. 1944년 비시 정권 시대에 설립되었다.

Concistoire Israélite de France는 유대인 공동체의 종교 및 의례 행위를 담당하고 있다. 랍비 대표들, 랍비 법정, 랍비 세미나를 감독한다. 1808년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Fonds Social Juif Unifié는 모든 유대인 공동체의 문화, 교육 및 사회문제를 조율하고 감독한다.

영국에 있는 주 대표 기관은 1760년에 설치된 영국 유대계 대표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모든 종파의 교회당 대표 및 다른 기관, 이의 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 최근에는 Jewish Care 대표가 가입하기도 했다. 대표 이사회는 영국 유대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공동체를 대표해 발언을 한다.

교회당 연합(United Synagogue)은 대 런던에 있는 64개 교회당과 지역의 연계된 교회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대의 교회당 집단이다. 주류 정교이다. 대 런던의 현재 대표 랍비는 조나단 사스 교수로 공식적으로 교회당 연합의 총재이자 영국 유대계의 영적인 지도자이다. 대표 랍비들과 함께 Beth Din(랍비 대표 법정)이 있으며 법정은 주류 유대인들의 종교법정 역할을 한다. 또한 저명한 것이 United Jewish Israel Appeal로 이스라엘을 위한 자금 모집 활동 뿐만 아니라 부흥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독일 유대계는 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된 86개의 공식 위

원회(gemeinden) 안에서 조직화 되어 있다.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은 독일 유대계 중앙 위원회(Zentralrat der Juden in Deutschland)이다. 위원회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정부 관료들과 상호 작용을 한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폴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스칸디나비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 유럽의 공동체는 주로 하나의 중심 기관이나 대표 랍비가 있는 서구의 기준 모델을 따른다. 많은 국제 기관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활발히 참여한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위에서 소개한 JDC, 로더 재단, World Ort, 챠바드이다.

230여 개의 유대인 기관들이 러시아 연방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다양한 유대 대표 기관 밑에 존재하는 데 이러한 대표기관 중의 하나가 러시아 유대계 총회(REK, Rossiski Evreiskii Kongress)이다. 총회는 1996년 1월에 부유한 유대계 그룹에 의해 설치되었다. 활동의 대부분은 교육과 복지 분야이다. 대표기관의 한 지부가 KEROOR(Evreiskih Religioznih Organizatzii I Obedinenii Rossii)인데 이는 러시아에 있는 유대 종교기관과 유대인 공동체 총회이다. 러시아 유대인 공동체 연방(FEOR, Federatzia Evreiskih Obschin Rossii)은 1999년 말에 챠바드 운동이 채택한 원칙과 러시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인해 유대계 거부인 레브 레비에프가 설립하였다.

2002년 초반에 유럽 아시아 유대인 총회(EAJC, Evroasiatski Evreiskii Kongress)로 알려진 또 하나의 대규모 대표 단체가 카자흐스탄의 거부인 Aleksander Mashkewitz의 후원과 이니셔티브로 설치되었고 이 기관은 소련, 동남 아시아 및 호주의 유대인들을 세계 유대인 총회에서 대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20개 지역에 대략 210개의 유대인 기관과 공동체가 우크라이나에 등록되어 있다. 이 기관과 공동체들은 대표 기관 하에 결집하고 이러한 대표기관으로는 유대인 공동체 연방(Federation of Jewish Communities), 유대인 기관 및 공동체 연맹(Association of Jewis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유대 연방(Jewish Confederation)이 눈에 띤다.

### 3.4.3 남미

남미의 유대계는 문화, 스포츠, 공동체 센터, 교회당, 보건 및 복지 기관, 청소년 클럽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진다. 각 국가마다 대표기관이 있고 동시에 남미 유대인 총회가 세계 유대인 총회 지부로써 모든 남미 공동체를 대표한다. 주요 활동은 반유대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유럽과 달리, 공동체 센터는 조직 정치와 활동에 있어서 공동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 활동과 컨츄리 클럽도 활발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르헨티나 유대인 기관 대표단(Delegación de Asociaciones Israelitas Argentinas, DAIA)이 아르헨티나 당국에서 유대인 공동체와 기관을 대표하는 주요 유대계 정치 기관이며, 아르헨티나 유대계 상호 지원 연맹(Asociacion Mutualista Israelita Argentina, AMIA)이 있다. 이 기관은 아시케나지 공동체의 종교, 사회 및 문화활동과 구호 및 복지 문제에 참여한다. 시오니스트 연방(Zionist Federation)과 그 기관들은 아르헨티나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브라질에서 공동체 구조는 연방의 성격을 띠고 있고 브라질의 연방 구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의 각 주에 유대인 기관 연방이 존재한다. 브라질 유대 연방(Confederacion Israelita do Brazil, CONIB)은 브라질의 대표 기관이다. 약 200여 개의 집단, 기관 및 기구가 시오니스트 활동, 교육, 문화 등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유대계의 활동은 헤브라이카(Hebraica)와 같은 사교 클럽에서 이루어진다.

멕시코에서는 중앙 유대인 위원회(Comite Central Israelita)가 모든 공동체의 정치 이익을 대변하고 기관의 활동을 조율하고 외교 관계를 담당한다. Tribuna Israelita는 중앙 유대인 위원회의 운영 기구이다. 공동체와 일반 대중과의 연계를 키워 나가고 홍보를 담당하며 대학 및 정부 사무소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반유대주의를 모니터링한다. 멕시코 시에 있는 거의 모든 유대인이 유대 스포츠 센터(Centro Deportivo Israelita) 회원이다. 회원 수는 멕시코 전체 유대인의 70%에 달하는 2만 7천명이다.

### 3.4.4 아프리카와 호주

호주는 주 기반의 국가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에도 반영되고 있다. 대표 위원회나 대표 이사회 및 포괄적인 공동체 인프라가 대부분의 주와 도시지역에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공동체 구조가 취약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개의 주요 국가 기관으로는 호주 유대인 행정 위원회(Executive Council of Australian Jewry, ECAJ), 호주 이스라엘 문제 위원회(Australia-Israel Jewish affairs Council, AJAC), 시오니스트 연방(Zionist Federation)이 있다. 호주 유대인 행정 위원회는 대표 기관으로 주와 각 지역의 대표 이사회 및 WIZO와 Bnei Brith와 같은 공동체 기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AJAC는 주요 공공문제 담당 기관이다. ZFA는 지역의 시오니스트 위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시오니스트 활동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United Israel Appeal of Australia은 유일한 국가 자금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

남 아프리카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중앙 기구는 남아프리카 유대 대표 이사회(South African Jewish Board of Deputies, SAJBD)이며 공동체의 대표 총회의 역할을 하고 당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SAJBD는 아프리카 유대인 총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공동체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총회는 공동체의 문화, 종교 및 사회활동을 조율한다.

정교 교회당 연맹(Union of Orthodox Synagogues, UOS)은 대부분 정교 집단의 대표 기관이다. 대표 랍비를 임명하고 Beth Din과 소속 지부의 자금을 지원한다. 공동체 안보 기구(CSO)가 자산과 사람에 대한 위협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가장 저명한 시오니스트 기구는 남아프리카의 시오니스트 연방(Zionist Federation of South Africa, ZF)으로 한 때 공동체의 주요 유대인 기관이었다.

## 3.5 분석 및 결론

이차 대전 이래로 디에스포라의 유대계 조직 구조는 더 응집력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호주, 브라질, 미국은 예외) 명확하게 정의된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강력하지만 대표적인 소수의 중앙기관과 대표 랍비가 있다. 심지어 강력한 지역적 조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미국 유대인 공동체도 국가 차원에서 Presidents Conference, AIPAC, UJC 및 AJC와 같은 대표 기구의 소수 회원과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는 유대인 공동체의 결속이 부족하다. 국제적인 유대인 기관이 많이 있으나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사실 유대인들이 전세계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이익이나 관점이 다양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고 그 결과로 강력한 글로벌 구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쇼아 생존자 보상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선호되는 전략과 목표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이에는 보험, 스위스

은행 계좌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거액 기부자들이 시스템 외부에 자신들의 기관을 설립하고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공동체의 어젠다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관의 효과성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도력이다. 일부 주요 기관은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올라섰고 어떤 기관들은 지도력이 약한 이유만으로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도력 발전 훈련 시설이 있는 북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지도력은 더욱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유대인들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자가 조직화 되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이 시스템은 일부는 중앙식이고 대부분은 지역과 분야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대인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 유대인의 글로벌 모임인 유대인 기구와 세계 유대인 총회(유럽, 남미와 FSU에 지부 네트워크와 함께)가 글로벌한 무대에서 정치기관으로 활약하는 기관들이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이나 다른 어떤 기관도 완전히 유대인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Bnei Brith, Keren Hayesod, WIZO, HIAS, Conference on Material Jewish Claims against Germany 및 World Jewish Restitution Organization (WJRO)과 같은 많은 국제 유대 민족 기관들도 모두 특정 문제와 영역에 관한 기관들이다.

UJC, 주요 유대 민족 기관 장 회의, AIPAC, ADL, 공동 배분 위원회, 미국 유대인 위원회, Hillel과 Hadassah와 같은 미국 기관들은 글로벌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디에스포라와 연계된(유대와 시오니스트 교육, 알리아, 종교적인 삶, 박애주의 교육에 주안점을 둔) 이스라엘 기반의 기관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초점을 둔 디에스포라 중심의 기관들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UJC의 설립과 함께 해외 니즈 평가와 지불 위원회(ONAD)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한 때 특권으로 여겨졌던 지위가 격하되었다.

다양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기관 및 활동을 통합시키는 공통의 세계적인 유대계 어젠다가 부족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미디어에서의 묘사, 반유대주의, 구 소련연맹과 동유럽에서의 유대계 삶의 재건, 보상 및 배상금 배분 등과 같은 주요 문제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공통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과제와 정책은 상당히 다르고 목적과 이상도 아주 다르며 다양한 기관들 간에 이해의 상충이 일어나고 있다. 디에스포라 기관들은 유대계 영속성, 유대계 교육, 동화, 복지 서비스 같은 공동체의 공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종교 기관들은 가장 세계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세계 지향적인 기관들 중의 하나이다. 정교연맹(Orthodox Union), 쳐바드, 개혁 및 보수파 운동은(Reform and Conservative movements)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 각각의 종교 스타일과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한다.

전통적으로 편협한 성질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아닌 일방향의 박애주의에 기반을 둔 이스라엘 디에스포라 연계 모델을 다루려고 하는 시도가 행해져 왔다. 이 모델을 수정해서 모든 참여자의 기부가 서로에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상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행해졌다. 최초로 성공을 거둔 파트너쉽의 사례로는 1980년대 초반의 부흥 프로젝트가 있는 데 이 프로젝트는 그 후에 파트너쉽 2000으로 대치되었다. 이 파트너쉽은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자매 공동체 네트워크 건설에 기반을 두었다. 다른 성공사례로는 People to People, 이스라엘 경험(Israel Experience)과 출생권(Birthright)이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범 유럽적인 유대계 로비 및 대표기관(유럽 유대인 총회와 유대인 공동체 유럽 위원회 이외의)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이며 특히 유럽연합의 확대가 중동지역의 문제와 반유대주의 타파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기관 다원주의와 중요한 큰 구조의 부재로 다양한 분야와 이익이 표출되고 이를 더 촉진하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치열한 경쟁, 조율의 부족, 복잡한 상호 작용 패턴은 세계적인 유대

계 기관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저해한다.

#### 4. 전략적 도전: 종합적 평가<sup>91)</sup>

##### 4.1 전체적 균형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여 유대인 사회의 발전으로 향하고 있다.

- 정신적 가치와 사명감의 힘
- 유대인적 인면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 부드럽고 강한 힘
- 뛰어난 인적 자원
- 유대계 교육의 향상
-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
- 경제적 자산과 인류애
- 문화적 창의성
- 놀라운 자치 제도 구조
- 혁신적인 리더십

그러나 쇠락의 방향으로 향하는 반대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우선 적인 요소는 이스라엘 안보 위협과 세계 각 곳의 유대인 대다수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우리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많은 이들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고, 이슬람 과격 근본주의와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반유대, 반 이스라엘 집단으로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다.

또한 걱정스러운 것은 극심한 의견 충돌과 함께 인구적 동향과 사회, 이념적 변화로 인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 층의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고 싶어한다고 한다. 비록 이 조사가 그들의 구체적인 의도가 아닌 태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연구 결과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이스라엘의 젊은 층의 유대인들의 자세는 이스라엘 밖에서 많은 수의 유대인 젊은 세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잃고,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절대적, 상대적 기준 모두에서 유대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유대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다른 민족과의 결혼, 지역사회 활동의 참가 저조, 탈근대적 가치들도 위험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추세를 통합할 때 여기서도 논의 되듯이 다음과 같은 전체적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유대인의 미래는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하지만 유대계의 생존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단호하며 대규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장기적인 대정책을 만들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온 다층적인 결과를 짧게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대인의 과제 중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91) 이 부분은 Yehzekel Dror, Sergio DellaPergola, Michael Weil, Morton Weinfeld, Amos Gilboa이 담당하였다.

- 지금도 이미 소수인 이란과 같은 곳에 있는 유대계 사회를 구하기 위해 행동하고 세계 유대인의 안보를 보장

- 유대인의 주권을 관리하고, 유대인의 안보와 현실적 정치 이해관계 영역의 중요한 자산을 보존하는데 있어서의 균형을 찾고, 계몽된 유대계의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며,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의 관계를 심화한다.

-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보를 이룩한다.

- 유대인의 문화적 인구적 영속성을 복돋고, 유대인의 정체성, 지식, 자긍심, 참여를 강화하며, 유대인의 끈질김과 인구 대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감당해낸다.

- 유대인의 단합과 단결성을 이용하고, 유대인간의 내부 대화와, 상호 이해와 관용, 합의 구축, clal Israel, 유대 가족의 정신에서 공동의 행동을 권장하면서 유대 민족의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의 다양한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다.

-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에 맞서고 유대 민족의 입장을 설명하며, 과거부터 존재하였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불관용과 물리적 공격의 모든 형태에 맞선다.

- 유대민족의 가치를 알리고 유대 민족의 혈통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며 유대계가 세계 사회의 복지와 계몽에 기여하는 활동인 Tikkun Olam에 참여한다.

- 이러한 과제를 이루는데 앞장설 최고의 유대인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의 유대인들의 이해를 통합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 4.2 유대 민족과 유대주의에 외부 환경이 미치는 영향

###### 4.2.1 중요한 사건들과 추세

외부 요인들은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유대인 세계가 안고 있는 중심적 도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추세의 영향이 5년에서 10년의 중기적 단위로 분석된다. 많은 외부 요인들은 유대인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 새로운 질병(에이즈, 사스 등)과 같은 환경 문제 또는 생물 의학적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은 유대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대계와 관련된 외부 요인은 두 가지 형태이다:

- 유대인에 대한 안보와 정체성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비 유대 세계에서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동향

- 2000년 팔레스타인 사태, 오늘로 평화 협상 결렬, 9/11, 반 테러 전쟁과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과 같은 특정 사건과 사태들이 주로 유대인들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외적인 동향들은 유대인이 속한 다섯 가지 영역에서 주로 영향을 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우려스러운 요소들이 많다:

- 유대인의 물리적 안보: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충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방과 후방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유대인들을 폭력과 증오에 노출시킨다.

-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유대인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 유대인들은 지적, 문화적, 정책 결정을 하는 우수한 계층으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주류에게 점차 인정받고 있지만 유대민족의 메세지를 뚜렷하게 전달하는 옹호자들은 아닌 경향이 있다. 사회 경제적 박탈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인 공동체의 활력: 유대인 인구의 정체와 노령화는 정체성과 결합력의 약화로 나타나며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효과

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이해를 보호하는 능력에 위협 또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 유대인의 단결과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상호 관계: 세계 유대인들의 여러 부문들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정과 사건들이 주는 압력으로 단결 의식과 단합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내부 긴장, 불화합, 경쟁이 생겨날 경우들이 있다.

- 유대인 창의성과 문화: 인상 깊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식은 인류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대계의 문화적 창의성의 놀라운 업적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러한 발전의 기반에 다음과 같은 열 두 가지 장기적 세계적 과정들이 있으며 세계 유대인들이 존재할 특정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 a. 세계 환경의 상호 의존성, 유동성, 불확실성

-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특징은 주요,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과 함께 일반적인 유동성과 불확실성이다. 지구상의 여러 면 지점에서 작용하는 세력이 세계적으로 결합되고 상호 의존하면서 유대인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여러 모순적이면서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외부적인 경향에 대한 더 큰 의존성과 함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 b. 지정학적 변화

- 하나의 초강대 국가와 함께 유동적인 세계 지정학적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아랍-이스라엘의 충돌과 같은 오랜 갈등은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나면서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 갈등의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 새로운 세계 질서는 세계의 반 테러 전쟁의 리더로 미국을 두고 미국 유대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개발 도상국 세계의 큰 부문들에 대한 세 개의 축(미국-이스라엘-유대계)간의 중요성을 불러일으킨다.

- 소련의 몰락과 그 결과는 15년이 지난 지금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주요 결과로 러시아의 유대인 이동이 있다: 러시아 연방의 인적 자본들의 이스라엘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동 유럽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부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민족 간 결혼이 증가하고, 이스라엘에서 개인의 지위와 개종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초강대국이 있는 유동적인 세계 지정학적 균형 안에서 아랍-이스라엘의 충돌을 포함한 오랜 갈등은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나면서 해결점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 갈등의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 유럽연합의 확대와 강화로 유럽 유대인들의 정치적 통합, 사회적 이동과 문화적 표현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 1일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 참여로 동유럽의 유대인 사회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효과적인 범 유럽 유대인 사회 조직을 형성할 필요와 EU의 제도적 차원에서 적절한 담화의 양식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 두 가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 아랍의 석유 자원의 주도적 통제로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방해가 되고 미국-이스라엘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이미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이란과 다른 국가들, 테러 그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유대인 인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위협의 뚜렷한 목표이다.

- 2001년 9/11 사건과 알카에다의 계속되는 영향으로 소수를 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사담 후세인 체제 붕괴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동부 전선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였다. 미국 점령의 장기적 영향은 (실질적, 잠재적 성공/실패 차원에서) 아

직 명확하지 않다.

-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경제적 정치적인 세력 강화는 유대인과 거의 관련이 없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유대인의 성서적 이미지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 c. 아랍-이스라엘 갈등

- 중동에서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는 소요는 계속적으로 역동적인 세계에서 관심을 극단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이미지와 국제적 지위에 손상을 입히고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압력을 준다.

- 팔레스타인인과의 갈등의 상승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시작에도 투영된다.

- 아랍의 전통적인 방법의 공격 능력이 약화되는 대신 비전통적인 무기가 확산된다.

- 미국의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면서 서방의 일부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유대인 사회들에 대한 적대감을 낸다.

#### d. 인구 학적 변화

-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하여 비 선진국 사회의 빠른 인구 성장과 대부분의 서방 사회들의 자연적 인구 증가의 지속적 속도 하락으로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세계의 인구 균형을 변화시킨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더욱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일반적 유럽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와 세속적 사회에서 민족적, 종교적 그룹을 이루고 있다.

- 청년층과 노년층의 극심한 불균형과는 별도로, 기존의 혁가족의 붕괴는 전통적인 기본 사회 규범에 깊은 영향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 서유럽 등의 이슬람 이민자들은 반유대 폭력을 퍼트리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노년층 사이에서 이미 존재하는 외국인 혐오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박탈로 많은 이민자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지하게 하고 현대 서방 국가에서 이슬람인으로서의 딜레마와 긴장을 낸다.

#### e. 과학과 기술

- 지식은 경쟁력과 세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다른 변화들의 주요 동력이다. 지식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 21세기 기술들은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유대인 공동체들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이는 정보의 종합과 교류, 직접 만나 인적인 교류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개발,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고 더욱 다차원적 문화 시작을 가짐으로서 가능하다.

- 새로운 기술들은 경제적인 활동, 정보, 그리고 잠재적으로 교육의 성격을 빠르게 바꿔오고 있다.

#### f. 사이버스페이스와 거리의 변화

- 사이버스페이스는 거리의 의미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제한없는, 그러나 불확실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낸다.

- 이를 통해 심도 깊은 상호 작용, 강력한 지식 사회, 비용 효과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학습 기회가 가능하다.

- 향상된 통신 네트워크는 지식의 확산, 병참 기능 강화, 세계 연결망의 강화를 통해 파괴 가능성을 높여 테러리스트들의 목적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 아이디어와 시각적 상징들에 접근하여 그 같은 기술이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돋는다.

#### g. 문화적 변화와 공동체 가치

- 공동체의 단합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더 커져가는 경향으로 개별적 문화, 공동체에의 노력과 소속감, 가족(유대 문화 포함하여)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 탈 근대 가치들은 현재의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 체제의 기본적 전제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 가족, 사회적 영역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준다.

- 서구 국가들에서 탈 물질주의와 관련된 의미를 새롭게 찾으려는 노력으로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적 움직임 내에서 정체성과 유대감을 찾으려는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더욱 이국적인 컬트와 문화를 찾아 유대교와 기독교 주류에서 멀어지고 있다.

- "타인"과 문화적 다자주의에 대한 더 큰 수용성으로 문화와 정책에서 유대교 상징과 공간들을 인정하게 된다. 그 예로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유대계 문화의 솔라 기념 행사 주간이 지정되었다.

#### h. 이슬람

- 이슬람, 특히 급진적이며 근본주의적인 형태와 서구의 주류 종교로서의 기독교 간의 "문화의 충돌" 개념이 대부분의 유대인이 거주하는 서구에서 유대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유대-기독교 간의 연합 개념이 때때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 있는 유대인들은 9/11과 이스라엘에서의 자살 폭탄 테러가 모두 근본주의적 이슬람에 의한 것으로 유사점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참여와 비참여 간의 균형 잡힌 유대인들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이슬람 내에서, 전통주의와 현대성, 세계화와 부족주의 사이에서의 분쟁으로부터 위기가 나타난다.

- 온건파 이슬람과 근본주의 이슬람 간의 갈등에서 후자가 더 힘을 얻고 있다.

- 반유대주의적 관점이 특히 근본주의 이슬람 조직에서 나타났다. 기존의 반유대주의적 이슬람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르게 지금의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아랍 분쟁을 종교적인 관점과 이념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주의를 이슬람과 서구 문명의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같은 적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기독교 세계 전체도 적으로 보고 있다. 유대주의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 깊은 갈등 속의 기독교와 얹혀가고 있다.

- 세계의 유대인 단체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방어는 "전통적인" 반유대주의적 공격보다 더 복잡하고 실질적 수단과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 I. 기독교

- 기독교 세계는 다시 이슬람계의 변화에 의해 영향 받고 있으며 중동의 인구와 공동체 정책을 통해 기독교 소수의 이해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태도와 정치적 조치들이 위험하게 섞여서 그 지역의 유대인과 이슬람의 이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기독교 세계와 더욱 관련 있는 변화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채택한 집중적인 정책에 대한 것이다. 교황이 Great Synagogue에 전례없는 역사적 방문을 했으며 1986년 로마에서 랍비 Toaff와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반유대주의에 대한 문서, 쇼아와 신 Catechism에 대한 문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재평가, 기독교 세계를 유대계 세상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여러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0년 교황의 이스라엘 방문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카톨릭계 내에서 이러한 새로운 방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간 대화의 결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복음주의 교회들(근본주의 청교도로 구성됨)은 유대교의 메시아적 신앙의 표현으로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따뜻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유대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실현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전략적인 이유보다는 전술적인 이유로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사회, 특히 미국사회에 대한 유대인과 유대교의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j. 반유대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유대인 혐오 등장

- 반유대주의적 언어와 행동은 전통적인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으로 유대인 주권 국가에 대한 인식 등 모두 유대인들의 목표, 자산, 상징을 공격하고 있다. 새로운 반유대주의적인 논쟁과 동기가 나타나고 있다: 1) "인종주의적/식민지주의적 특성"과 "팔레스타니아인들의 살해"로 인한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의 부인 2) 유대인들이 주권 정치적 틀을 형성할 권리의 정당성 부인 3) 쇼아의 부인.

- 반유대주의를 앞장서는 자들은 급진적, 좌파, 우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다. 서로 상이한 집단간의 연합은 더반 반 인종 회의에서 보듯이 반 이스라엘 주의를 바탕으로 얼마나 상이한 이해를 가진 이들이 연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반 세계화 운동의 일부 지지자들은 세계화를 국제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의 입지 강화라고 보기도 한다. 언론 매체의 때때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중동 문제에 대한 보도는 매우 복잡한 문제를 편견 있으며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만든다. 일부 학계에서 반유대주의적 색채를 띠고 반유대주의를 드러내는 것도 작은 규모지만 심각한 추세이다.

- 기존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들이 이러한 변화 뒤에 작용하고 있다. 유대인을 "타인", "다름"으로 규정하는 기독교의 적대성 과거의 약하고 박탈당한 이스라엘이라는 전통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대조되는 "강력하고 성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 유대계 이스라엘과 미국의 유대, 좌파 우파 모두가 새로운 적을 찾고자 하는 의지 이슬람의(아랍과는 다른) 반유대주의의 성장을 부추기는 유대교에 적대적인 급진적 태도.

- 이러한 경향의 결과로 유대인, 특히 유럽의 유대인들은 증오와 폭력의 대상인 그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느낀다. 유대인들의 자산에 대한 물리적 공격, 폭력, 손상이 있고 나서 유대인 공동체, 특히 유럽에 있는 공동체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퍼져나가고 있다. 자기 방어와 순찰대가 지역 사회에서 중심적인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주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 그러나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적은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떠나고자 한다. 반유대주의가 더욱 악의적이고 보편적이 될 수록 이주는 늘어날 것이다.

- 반유대주의와 이슬라엘과 관련한 유대인 혐오 현상의 새로운 형태들로 나타나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인 사회 조직이 이 새로운 현상을 막기 위해 단합하고 있다. 반유대/반 이스라엘 활동의 전방에 있는 유럽 자유주의자들의 태도에 압도당하고 난처해하는 유대인

자유주의자들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 조직과의 연계를 다시 강화하려 한다.

- 지금까지의 실증적 관찰들은 반유대주의가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인식을 부정하기 보다는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유대인 정체성으로부터 "도주"하거나 멀어질 잠재성이 존재하고 있다.

- 동시에 서구 사회에서 쇼아와 반유대주의의 상징적,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유대인을 집단적 기억의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한 공식적 정부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 k. 경제적인 세계화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작고 큰 기업 모두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각 국가 경제들은 지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으며 국제 경쟁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면서 더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세계화는 이스라엘을 경제적인 구조와 세계 유대인의 경제적인 기회에 있어서 잠재적 장점과 단점을 모두 놓는다.

- 세계화는 국제 전문화, 계층화, 사회적 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사회 정의에 세계적인 장애가 되어 폭력적이고 반 세계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 각국의 경제가 세계의 경쟁에 개방되면서 중남미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유대인의 중간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1. 글로벌 거버넌스

-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제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생겨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생겨나면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국가 안보 시스템간의 더 큰 상호 의존도가 나타날 것이다.

- UN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회원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보인다.

#### 4.2.2 기회와 도전

외부 세계의 세력들은 유대인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모두 준다.

##### 기회:

-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 군사력, 기술적 발전, 정치적 자유 등에 있어서 선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도시들에서 거주하고 있다. 디에스포라 지역의 유태인들은 교육, 소득, 주요 산업에서의 지위에 있어서 적합한 위치에 있어 유대인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정체성과 문화를 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며 외부 위협에 대비하여 유대인 사회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한다.

- 세계화는 디에스포라 사회와 디에스포라 사회와 이스라엘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네트워킹을 통해 디에스포라 사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 북미의 반유대주의를 나타내는 기존의 현상들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 서구의 유대인들과 문화적 특징들이 긍정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는 혁신과 창의성을 통하여 유대인 문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

- 유대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의사 결정의 중심에서 대표되고 있다. 그들은 세계 동향에 영향을 받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세계화의 기술적 측면이 이용되어 유태인의 이해와 문화적 활력을 높이고 세계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유대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이라크의 패전과 대 테러 전쟁은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과 도전은 엄청나다:

- 미국의 패권 주의 또는 서방의 패권주의가 전반적인 약화, 두드러지는 반미 주의, 또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결과가 작용할 것이다.

- 비 전통적인 무기에 대한 테러리스트 단체들의 접근은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 사회의 장기적 안보 강화를 낳는다. 더욱 소수의 개인들이 적은 노력과 1인 당 비용으로 더 많은 희생자를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비 서구 사회와 인구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이는 개도국의 불안정과 폭력을 촉진하고 이주로 인해 서구에 인구 압력을 줄 수 있다. 후자의 문제는 증가하는 서구에서의 인종 문제와 외국인 혐오에 따른 것이다. 중국과 인도, 핵, 화학, 생물학적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은 서구의 주도력을 약화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인구의 절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소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 유대인의 인구 이동이 세계 시장의 전문 인력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이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서유럽과 북미의 이슬람과 아랍 인구의 증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있어서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의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에 도전을 제기한다.

-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해치는 활동이 이슬람 급진주의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아랍의 다른 부문과 서구의 자유주의자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중 하나는 좌파-자유주의적인 유대인들을 소외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 유대인의 연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반유대주의는 디에스포라 유대인의 사기를 약화시키면서 계속되는 테러 공격은 이스라엘에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 탈 근대적인 개인주의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공동 사회를 역사적으로 이해된 대로 이해하지 않도록 한다.

- 종교를 넘어선 결혼, 민간과 종교계의 동성 결혼,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유대교회의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유대인 가족들의 전통적 삶에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는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정교와 비정교의 간의 긴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 유대계가 계속 접하고 있는 중심적 도전은 어떻게 외부 영향과 국제 사회에의 참여를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념의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 4.3 유대민족 내부의 주요 방향

유대계의 존재와 번영에 대한 도전은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유대인들은 인정 받을 만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생산할 수 있으며, 원리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극복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 자금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방어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미 있는 내부 상호 작용을 지지하고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세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4.3.1 영속성과 정체성

유대인은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지금도 유대 전통에 대한 충실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체성의 근본 개념은 특정 믿음과 행동에 친근감을 갖고 관련한다는 전통적인 유대인에 대한 관념에서, 점차 연락, 여행, 여정, 음악 또는 심지어는

서핑과 재핑을 통해 유대인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유대인은 대략적으로 열성 그룹과 비 열성 그룹의, 두 구분되는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열성적인 그룹은 아닌 편이다. 유대인 단체와 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유대인들이 더 넓은 사회에 통합되어가면서, 바깥을 바라보고 전통을 족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대인 사회에 대한 주요 조사들에서 나타나듯이, brit milah, bar mitzvah, 유월절 밤축제, 안식일 촛불 의식과 같은 전통적인 의식과 통파의례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계의 대의와 활동에 대한 참여는 적은 편이다. 유대인들에게 소속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유대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에 따라 그들의 여가 시간과 정신적, 문화적 관심을 충족하려 한다. 특히 유대인 조직에 대한 가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카발라를 공부한다든지 Klezmer 음악을 듣는 등 새롭고 대안적인 형태의 유대인으로서의 활동을 찾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참여를 잘 하지 않는 대다수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식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 호주에서의 최근 인구조사에서는 유대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은 보편적인 가치와 이슈와 문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지만, 분리를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하다.

소수인 열성 그룹은 특히 유대교 교도들을 말하지만 전통적인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들은 과거보다 유대민족과 관련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고 있다. 유대인 교육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유대인에 대한 성인 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대학과 같은 곳에서 유대학 연구가 성장하고 있다. 북미, 유럽,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 장학금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열성 그룹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들은 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학위를 갖고 있다), 유대 언어와 종교적 문제에 해박하다.

정교와 하례덤은 특히 수적으로나 전체 유대 사회에서의 비율로나 증가하고 있으며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에서 증가 추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신을 유대교가 아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비교적 소수를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혈통과 의미를 찾고 있다.

참여가 줄어드는 이유들은 다양하다:

- 유대인들은 이중적 충성도에 대해 더 적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장벽이 줄어들고 있다.
- 동화작용과 다른 종교인간의 결혼은 다음 세대의 상당수는 유대 민족 배경을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개인주의와 전통적 사회 규범의 절충적 해석과 수정 경향이 유대계 사회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찾는 경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전통적 가족 단위의 약화, 이혼의 증가, 편모 또는 편부 가정의 증가로 가족 중심적인 유대인 사회의 체제에 대한 참여를 약화시킨다.
- 유대인의 교육과 지식의 부재, 또는 약화는 낮은 유대인 의식을 불러온다.
- 유대인은 출생이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 유대인이라는 것은 많은 문화적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다.

- 유대인 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듈다.

동화현상과 타종교 배우자와의 결혼률이 이스라엘 밖의 많은 사회에서 증가한다. 어떤 한 의미에서 타종교 배우자와의 결혼과 일반 사회에서 유대인이 동화되는 정도는 직접적인 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모든 결혼의 절반 이상이 유대교 외의 사람과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구소련 지역과 동유럽 등 일부 유대인 사회에서 그 비율은 75%가 넘는다.

타종교 결혼이 유대인 사회에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비 핵심 유대인, 즉 비 유대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수도 늘어난다. 이러한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수백 만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합된 행동을 통해 이러한 비 핵심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로 불러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 간 디에스포라 지역의 유대인 학교의 등록자 수가 크게 늘었다. (보충적인 유대 교육은 하락) 가정과 공동체 환경에서 올바른 유대인 배경을 충분히 제공해주기 힘든 것이 분명 해졌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는데, 100%에 가까운 등록률이다.

디에스포라 사회의 유대인 부모 대부분은 그들의 자녀들을 공공 또는 다른 사립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선호한다. 비용이 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 중남미, 호주에서 학교 등록금은 매우 비싸다. 또 다른 이유는 동기이다. 많은 유대인 부모들은 유대 교육 또는 유대인의 사회화를 좋은 비종교 학교의 교육만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교육 제도는 더욱 유대민족에 대한 내용을 비종교 학교의 학습 과정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유대인 사회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유대인의 창의성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유대인 장학금, 종교 연구, 레스폰사, 유대 음악, 문학, 예술, 연극과 영화, 언론 등 여러 표현의 형태에서 유대인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도와 학습에서 100여년 전 사용되던 언어 헤브루어는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이 말하는 일반적이고, 현대적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언어이며 이스라엘에서처럼 언어로 쓰이는 비율은 적지만 이스라엘 밖의 많은 이스라엘 인들은 이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에서는 헤브루어 교육이 쇠퇴하는 징조가 보인다.

페미니즘과 개인주의는 서구 세계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특히 여성들은 예전보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유대주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사회와 유대 교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느린 속도이지만 더욱 평등한 minyanim(기도회)가 열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대계 동성 연애자의 활동도 북미, 유럽, 이스라엘에서 늘어나고 있다.

#### 4.3.2 단합과 분리

유대인의 정체성은 여러 사건, 이슈,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다. 1948년부터 그리고 유대인 국가의 설립 이후로 세계의 유대인 사이에서 정체성과 행동 정신을 불러일으킨 다섯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 6일 전쟁과 융 기푸르 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생존을 위한 지원. 이스라엘 간의 단합은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폭력적 단계 동안 계속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비에트 유대인 거주 지역을 위한 갈등
- 쇼아의 기억을 간직하고 쇼아를 부인하는 움직임에 저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전전 상황과 이슬람의 행동주의 강화와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지난 3년간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의 강화

-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고자 하는 공통된 역사, 문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 유대인 사회에 대한 투자는 유대 문화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론의 끊임없는 공격,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적 사건과 감정의 강화는 지역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민족의 운명과의 유대감이 늘어났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디에스포라에서의 유대인들의 조직적 구조는 더욱 응집력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호주, 미국을 제외하고) 중심적이지는 않으나 더욱 강력한 대표 단체와 대표 랍비가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계층 구조가 생겨났다. 미국의 유대인 사회도 강력한 지역 단체의 기반을 바탕으로 Conference of Presidents, AIPAC과 UJC와 같은 대표 단체가 생겨나면서 전국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대인 사회의 결합은 약해지고 있다. 국제적인 유대인 단체는 많이 있지만 어떠한 단체도 국제 사회에서 유대인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사실상, 유대인의 세계적인 넓은 분포로 이해의 충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와 시각이 생겨나서 더욱 강력한 글로벌 조직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보험 정책, 스위스 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쇼아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같은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비 종교적인 유대인으로 나뉜다. 또한 종교 분파 별로도 나뉜다. 우선 순위 별로도 서로 분리된다. 위에서 말한 공통된 이유와 이슈들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에게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제가 없다. Aliyah가 그 예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을 유대인 세계의 주요 우선과제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디에스포라 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을 유대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정교와 이스라엘 국가의 공식적 기관들은 특히 개혁파 랍비를 포함한 그들을 유대인으로 꼭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 정교도와의 결혼과 개종을 인정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계 세계의 중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 유대교도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비 유대인 친척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는 부문을 포용할 수 있는 노력 없이는 한 세대 만에 그들은 유대인 세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인과 공식 기관들은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의사 결정 과정이나 관심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유대인 세계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Ashkenazim과 Sephardim간의 민족적 분열이 서서히 진정되고는 있지만 종교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큰 분열이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서안(Judea와 Samaria)와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입지에 관련된 것이다. 1995년 Rabin 총리의 암살로 절정을 이루었던 분열이 다시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 4.3.3 숫자와 안보

세계의 유대인들은 인구 정체와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디에스포라 사회에서의 유대인 인구 증가로 총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 세계 유대인들의 분산과 세계적인 인구 이동 형태는 세계의 경제, 정치 제약과 유인의 분포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동성이 높고 경제력

과 정치적 활동성이 강하다.

- 이스라엘 외의 지역에서 유대인간의 결혼률과 출생률이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의 그리스 교도간의 결혼률과 출생률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낮은 편이다.

- 상당 비율의 젊은 성인들은 비 유대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자녀를 유대 배경에서 양육하지 않는다.

- 그 결과 나타나는 유대인 인구의 노령화는 인구 균형을 깨뜨리며 유대인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난다.

수적으로 볼 때 디에스포라의 유대인은 감소하고 있다. 그 중 예외는 종교와 Haredi 소수 인구이다. 낮은 출산율, 들어가는 타종교 배우자와의 결혼, 노령화가 모두 인구 감소의 원인이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1990년대 보다 느린 속도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 10년 동안은 미국의 인구 증가 속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계량은 언제나 이슈가 되어 왔다. 유대 교회, 요대인 학교, 지역 사회 센터, 코셔 음식 가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활력있고 건강한 유대인 사회가 되기 위한 최소 수는 몇 명인가?

4세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주변에서 의사 결정 과정의 중심으로 옮겨왔다. 유대인 인구 형태는 변화하여 이스라엘과 북미 두 지역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서유럽과 호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동유럽과 중남미를 떠나고 있다.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은 도시화를 겪고 있다. 수 천개의 작은 동네와 공동체에 분산되어 있던 유대인 인구들은 이제 주요 대도시 지역인 뉴욕, LA, 마이애미 지역, 시카고, 보스턴, 파리, 런던, 모스크바 등에서 살고 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 텔아비브와 그 주변 지역이다.

최근까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는 반유대주의, 억압, 사회적 장벽과 적대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의 강제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고 구소련의 붕괴로 이슬라엘로의 회귀 잠재성은 줄어들었다. (프랑스와 남아메리카는 예외이다)

최근 구 소련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 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의해 위기의 시기에도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안식처로 더 이상 인식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에 아르헨티나를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이 비교적 적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유대인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몇몇 국가들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란의 유대인 사회는 북 아프리카, 예멘, 시리아의 유대인들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디에스포라의 유대인들은 2차 팔레스타인 봉기인 인티파다 이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안보 이해와 서구 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모순이 나타난다. 세계 언론 대부분의 편견과 함께 이스라엘의 권리 옹호 노력의 효과 없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언론의 공격을 받았으며 유대인들 전체가 중동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유럽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세계 평화의 위협"으로 간주된다.

#### 4.3.4 경제적 사회적 입지

전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동향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이다. 유대인들은 디에스포라에서 각 국가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서구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장벽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개인의 애정을 추구할 수 있다. 유대인의 정치적 영향은 유럽과

다른 곳보다 미국에서 더 강력하다.

전체적으로 유대인 사회는 대부분의 디에스포라에서 전체 인구에 비해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소득은 더 높고 교육 수준과 전문성이 더 높으며 경제에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인당 GDP, 교육 수준, 기대 수명에서 가장 풍요로운 25개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빈곤은 유대인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유대인 사회로부터의 국제적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 소련지역, 동유럽,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상당수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중산층 봉괴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남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유사한 걱정들이 있다. 미국에서도 200,000 이상의 유대인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이스라엘의 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의 빈곤은 350,000 가구(18.5%)가 빈곤선 이하에 사는 것으로 집계되어 사상 최고 수치에 이르렀다. (주로 아랍, Haredim, 구소련 노년 이민자층이지만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2004-2005년에 나아질 것이라는 분명한 정후들이 있지만 이러한 경제 상황 개선이 사회경제적 피라미드의 하부까지 흘러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되고 있다. 유대 교회, 유대 공동체 센터, 유대인 학교 교육, 유대식 장례식등에 드는 비용은 부담스럽다. 유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만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유대인들은 여기서 멀어지고 있다. 유대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Zedaka(기부)는 오랜 유대 전통이자 종교적인 의무였다. 유대인의 인류애가 약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부의 형태와 규모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쇼아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약하며 기부는 다른 이유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과거만큼 부유하지 않고 기부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특정 유대민족의 사명을 위해 기부하는 금액이 적어졌다. 주요 기부자들 1/3만이 유대민족의 사명을 위해 기부하며 2/3는 박물관, 대학, 병원, 의료 기관, 문화 기관과 일반적인 이유로 기부한다.

유대인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적 자금은 줄어들고, 유대인 단체, 학교, 양로원, 복지 서비스와 자선 단체는 외부에 의지해야 한다. 유대인 단체들은 유대인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미 기부를 한 사람들과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호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요인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유대계 리더십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의 젊은 층들, 특히 공동체 사회의 리더들은 과거의 리더들과는 달리 전문인들이며 성직자가 아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의 가치와 협통을 위해 모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감정적인 것 보다는 지성적인 것이 되고 있다.

디에스포라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금융, 언론, 통신, 첨단 기술 산업 출신이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의사들과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새로운 유대 사회 리더십을 위한 전문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전문인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고 첨단 기술과 도구로 주요 유대인 단체에 이른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더욱 어렵고, 중요하며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4.3.5 유대인-디에스포라의 상호 작용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의 상호 작용은 유대인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간의, 그리고 세계의 여러 유대인 공동체간의 관계

를 지배하는 복잡한 역동성에는 다섯 가지 국면이 있다.

##### a. 문화적 민족적 차원

이스라엘은 오늘날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중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단결하기도 하고 동시에 분리되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영광, 연대성, 자부심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우려의 원인이자 걱정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유대계의 중심으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며 문화적 원천지와 정신적 영감의 근원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바빌론-예루살렘의 은유에서 나타나는 풍부하고 활력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위해 대안을 찾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디에스포라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트렌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영향을 준다. 종교적 다원주의와 폐미니즘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고 많은 종교 장학금이 이스라엘 밖에서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음악과 문학이 해외에서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디에스포라의 영적인 삶에 이스라엘이 미치는 영향도 적다.

디에스포라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이스라엘 정치에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 이스라엘 정책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길 때만 힘을 모아 이스라엘 정책을 지원할 뿐이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는 세계 유대인들과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정책은 디에스포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된다. 유대인 사회들은 이스라엘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편이다.

지원은 대체로 일방적이며 디에스포라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금전적 지원이 주요 지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금전적인 지원과 다른 지원을 디에스포라 지역, 특히 빈곤에 시달리거나 물리적으로 위협 받는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가 그 중 한 예이다.

##### b. 정치적 안보적 차원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보적 상황은 디에스포라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공동 사회의 의제의 대장을 결정짓는다. 이스라엘에서 테러의 증가와 편향된 언론의 보도는 유대인들을 단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많은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여러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는 박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성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난다:

-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틴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비난의 증가와 단결의 강화
- 유대인 단결 사명의 증가에 의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관광이 급격히 감소
- 이스라엘로의 기부 증가, 특히 안보 관련 목적
- 일부 국가에서 이스라엘로서의 이주 형태 변화
- 디에스포라의 좌파-온건파의 강화와 이스라엘에서의 좌파-온건파의 약화

반유대주의가 특히 유럽에서 심화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단결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해외의 동포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단결력이 강화되었다.

##### c. 경제적 사회적 차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번영하고 있는 다른 부유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이는 다른 국가로의 이주를 증가시키고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억압하였다. 디에스포라의 이스라엘과의 인류애적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제 사회적 차이였다.

모금 운동은 디에스포라의 유대인 공동체 단체 생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의 연방 제도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스라엘의 예산 삭감은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크게 삭감하였으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요소가 되었다. 이는 Birthright와 같은 협력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산 삭감은 분노와 환멸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산업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 과학계 문서 출간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상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베풀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경제 침체 기간 동안의 문제는 이스라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두뇌 유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 e. 제도적, 조직적 차원

유대인들은 유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일부 중앙, 지역, 부문 특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인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체는 거의 없다. 그 예로 유대인의 글로벌 기반인 Jewish Agency와 정치적 도구로서의 세계 유대인 회의(World Jewish Congress)(유럽, 중남미, 구 소련 지역에 지부 네트워크가 있음)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전체 유대인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Bnei Brith, Keren Hayesod, WIZO, HIAS,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한 회의(Conference on Material Jewish Claims against Germany)와 세계 유대인 보상 조직(World Jewish Restitution Organization (WJRO))은 특정 이슈와 활동과 관련이 있다.

여러 미국의 단체는 세계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UJC, 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Jewish Organizations, AIPAC, ADL, Joint Distribution Committee, American Jewish Committee, Hillel, Hadassah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디에스포라(유대교와 시오니스트 교육, 알리아, 종교적 삶, 인류박애에 집중)와 관련한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조직들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중점을 둔 디에스포라에 기반을 둔 조직들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UJC의 형성과 함께 Overseas Needs Assessment and Disbursement Committee (ONAD)이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한때 독자적이고 특권을 누리던 지위가 하락하고 일반적인 "해외"라는 말을 달게 되었다.

상호적인 강화 작용이 상당히 있지만 모든 조직들과 활동을 단결시킬 만한 공통의 세계 유대인의 아젠다가 충분치 않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나 언론에 대한 옹호 활동, 반유대주의, 구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유대인 사회 부활, 보상의 분배와 자금 조달과 같은 주요 이슈들이 세계 유대인의 공동 관심사이다. 그러나 디에스포라의 단체들은 유대 민족이 영속성, 유대 교육, 동화, 복지 서비스와 같이 모든 공동체 지역에서 공통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지역 특수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종교 단체들은 가장 집중적이고 세계 지향적인 단체들이다. Orthodox Union, Habad, 개혁파와 보수파 운동들은 각 단체의 종교적 양식과 메세지를 유대인 사회 전체에 알리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스라엘-디에스포라와의 관계는 진정한 협력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지원에 의해 그동안 편협한 성격을 가졌었는데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드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 모델을 수정하여 서로의 지원이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첫번째 성공적인 예는 1980년대의 Project Renewal이며, 그 이후로 Partnership 2000이 있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디에스포라와 이스라엘의 자매 관계에 있는 지역 사회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People to People, Israel Experience, Birthright와

같은 예들이 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범 유럽 유대인 로비/포괄 단체(European Jewish Congress와 European Council of Jewish Communities이외의 단체)가 부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확장된 EU가 중동 문제와 반유대주의 대처에 더욱 가시적인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조직적 다원성과 포괄적인 구조의 부재는 다양한 부문의 표현과 이해도모를 촉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친 경쟁, 조율 부족, 복잡한 상호 교류 형태는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전 지구적 유대인 조직 기반의 능력을 저해한다.

#### 4.3.6 디에스포라 간 상호 작용

*kol yisrael arevim zeh lazeh* (모든 유대인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탈무드에서의 개념은 디에스포라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유대인의 대인관계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디에스포라가 나타내는 우려와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 사회에 대한 지원에서도 나타난다. 사실상, 주요 유대인 단체들 일부는 위기가 100년 전 러시아의 상황이든, 또는 쇼아이후의 중부 유럽이든 위기에 처해 있는 동포 유대인에 대한 걱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현재 우려되는 주요 부분은 구 소련 지역과 동유럽의 유대인 사회의 복구와 남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많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와 단체들은 구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1-2002 경제 위기 때 아르헨티나 유대인들에 대한 지원은 자금, 지역 사회 참여, 아르헨티나 거주 유대인들의 서구 사회 이주를 위한 지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JDC, HIAS, UJC, AJC, ADL과 같은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특히 적극적이었다. 미국의 유대인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크며 지역 사회 봉사에 가장 긴 전통을 갖고 있으므로 동포 유대인들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유럽의 유대인 사회는 그만큼의 관심을 가졌지만 자원의 지원이나 자발성을 보이지 않는다. 유럽 기반 단체의 예로는 런던에 본부를 둔 World Jewish Relief가 있다.

Jewish Agency, Bnei Brith, Habad와 기타 종교 단체들과 같은 세계의 주요 유대인 단체들은 유대인을 구하고 전성기를 이룬다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종교 단체들은 체계적으로 랍비, 유대 교회, 교육 기관들로 이루어진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반유대주의는 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단결시키는 공동의 문제이다. 미국의 유대인은 크게 반유대주의의 희생자는 아니지만 최근 유럽의 반유대주의적 사태가 일어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작은 유대인 지역 사회들이 공동체 지도에서 사라지면서 쓸모 없는 유적으로 변하고 있는 유대 교회, 무덤, 학교, 박물관과 같은 유대 민족의 실체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5. 향후 전망

### 5.1 의사결정 메커니즘: 제 2 의회?

이스라엘과 해외의 유대인들은 우리 세대에 고유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국가적, 종교적, 문화적 실체로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장기적 능력에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도전에 응해 이스라엘의 Moshe Katsav 대통령은 15차 의회 개회에서의 연설에서 의회 크네셋(Knesset) 외에 제2의 의회(Second House)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유대 민족 의회(Jewish People House)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이스라엘과 세계의 유대인을 둑는 단결과 공동의 운명이라는 유대의 표현이 될 수 있다.

#### 5.1.1 목적

유대 민족 의회는 정책 권고, 해외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선출 대표가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사안에 대해 대화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유대인과 유대주의의 중요한 요구에 대해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한 답을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유대인 전체가 안고 있는 장애물과 과제를 극복한다는 목표 하에 유대인에 대한 상호 이해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전체 유대인과 관련된 현재의 많은 중요한 이슈를 직접 다룰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지역의 유대 민족이 공동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 국가와 디에스포라의 유대인들을 단결시키는 정신적이고 상호적인 연대
- 인구와 동화 문제
- 디에스포라에서의 유대인 교육
- 개종과 "유대인은 누구인가"
- 반유대주의의 부활
- 유대인 사회와 단체에 대한 테러 공격
- 유대인과 이슬람, 기독교간의 관계

제2의회는 크네셋의 자문 기구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며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단결된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 5.1.2 역량

유대 민족 의회는 해외 유대인들의 아이디어, 사상, 경향, 여러 시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문 조직이 될 것이다. 크네셋과 같은 선상의 의사 결정 기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유대 민족 의회에서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이슈들은 전체 유대인들이 겪는 문제가 될 것이며 디에스포라의 유대인 사회와 이스라엘 국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사항들이다. 유대 민족 의회는 유대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 정책 문제들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국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 방어, 평화 협상, 국가 경제와 같은 사항은 크네셋과 정부의 의사 결정에 따를 것이며 유대 민족 의회의 의제에 오르지 않는다.

크네셋과 이스라엘 정부는 해외의 유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대인의 미래 복지에 중요한 파장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유대 민족 의회와 그러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5.1.3 대표, 운영 방식, 실현 단계

유대 민족 의회는 해외의 유대인 전체, 즉 공동체 사회, 기관, 조직, 사상가, 지도자들을 모두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다.

유대 민족 의회의 대표 구성은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의 소망, 다양한 의견, 핵심적인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의회는 각 공동체의 상대적인 크기에 비례하여 대표하도록 할 것이며, 모든 공동체에 대한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표 선출과/또는 임명 방법, 대표들의 총수, 국가와 지역별 대표, 기존의 유대인 단체들의 지위, 절차 규범과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설립 단계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의회에서 주요 유대인 단체들의 높은 지위와 유대인의 삶에 기여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대표를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며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조건이 따른다.

유대 민족 의회는 절차 규범에서 규정한 대로 계획에 따라 일년에 두 번 소집된다. 유대 민족 의회의 위원회와 직원들의 업무는 상시 체제로 일년 내내 운영된다.

내년(2005년)에 준비 회의가 소집되어 이스라엘과 해외의 뛰어난 유대인 학자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대 민족 의회의 설립에 대한 조언을 줄 것이다. 참석자들은 준비 위원회의 위원들을 추천할 것이며 이 위원회는 원칙 초안을 준비할 것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의 근간이 될 원칙 문서를 사전에 받을 것이다.

#### 5.1.4 디에스포라 대의에 대한 추가적 접근법들

이스라엘 대통령의 제안은 실행된다면 이스라엘-디에스포라간의 복잡한 관계의 상호 작용과 의사 결정에 대한 새로운 틀과 규범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급진적인 제안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선거에서 이스라엘인과 다른 해외의 유대인들에게 투표권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항은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같은 정책을 곧 채택할 또 다른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당분간 해외에서 영주권자인 이탈리아 국민들은 전국적인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얻는다. 2006년에 있을 다음 의회 선거부터 이탈리아 인들은 여러 대륙 지역에 따라 의원 선출에 참여할 것이다.

해외 거주 국민들에게 정치적 대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의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과정은 두 개의 관련된 계층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 대의 위원회(Com.It.Es.)를 위한 영주권자가 충분한 영사관이 있는 지역에서의 선거이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이탈리아의 외교 기관과 각 국가들의 지역 공공 기관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선출된 위원들은 전 세계의 Consiglio Generale degli Italiani all'Estero (CGIE)를 선출하는데 참가한다. 그러한 세계 위원회의 목표는 이탈리아인의 문화적 지위와 이해를 해외에서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CGIE의 사명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유대 민족 의회 제안에서 언급한 목적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유대 민족 의회는 이미 존재하는 이탈리아의 대의 위원회에 비해 일반적인 정치 이슈들을 포함하여 더 폭넓은 분야의 이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제안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만장 일치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현재의 입장은 실제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는 해외의 유대인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스라엘 거주 국민에게 전적으로 있어야 하며, 반면 해외의 유대인들의 역할을 로비, 재정적, 정서적 지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두 번째 입장은 디에스포라의 존재가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은 역사적 문화적 기반과는 큰 대조를 의미한다.

### 5.2 세계화 시대의 민족 생존과 상호 작용

공식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적 측면을 넘어서서,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앞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암시한 실질적 이슈들은 이스라엘 국민과 확장된 국가로서의 디에스포라의 유대인들을 의미 있게 통합할 집단적 정체성의 장기적 유지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맥에서 발전해온 문화적, 사회 경제적 조건들 하에서, 미래가 분명하지 않다. 국가 생산 시스템들이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며, 특히 통신 네트워크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문화적 상호 작용이 늘어난 결과, 문화, 민족, 종교적 정체성을 국가의 형태로 보존한다는 것은 21세기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같은 이유와, 결과 나타나는 편리한 지역적 접근, 해외 근무 기회, 먼 사회와 환경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 증가로 인해, 디에스포라들의 확산 과정은 매우 가시적이며 사람들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에스포라의 경우,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다른 사회로의 동화 현상과 집단 기억의 상실과 같은 피할 수 없는 힘을 넘어서 양측의 공공 정책에 매우 중요한 측면을 계속 차지할 것이다.

\* 관련 법령 등 부록은 영문판 참조

## 중국의 화교·화인정책과 그 특징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방대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재외 화교, 화인도 많은 나라이다. 1950년대 중국정부는 국외교포의 수량을 1300~1500만 명으로 측정했고 1980~1990년대에는 2500~3000만 명으로 측정하였다. 근현대이래 재외 화교, 화인사회는 중국본토에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에도 중국정부는 화교, 화인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어느 때보다 많았다. 그리고 화교, 화인정책도 각 시기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본 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중국정부의 화교, 화인정책의 변화양상과 그 특징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 1.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의 형성배경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은 중국역사상의 중대한 전환점의 하나로 중화민족을 외세침략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외화교, 화인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정부는 재외화교, 화인의 현황과 역할을 감안하고 일련의 화교, 화인정책을 제정, 실행함으로 재외화교, 화인들의 조국애와 고국에 대한 정을 환기하여 중국건설에 동참하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50여 년 발전과정에서 각 시기 국제, 국내정치환경의 영향하에 화교, 화인정책도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였으며 그 정책내용과 실행과정은 시기마다 현저한 차이점을 보였다.

첫 번째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서 문화대혁명이전으로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은 형성과 순조로운 발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한 그 날 모택동은 중앙인민정부 주석의 신분으로 재외 화교, 화인사회에 향하여 “교포들이여, 단합하여 조국의 혁명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개선하자”라고 호소하였다.<sup>92)</sup> 중국정부는 화교, 화인에 대한 교무(僑務)사업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사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재외 화교, 화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과 이해 및 지원을 기대하였다. 이 시기 교무정책의 타당성으로 중화민족의 단합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문화대혁명 때이다. 10년 동란의 시기 중국국내정치는 불온하였고 경제는 거의 정체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 시기 화교, 화인정책은 정치에 집착되어 애국만 강조하는 정치위주의 교무정책으로 교무사업을 이데올로기화로 전락시켰고 이른바 “해외관계”는 하나의 “오점”으로 해외와 연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 시기 사람들은 해외 친인척관계를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할 정도로 많을 피해를 받아 사실상 교무사업은 거의 정지된 상태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78년 개혁, 개방이후 시기이다. 개혁개방이후 재외 화교, 화인의 수량은 급속한 증가를 보였고 그 분포도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그 사회구조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화교, 화인사회와 중국과의 연계도 어느 때보다 밀접하였다. 이러한 특징에

92) 《建國以來毛澤東文稿》 제1책, 제16쪽, 中央文獻出版社, 1987.

따라 중국정부의 화교, 화인정책과 교무사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시기 중국정부는 화교, 화인들의 합법적 권리보호에 더욱 관심을 보였고 국내경제와 화교, 화인경제의 연결성에 더욱 주목하였으며 화교, 화인사회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었다.

## 2. 각 시기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

### (1)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서 문화대혁명이전의 화교, 화인정책

#### 가. 해당기구의 설립과 사업직제

중국 교무사업의 해당기구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단체 등 여터부문에서 점차 설립하였다.

우선 1949년 9월 18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화교사무조(華僑事務組)의 설립을 결정하였는바 이 기구는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화교문제를 토론하고 심의하는 동시에 일상적 통일전선활동을 진행하는 사업기구이었다. 이 기구의 임무는 중국의 화교사업에 대한 방침, 정책을 홍보, 해석하고 정부의 해당 화교사업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며 민간의 의견과 각종 해당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필요시 정부에 건의를 제출하는 등이다. 그 당시 화교사무조 조장은 해진동(解振東)이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 2기부터 제 6기까지 화교사무조를 화교조(華僑組)로 개칭하고 그 사업기구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업범위를 크게 확대되었다. 예컨대 해당부문의 교무정책의 실행을 독촉하고 추진하는 것, 해외 교포와 귀국화교 및 교포가족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 화교와 귀국화교 및 교포가족중의 대표성 인물들과 연계를 맺고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해외교포와 귀국교포들과 단합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과 중국의 통일대업 및 각국 인민들과의 우호적 협작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 등이 있다. 다음 1949년 10월 22일 정부에서 화교사무를 주관하는 전문기구--중앙인민정부 화교사무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저명한 혁명가와 화교영수 하향옹(何香凝)이 주임을 맡고 진가경(陳嘉庚), 사도미당(司徒美堂)등 국내외에서 위망 있는 화교영수와 사회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위임되었다. 1950년 1월 29일 화교사무위원회에서는 교무사업통신망 설립을 결정하였고 1956년 10월 17일에는 《교무보》(僑務報)를 출간하였다. 1960년 2월 2일 중국정부는 귀국화교 안치위원회를 설립하여 귀국화교의 안치사업을 전문 관리하였다.

이외에 일부지역에서도 해당기구를 설립하였다. 예컨대 운남성은 공화국건립이후 화교사무처를 설립하고 1953년에 중국공산당운남성위원회 통일전선사업부에서 관할하였으며 1960년에는 통일전선사업부과 병행되는 부서로 승격하고 운남성정부의 직접적인 영도를 받았다. 그리고 귀국화교가 집결된 중요한 현, 시에서도 교무과(僑務科)를 두었다.<sup>93)</sup>

세 번째, 화인, 화교이익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하였다. 1950년 7월 8일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귀국화교 聯誼會籌備위원회를 설립하고 원래의 해방구(解放區) 귀국화교연합회의를 개편, 확대하여 전국귀국화교 聯誼會를 설립하였다. 얼마 후 북경에서 북경시귀국화교 聯誼會를 설립하였고 잇따라 귀국화교가 집결한 상해, 광주, 하문 등 지역에서 귀국화교 聯誼조직들을 건립하였는바 1956년에 이러한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70-80개가 있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귀국한 화교들의 증가와 더불어 전국적인 교포연합조직

을 설립하는 것이 각 지역 교포연합조직과 귀국화교들의 박절한 요구로 됨에 따라 1956년 6월 중앙인민정부 화교사무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에서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주비회를 결성하고 모택동이 “화교의 기치, 민족의 광휘”(華僑旗幟, 民族光輝)로 칭찬한 진가경(陳嘉庚) 선생을 주비회 주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1956년 10월 5일 북경에서 제1차 전국귀국화교대표대회를 개최하고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를 설립하였다. 대표회의에는 26개 국가와 지역의 귀국화교와 권속(眷屬)대표 356명이 참석하였고 800여명의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들이 열석(列席)하였다.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은 교포연합의 전국적 조직으로 그의 설립은 중국 각 지역 교포연합조직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징표이다. 1966년 문화대혁명 이전 전국의 14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성급 교포연합조직을 건립하였고 적지 않은 중점 교포집결의 시, 현에서도 기층 교포연합조직을 설립하였다.

#### 나. 정책의 주요 내용

1949년 9월에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한 《공통강령》과 1954년 9월에 개최된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등 법률문헌에서는 모두 “국외 화교의 정당한 권리과 이익을 보호한다”는 조목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국외 화교사회가 당면한 일련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과 조치를 취하였다.

##### 귀국화교에 관한 정책:

a.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부동한 시기의 특징과 화교의 특징에 근거하여 화교와 화교권속(眷屬)의 특별한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는 일련의 정책과 규정을 제정하였다. 예컨대 1950년 11월 6일 《토지개혁 과정에서 화교토지와 재산의 대한 처리방법》을 공포하고 화교의 토지, 주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적당히 배려하였다. 그리하여 1500만에 달하는 땅이 없거나 적은 귀국화교와 화교권속들이 토지개혁과정에서 실제적 이익으로 토지와 생산자료, 주택 및 가축 등을 얻었다.<sup>94)</sup>

1955년 2월 23일 주은래총리는 일부지역에서 화교권속들의 해외송금 사용을 간섭하는 착오행위를 방지하는 《교포송금정책을 보호하는 명령을 관철하는데 대하여》라는 규정에 친히 서명발표 하였으며 당해 8월 6일에는 화교가 국유 황산, 황무지 사용신청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였다. 사회주의 개조시기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사업부는 《국내 교무사업의 방침, 임무 및 약간의 정책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사회주의개조와 건설과정에서 귀국화교와 교포가족의 특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전면적인 사회주의건설시기 국무원은 《국영화교투자회사에 투자한 화교들에 대한 특혜 방법》과 《화교가 출자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정책하에 국내 교무사업영역에서는 점차적으로 “一視同仁, 不得岐視, 根據特點, 適當照顧”(동일시하고 멸시하지 말며 특징에 근거하여 적당히 보살피는 뜻)의 사업방침이 형성되었다.

b. 수난 화교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였다. 동남아지역에 많은 화교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동남아 일부국가에서는 화교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동남아 국가의 수많은 화교들이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는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많은 화교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거주 당국의 무리한 구금을 당하고 짐지어는 살해되었다. 수난 화교들은 모택동과 중앙정부에 전보와 편지로 도움을 요청하

93) 《雲南省情》, 제998쪽, 雲南人民出版社, 1983.

94) 尚明軒: 《何香凝傳》, 제340쪽, 北京出版社, 1994.

였다. 당시 모택동과 중앙정부는 해외 교포들의 곤란한 처지를 매우 동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도경을 통하여 해당국가와 교섭하여 화교에 대한 박해행위를 즉시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화교의 곤란을 해결하며 담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제의하였다. 동시에 해당국 주재중국대사관에 지시하여 수난구역에 가 화교들을 위문하였고 교포들을 조직하여 서로 돋고 서로 구제하는 활동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 집이 없고 생계를 잊지 못하고 귀국 정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선편을 파견하여 그들을 국내에 데려와 안치하였다.

1950년 11월부터 1952년 8년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광동으로 돌아 온 화교가 모두 19차에 13,1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500명은 광동성정부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고향에 보내 생산에 참여하게 하였고 2800여명은 해남도의 萬寧縣와 東莞의 萬頃沙농장에 안착시켰다. 이 외 400여명은 정부기구, 공장과 광산 등에 취직하도록 주선하였다. 1952년 정부는 거액의 돈을 내서 각 지역에 화교농장을 창설하였다. 국가화교사무위원회는 광동과 운남 등 지방정부의 협조하에 몇십개의 화교농장을 꾸려 20만명 이상의 귀국화교를 안치하고 그들의 실제에 맞게 일을 하게 하였다.<sup>95)</sup> 통계에 의하면 1960년 이전까지 귀국정착한 화교들이 30여만명 된다고 한다.<sup>96)</sup>

c. 화교농장을 건립하거나 직업훈련을 진행하여 귀국화교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컨대 1952년 6월 광동성교무위원회는 귀국화교의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반을 꾸려 직업훈련을 진행하였고 1960년에는 복건성의 泉州雙陽화교농장과 광서황족자치구의 武鳴화교농장을 창건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당시 광동성에만 23개의 화교농장이 있었다. 운남성의 화교농장은 1960년부터 창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64년에는 8개로 증가되었다. 1978년 베트남에서 귀국한 화교, 화인들을 안치하기 위하여 몇개의 농장과 임장(林場)을 만들어 전성의 화교농장은 13로 증가되었다.<sup>97)</sup> 현재에도 중국에는 80여 개의 화교농장이 있다.

d. 화교학교를 꾸려 귀국화교자녀들의 취학수요를 만족시켰다. 1950년대 초기에는 주요하게 복습반 또는 훈련반을 꾸려 화교학생들을 양성하였다. 예컨대 1951년 4월 광동성교무위원회는 화교청년학습반을 꾸렸고 1952년에는 북경화교복습학교가 창건되었고 1953년에는 복건성의 集美화교복습학교와 泉州화교복습학교가 창건되었으며 1954년에는 광주화교복습학교가 창건되었다. 이후에는 화교학교가 생겼는데 1955년 11월 복건성의 福清화교중학교가 창립되었고 1957년에는 절강성의 寧波화교중학교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화교자녀들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 점차 건립되었다. 1951년 9월 광주남방대학교에 화교학원이 창설되었고 1956년에는 暨南대학교가 광주에서 창건되었으며 1963년에는 복건성 泉州에서 화교대학이 창설되었다.

1957년까지 4만여 명의 귀국화교학생들을 각급 학교에 진학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중 20%의 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였고 근 2000명이 귀국화교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졸업하였다.<sup>98)</sup>

#### 국외화교에 대한 정책:

a. 화교들의 이중국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해외 화교 가운데 이

95) 尚明軒: 《何香凝傳》, 제347쪽, 北京出版社, 1994.

96) 《廖承志文集》, 인민출판사, 1989, 제 370쪽.

97) 《雲南省情》, 제997쪽, 雲南人民出版社, 1983.

98) 尚明軒: 《何香凝傳》, 제348쪽, 北京出版社, 1994.

중국적 소유자가 절반이상이었다. 이것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열점문제로 되었다. 이에 따라 1951년 중앙교무사업위원회는 중공중앙의 교민사업의 방침과 각 항 구체적 정책에 근거하여 화교사업을 중국의 평화외교정책의 궤도에 놓고 화교는 정주국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출하여 중국과 동남아 각 민족주의 국가와의 모순을 완화시켰다.

당시 주은래 총리는 거주국 화교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화교들의 장기 생존과 이익을 감안하고 화교들이 자원적으로 정주국의 국적가입을 찬성하고 권장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953년 주은래는 인도네시아 화교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하여 화교들이 정주국의 국적취득을 반대하지 않거나 혹은 찬성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정부와 화교들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한 담판을 통한 실천에서 상술의 견해는 더욱 명확히 하였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담판은 2년을 거쳐 1955년 만률회의 기간 주은래는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에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sup>99)</sup>

이러한 노력은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우호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고 화교들의 해외에서의 장기적 생존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로 중국은 평등협상과 화교자원의 원칙 등으로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국가와 담판하여 화교의 이중국적문제를 해결함으로 여러 국가와 광대한 화교들의 호평을 받았다.

b. 다른 한편 중국정부는 화교들이 정주국 국적가입을 권장하였고 화교들로 하여금 정주국 법률을 준수하고 정주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정주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정주국 국민들과의 통혼을 권장하였으며 화교는 정주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은 정책을 실행하였다.

## (2) 문화대혁명시기의 화교, 화인정책

문화대혁명시기 중국은 국내의 정치, 경제정세와 국제 정치환경 변화의 영향하에 전반시기에는 화교, 화인정책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1966년 가을 강청(江青), 진백달(陳伯達) 등이 주도하고 있는 “중앙문혁소조”은 지시를 하달하고 지난 시기의 화교, 화인정책을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과거의 화교정책은 “반동적”이라 하고 “특무”가 귀국화교 가운데 침투되었다고 떠벌렸다. 그리고 국내정치와 동남아국가와의 관계에서 통일전선전략을 저버리고 “좌” 경 노선하에 일부 극단분자들은 해외 화교들을 동원하여 모태동사상을 학습하고 “혁명열정”을 수출하는 등 작법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관계악화를 더 부추겼다. 그리고 이 때 중국정부는 해외 화교, 화인들에 대한 법률적 보호도 해 주지 못할 형편에 처하였다.

### 가. 기구설치와 사업정책

1967년 1월 중앙교무사업위원회내의 造反派와 紅衛兵조직은 군부대를 동원하여 중앙교무사업위원회청사에 진입하였고 4월 4일에는 비판대회를 소집하여 진의(陳毅), 료승지(廖承志) 등 책임자들이 계속 “자산계급 반혁명노선”을 집행하고 “대외사무에서 위대한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을 압제한다”고 비판하였다. 이 해 여름 외교부청사가 충격받아면서 1949년부터 화교정책을 관철집행하는 주요한 기관인 중앙교무사업위원회도 엄중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99) 裴堅章 主編: 《研究周恩來——外交思想與實踐》, 제285쪽, 世界知識出版社, 1989.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중앙교무사업위원회에서 아무런 해외화교관련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구는 사실상 이름밖에 남지 않았다. 1969년 중국정부는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남아 국가의 중국과 해외화인의 연계를 경계하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교무사업위원회를 없애고 1970년에는 외교부에 합병되었다.

#### 나. 정책의 주요내용

a. 중국의 대외정책은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극“좌”행위는 중국과 해당국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1966년 여름 중앙교무위원회가 충격 받은 후 극“좌”적 분자들은 더욱 격렬한 태도로 해외, 특히 동남아 국가의 화교들의 “혁명운동”참여를 지지하였다. 1966년 6월 극“좌”적 분자들은 일련의 민중시위를 조직하여 미얀마대사관에 항의하였는바 그들은 “미얀마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미얀마 현정권은 “제국주의와 결탁한다”고 질책하였다. 당시 중앙문혁소조와 극“좌”적 분자들이 장악한 외교부는 미얀마 정부에 미얀마인민들이 모택동마크를 달 수 있도록 허가하고 모택동사상을 학습하여 그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仰光에서 소란이 발생한 후 그들은 또 공개적으로 화교의 모택동사상 학습과 모주석마크를 달고 “애국행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것이 1967년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파열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이 베트남, 캄보쟈, 인도네시아, 싱가폴, 홍콩과 마카오 등 국가와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당시 이러한 정책과 행위는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중국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1969년에 와서 베트남과 라오스만이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 인도네시아와 국교가 단절되었고 캄보쟈와의 관계는 아주 긴장하였으며 미얀마와의 관계는 파열되었다.<sup>100)</sup>

b. 국내정책의 과오로 귀국화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았다.

먼저 유효한 교포송금정책이 엄중히 파괴되어 교포송금의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되었으며 심지어 “교포송금 무용”, “교포송금 위험”론으로 이어졌다.

둘째 화교투자가 국가건설에 대한 역할이 부정되었다. 1967년 하반기부터 화교투자회사는 화교의 주식투자를 단절하였고 1969년 이후에는 화교투자회사까지 폐지시켜 화교와 화인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중단시켰다.

이외에 화교와 화인들의 귀국 친척방문과 관광에 대하여 여러모로 엄격히 제한하여 화교들이 한번 중국에 오는데 아주 긴 시일의 심사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중국혈통을 가진 외국 국적 화인에 대하여서는 더욱 많은 제한이 따랐다. 국내의 일부 지역과 부문은 화교와 화인들에 대한 접대가 소홀히 되어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자”는 방침을 관철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부동한 정도의 무시와 무리한 의구심이 존재하였으며 제한이 많고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 국내외에서 나쁜 영향을 초래하였고 화교, 화인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많이 자아냈다.

이 시기 정치투쟁과정에서 많은 귀국화교, 화교가족은 이른바 “해외관계” 또는 기타“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고 심지어 투쟁의 대상이 되어 “지주, 부농, 반혁명, 악인, 교포”로 불리워 지주 등과 같이 투쟁을 받아 교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리고 엄격한 출입국정책으로 인하여 일부가족들이 갈라져 살고 친척들이 이산가족처럼 되어 그들의 생활에 엄중

한 영향을 끼쳤으며 화교, 화인들의 조국에 대한 감정을 손상시켰다.

c. 1970년대 이후 일련의 변화가 일면서 화교정책이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전면적 실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970년 이후 주은래, 등소평이 중앙의 일상사무를 책임지면서 교무정책을 정확한 궤도에로 회귀하기 위하여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일련의 구체적 정책도 내놓았다. 특히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 화교를 통하여 정주국 사무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일련의 정확한 정책을 재삼 강조하였다. 하지만 당시 “좌”경향의 영향이 깊어 해당정책들의 전면적 실행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의 화교, 화인정책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체회의 이후 중국의 교무사업은 새로운 발전계기를 하였고 교무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는바 그 중 제일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들이 더욱 실제적이고 화교, 화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유리하다는데 있다.

다른 한편 개혁개방이후 화교, 화인수자의 증가와 친척방문, 유학 등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며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연관성이 강화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활동도 다양 증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60년대까지 화교, 화인들이 동남아국가에 집결된 전통적 분포를 개변하였고 수 백만명의 화교, 화인들이 발달국가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90%이상의 재외 중국인들이 정주국 국적을 소유하고 현재 출국자의 대다수도 정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50년대이전의 화교위주인 상황이 현재는 완전히 화인위주의 재외 중국인사회로 과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도 반드시 변화하여 화교, 화인사회구조의 변화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정세에 적응해야 하였다.

#### 가. 화교,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서부터 개혁개방이전까지 중국사회의 흐름은 계급투쟁이었고 경제문제는 정치투쟁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 1960-70년대 동아시아 경제가 신속히 발전할 때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속에 빠졌다. 당시 대부분 화교, 화인은 자본주의국가에 분포되어 계급투쟁이념으로 보면 많은 화교, 화인은 노동계급이 아니고 자산계급 및 준자산계급에 속하며 중국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은 사회주의개조대상에 속하여 많은 타격과 배척받았다.

1978년 후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경제발전문제를 중심과업으로 삼으면서 지난 30년간 소홀히 대했던 국외화교, 화인 군체를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그 동안 급속히 성장한 화교 화인사회의 경제실력은 중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복건성과 광동성에서는 중앙정부보다 국외교포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어 1970년대 초부터 해외교포들이 고향건설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중국지도층의 화교, 화인에 대한 인식은 그 변화과정이 있었다. 등소평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서 화교들의 중요성을 비교적 일찍이 파악한 지도자 중의 한사람이었다. 1979년 초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 있다. “현재 우리가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방도를 찾아야 하며 외국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화교, 화인후예들이 중국 대륙에 와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1981년 5월31일 교민사무 좌담회에서 胡耀邦, 李先念, 烏蘭夫, 朴一薄, 廖承志 등

100) 鄭甫弘:“文革時期的中國海外華僑政策”참조, 《南洋問題研究》1996년 제2기.

중앙 지도자들의 발언에 의하면 당시 중앙 지도층에서 화교화인들의 경제실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 중국정부 지도층은 경제특별구를 설립하면서 외국자본 도입과정에서 화교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등소평은 남행시찰중 상해시에서 중앙 정부에서 “4개의 경제특별구를 설립하는 주요한 원인은 국외 화교, 화인과 홍콩, 마카오 등 포들의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지리적 요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홍콩과 가까운 심천, 마카오와 가까운 주해, 동남아 화교 중에 조주(潮州)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산두(汕頭), 외국에서 사업하는 민남인(閩南人)들이 많기에 하문을 선택하였다” 말하였다.

1984년 4월20일 전국 성급 교민관공실 주임회의에서 중앙지도자들의 발언은 중앙정부에서 중국 경제발전 중 화교들의 작용을 중시한다는 것을 체현한다. 중공 중앙 총서기 胡耀邦은 “3000만 화교, 화인들의 힘은 대단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4가지 현대화건설의 추진, 조국통일의 실현, 해외영향 확대와 국제우호관계설립에 매우 중요한 힘으로 될 수 있다. 교민사무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당전체가 이 사업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翟仲勳은 중앙서기처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말했다. “현재 세계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00여 만명의 화교, 화인은 매우 중요한 힘인데 그들은 우리나라 4가지 건설, 조국 통일사업 완성, 해외영향 확대, 국제 우호인사 쟁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와 역할이 있다. 화교, 화인 중에는 거액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업가도 있고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을 장악한 인재들도 많으므로 우리의 정책과 방법이 정확하고 잘 이용하면 그들의 적극성을 높여 중국현대화건설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외 화교, 화인들이 소유한 자금이 2000천억 불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10%만 흡인해도 경제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앙에서는 입법하여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들의 중국 대륙 투자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결정하였다. 동시에 화교, 화인 가운데 높은 교육수준을 소유한 인재들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중점이다. 외국 국적의 화인들은 우리와 공통한 민족감정을 갖고 대다수는 언어 문자도 공통하기에 중국에 와서 사업하는데 매우 유리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세계 각 지역의 화교, 화인의 본적이 광동, 복건 두 성에 많고 기타 지방에는 적지만 그들은 국가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국 방방곡곡의 번영과 부유 및 문명을 위하여 기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교민사무를 모두 참답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중국정부는 이 때로부터 교민사업을 중국의 “네 개 현대화 건설”, 과 조국통일의 실현, 해외영향 확대 등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교민사무의 주요대상이 실제상으로 화인이 되면서 1989년의 전국 교민사업회의에서는 “금후 교민사무부문과 외국적 화인의 거래 합작은 더욱더 넓어 질 것이다. 화교와 외국적 화인은 구별되면서 또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화교사업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적 화인 사업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화교 화인의 중국 대륙 투자를 흡인하는 과정에서 화인은 실제상 화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입법에서는 화교들에 대해서 우대정책을 실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실행 시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와 해외 화인들에게도 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했던 것이다.

해외 화인들의 투자와 경제합작이 확대됨에 따라 화교, 화인들은 중국경제발전에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자원으로 되었다. 1993년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등소평은 상해 각 계층 인사들과의 담화 중에서도 국외 몇 천만명의 애국동포들은 중국경제발전의 독특한 기회이니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전국 귀국교포대표대회에서 강택민 주석도 “교무사업은 당과 정부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며”, “새로운 역사시기 교무사업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 나. 기구설치와 사업직책

1978년 국무원산하의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이 설립되었다. 이후 각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서 모두 교무판공실을 설립하였다. 교무판공실의 직책은 이전의 화교사무위원회와 비슷하나 사업대상에는 일부의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화교사무위원회와 다른 직책으로 “외교부를 협조하여 중국의 외국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지도하여 화교와 외국적 화인의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후 각 지방정부의 교무사업기구가 이어서 설립되면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교무정책을 실행하는 주요한 기구로 되었고 입법, 자문기관에서도 교무와 관련되는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사회단체적 성격을 띤 교무사업기구도 회복 또는 설립되었다.

개혁개방 15년이래 중앙과 각성, 자치구와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산하에는 화교사무위원회(1983년6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산하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교무위원회 (1998년 3월, 이전에는 화교위원회로 명명함)등 화교관련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전국인민대표회의 화교사무위원회의 주요한 직책은 화교관련의 議案을 심사의론하고 해당 법률 초안을 작성심사하며 해외화교사업을 전개하고 각 항 교무정책의 실행을 독촉하고 검사한다. 이후 각 성, 자치구와 직할시 및 현, 시의 인민대표대회내에서도 상응한 기구를 세웠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홍콩, 마카오, 대만, 교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와 주석단회의의 영도하에 위원들을 조직하여 화교사업에 관한 활동을 경상적으로 전개함으로 정치협상과 민주감독작용을 발휘하는 사업기구이다. 주요한 임무는 정치협상회의의 귀국화교, 가족위원과 해외교포계 인사들과의 연계와 聯誼사업을 진행하고 그들이 화교사업 및 기타방면의 의견과 반영을 듣고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해당정책을 선전하며 화교와 연관 있는 법률, 정책 및 관찰집행상황에 대하여 협의하고 정부 해당부문과 협상,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화교사업상황을 파악하고 광대한 화교계 인사들이 주목하는 일부 문제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정부 해당부문에 의견과 견의를 제출한다.

화교연합회의 활동도 날로 정상화되고 활약하였다. 1978년 12월 17일 제2차 전국귀국화교대표대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후 이러한 회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소집되고 교무사업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일련의 대응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교무사업을 보편적으로 전개되었다. 1979년 12월 28일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복건성의 泉州에서 全國僑鄉사업과 僑聯사업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일부 화교대학도 회복, 창건하였는바 1978년 10월 16일 暨南대학이 광주에서 중건되고 화교대학도 정식으로 회복되었다. 화인들의 귀국투자에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심천특별구에 화교타운을 건설하였으며 많은 지역에서 일련의 자본유치정책을 실행하였다. 1986년 2월 23일 정부는 전문적으로 교무정책 탁실회의를 소집하고 화인, 화교와 관련된 역사적 안건들을 2년 내에 기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 다. 정책의 주요한 내용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교무사업도 전략적 전환을 시작하였고 특히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경제건설중심의 전환에 근거하여 교무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우선 각 항 교무정책을 적극적으로 탁실했고 화교, 화인들의 정당한 합법권익을 보호하였다. 중앙의 해당정신에 근거하여 전국의 화교가 집결된 곳에서 유력한 간부들을 조직하여

전문기구를 만들고 역사정치운동에서 초래한 잘못된 안건들을 참답게 검사하고 귀국화교와 권속지식분자에 관련된 정책들을 참답게 허용하였으며 문무가 겸비한 귀국화교와 교포가족들을 각급 기구에 배치하고 원래 정리실업한 귀국화교, 교포가족의 직위를 복귀시키는 동시에 上山下鄉의 화교자녀들의 도시귀환과 직업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역차의 정치운동에서 화교들의 주택을 점유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다. 정책 허용 때 등소평은 특별히 “화교들의 집은 그들의 소유권을 승인하고 시기를 나누어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시하였다. 중앙의 해당부문과 광동성은 이러한 지시를 참답게 관철 허용하고 다량의 인력, 물자력과 재력을 내서 토지개혁 때 몰수되고 민영 상공업개조 때 빼앗긴 것과 문화대혁명시기 점령당한 교포주택문제를 해결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각급 정부는 6.4억원의 재정으로 해결한 농촌 교포주택은 1702만 평방미터에 달하였고 성진(城鎮)의 교포주택은 1213만 평방미터에 달하여 주택문제는 기본상 해결되었다.<sup>101)</sup>

두 번째, 화교, 화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들의 자금을 도입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1984년 등소평이 “3포”(三胞--해외동포,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만동포)의 자본을 다량으로 흡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출한 후 화교를 중국경제건설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각급 정부 교무사업의 중심의 하나로 되었다. 화교, 화인들의 투자와 협작을 흡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아주 유연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였다. 교무기구는 화교, 화인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동포 등과 각종형식의 경제기술협작을 통하여 화교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고 또 화교자본투자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등소평의 남행연설 이후 해외화교, 화인과의 협작이 제일 좋은 시기로 되었다. 예컨대 1978-1993년 사이 중국에 국외 직접투자 600억 불 가운데 70% 이 홍콩, 대만자본을 포함한 화교, 화인자본이었다. 1996-1997년 사이 국외 직접투자 875 억 불 가운데 75%가 국외 화인, 화교자본에 속하였다.

사실 개혁개방초기 중국의 각종 건설자본이 아주 결핍하였는바 국외 화인과 홍콩, 마카오 등 지역의 자본이 연해 일부지역의 경제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1993-1997년 국외 화교, 화인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복건성, 광동성의 국외 화인들의 투자가 현지 총투자액에서 50%까지 증가되었다.

세 번째 화교와 화인들의 현지에서의 장기적 생존과 발전을 관심하고 지원하였다. 중국정부는 국외 화교, 화인에 대한 직업훈련, 언어기능, 문화사업 등에 대한 조직과 추진을 통하여 인력과 경비 등 방면의 실질적으로 지지를 주었다. 국외에 설립한 중국자본기구들은 화교, 화인을 위하여 특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정부의 각 부문에서도 화교, 화인들이 중국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등 영역의 협작과 교류를 위하여 편리를 제공하였으며 힘에 닿는 지지를 주었다.

네 번째 화교, 화인들의 합법적 권리의 보호하는 입법사업도 계속 진전이 있었다. 1990년 9월 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차 회의에서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을 통과하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실행키로 하였다. 1993년 7월 23일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은 사회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해 귀국화교 및 화교가족과 국외교포들의 중국 내에서의 합법적 권리의 보호하고 수많은 교포, 홍콩과 마카오 동포, 귀국화교 및 화교가족들을 단합하고 그들의 조국과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을 환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101) 盧荻:“論鄧小平的僑務思想和黨的統一戰線”,《當代中國研究》,2001년 제4기.

다섯 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화교, 화인인재와 지력을 도입하였다. 개방개방 이후 중국이 당면한 과제의 하나가 전문인재와 국제시장, 금융, 법률, 현대과학기술과 관리지식을 장악하고 국외상인과 윤활히 교류 협작할 수 있는 인재가 결핍한 것이었다. 그래서 해외화인, 화교의 지력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조치의 하나로 되었다. 1979년 이후 해당부문에서 수많은 화인, 화교학자, 전문가와 기타 인재들을 중국에 초청하여 학술교류, 기술전수 등 활동을 진행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귀국화교, 화교가족 가운데 약 40여만 명의 지식인과 과학기술 인사들이 있으며 그들 가운데 세계 또는 국내 일류의 전문가, 학자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었으며 중국교육, 위생, 과학기술연구와 공정기술 등 영역과 학과의 선두주자로 되었는바 錢學森, 錢三強, 盧嘉錫, 王大珩 등은 결출한 귀국화교 과학가들이다. 그리고 1985년 중국과학원의 7명 정, 부원장 가운데 6명이 귀국화교이고 15명 여성 학부원 가운데 11명이 귀국화교이었다.<sup>102)</sup>

### 3. 중국화교, 화인정책의 경험과 교훈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래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은 굴곡의 발전과정을 겪었다. 물론 이 과정은 국내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과도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었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그 건립할 때부터 혐악한 국제환경에 직면하였으며 국내의 사회환경도 아주 복잡하였다. 국민당, 지주와 자산계급들은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통치에 적의를 품고 있었으며 공산당자신도 당시 국가통치에는 익숙지 않았으므로 화교, 화인정책도 자연히 곤혹을 겪었다.

중국 50여 년의 역사를 보면 그 화교, 화인정책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경험으로는:

첫째, 화교, 화인들의 조국에 대한 깊은 감정을 충분히 긍정하여야 한다. 중국은 국외화교, 화인의 모국과 조상의 나라로 그들은 중국 내 주민들과 물보다 진한 혈연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중화민족의 번영과 부강을 위하여 자신들의 힘을 기울이려고 하며 그들은 중화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중국의 부흥을 희망하였으며 또 중국의 부흥은 그들이 정주국에서의 지위향상에도 밀접히 연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화교, 화인들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긍정하여야 한다. 화교, 화인사회에 인재가 많고 그들이 국외에서 힘들게 창업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경제실력을 갖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조국에 대한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관심을 더 들리게 하였으며 이것이 화교, 화인과 중국개혁개방의 호혜, 호조의 기초로 되었으며 이 후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날로 밀접하게 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세째, 중국의 평화적 부흥은 화교, 화인사회 역량의 효과적인 참여가 소요된다. 화교, 화인사회의 발전은 중국과 국제사회 및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대만관계에서 자연적인 소통의 길이 형성되는데 그 어느 것도 대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건설을 통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건설목표를 완성하려는데 화교, 화인들이 효과적 참여가 없이는 안 된다. 때문에 국외 화인사회와 중국대륙주민들의 공동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화교, 화인정책 실행가운데서 교훈을 참답게 총화하는 것도 미래 화교, 화인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50여 년이래 화교, 화인정책집행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깊게 연구하고 법에 의하여 국외 화교, 화인의 합법적 권리의 보호하여야 하며 화교, 화인정책집행가운데서 이데올로기화로 하지 말며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102) 盧荻:“論鄧小平的僑務思想和黨的統一戰線”,《當代中國研究》,2001년 제4기.

둘째, 화교, 화인사회는 모국과 평상치 않은 연계가 있지만 그들은 이미 정주국에 정착한 상황이어서 감정상에서는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 결론

중국정부의 화교, 화인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약간의 곡절은 있었지만 현재에 와 보면 아주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그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귀납하여 보면:

첫째, 화교, 화인정책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화교와 외국적 화인을 완전히 동등하게 보지말고” “화인과 일반외국인을 동등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화인을 화교와 동등하게 투자, 세수공제 또는 면제, 관광 등 방면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중국국가영도자들의 중요시하는 태도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중국에서 귀국화교대표회의 때마다 국가영도자들이 출석하여 교무사업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정책을 위시하였다. 그리고 교무사업과 더불어 해당법률과 규정을 많이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세째, 조직기구가 위로부터 기층에까지 있고 건전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에는 교무판공실, 각급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의 주요 책임자들은 모두 각급 정부의 교무판공실의 주요책임자들이 겸임하였다. 그리고 화교위주의 전문당파도 있는바 그것이 致公黨이다.

넷째, 화교, 화인들의 실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화교, 화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교무영사를 파견하여 화교, 화인들의 정주국의 법률준수와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국내에서는 귀국화교, 화인들의 직업, 생활에까지 심경을 서면서 보살피고 있다. 예컨대 1950~60년대 일부나라에서 화교, 화인을 배척하는 운동이 있을 때 중국정부는 그 나라들과 교섭할 뿐만 아니라 귀국하는 수난 화교, 화인들을 위하여 직업과 생활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화교농장이 그 돌출한 예로 되겠다. 또 귀국화교, 화인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 각급 학교를 설립하였다. 중, 고등학교는 말고 화교대학만 현재 暨南대학, 화교대학 등이 있다.

그리고 화교, 화인사회에 대한 홍보와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에서 편집 발행하는 《교무사업연구》, 중국귀국화교연합회의 《해내와 해외》 등 잡지를 포함하여 현재 교무와 교포문제에 관한 간행물들이 40여 종이나 된다.

#### 부록:

#### 귀국 화교와 화교 친족에 관한 정책(일부)

##### 정 치 권 리:

######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권권익 보호법》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대회와 귀국화교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당한 수의 귀국화교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7조: 귀교, 교권법에 따라 사회단체를 성립하고 귀교, 교권에 수요되는 합법적

인 사회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9조: 국가는 귀국화교, 화교가족의 친척방문을 위한 출국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제 20조: 귀국화교, 화교가족은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출국거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은 출국거주 허가를 받은 거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지 못한다.

제17조: 귀국화교, 화교가족의 해외친구와의 왕래와 통신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 경 제 권 익:

##### 취업:

제9조: 국가는 귀국화교의 농장, 林場 등 기업을 부조하며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은 그들의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침점 못하며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지 못한다.

귀국화교의 농장, 林場 등 기업과 인근한 곳에 수요에 따라 학교와 의료보건기구를 적당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원, 설비, 경비 등 방면에서 부조해준다.

##### 투자:

###### 《녕하리역귀국화교, 화교가족권익보호법 실시방법》

제10조: 화교자본으로 우리 지역에 세운 독자 기업, 합자경영 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은 외국상인투자기업의 혜택대우를 받는다.

##### 부동산:

######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권권익보호법》

제13조: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귀교, 교권들이 국내에 집을 살 권익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귀국화교, 화교가족들의 주택을 이용해야 할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합리한 보상과 안치가 있어야 한다.

《귀국화교, 화교가족에 속한 직원이 사적 원인으로 출국할 때 공유주택의 임대와 주택개혁에 참가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

1. 사적 원인으로 출국하였지만, 공직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화교는 의연히 공유주택에 들 자격이 있고 현지 표준에 따라 임대금을 지불한다.

2. 귀국화교, 화교가족들이 외국에 이민해 가기 전에 국가 및 지방의 주택개혁정책에 의해 소유하였던 집은 출국한 다음에도 의연히 갖고 있을 수 있다.

#### 재산 :

###### 《중화인민공화국귀국 교권 권익보호법》

제16조: 귀국화교, 화교가족들은 해외 친척, 친구들의 유산 혹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귀국화교, 화교가족들이 국외 유산을 계승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귀국화교, 화교가족들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복건성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 실시법》

제25조: 국가는 귀국화교, 화교가족들의 송금수입을 보호하고, 개인수입 조절세를 면제한다.

### 〈녕하구 귀교 교권권익보호법 실시법〉

제9조: 귀국화교, 화교가족이 해외친구의 자원증정으로 받은 것을 공의사업에 사용하면 국가에서 규정한 감세 혹은 면세의 우대를 받는다.

### 〈료녕성 귀교, 교권 권익보호법 실시방법〉

제20조: 귀국화교, 화교가족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로부터의 송금을 지배할 수 있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간섭하지 못한다. 단위나 혹은 개인이 불법적으로 은행의 해외송금명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귀국화교, 화교가족은 법에 따라 해외송금을 자기 의사대로 외국 화폐로 환전하여 저축하거나 외화은행에 팔 수 있으며 해당은행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제때에 수속해주어야 한다.

복지: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권권익보호법》 제20조:  
은퇴한 귀국교포, 교포가족직원이 국외에 정착했을 때 역시 은퇴금과 노후보장금을 발급한다.

### 교육문화:

《2002년 대학교 학생모집규정》에 따르면 귀국교포, 화교자녀, 귀국교포자녀와 대만성 호적의 수험생들은 성급 학생모집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입학점수선을 조절한 기초위에서 적당하게 점수를 낮추는 것으로서 입학조건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녕하구 귀교 교권권익보호법 실시방법〉

제15조: 귀국교포학생, 귀국교포자녀와 화교자녀가 우리 구역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뒤, 각급 학교에 지망할 경우 입학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구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이를테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교포가족자녀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그리고 유치원생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귀국교포와 화교가족자녀들을 먼저 고려한다.

### 〈료녕성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실시방법〉

제19조: 귀국교포학생, 귀국교포자녀와 화교자녀가 우리성의 보통고급중학교에 지망했는데 성적이 그 학교의 입학점수선보다 낮을 때 성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점수하강 표준에 의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지망학교에 보내어 심사 통과 후 모집한다.

성인대학교(야간 대학)에 지망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규정한 점수를 첨가해주는 표준에 의해 입학우대를 받는다. 그리고 보통 고등교육기관, 중등직업학교에 지망했을 경우 성인민정부의 교포사무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증명문건을 해주며 기타 종류의 학교에 지망했을 때는 수험생 호적이 있는 지방 정부의 교포사무기구에서 증명문건을 책임진다.

### 해외화교에 관한 정책

국적: 중국정부는 화교가 이중국적을 소유를 반대해왔다. 중국과 화교거주국의 우호관계를 촉진, 발전시키고 역사가 남겨놓은 화교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년대 중기에 중국정부는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 동시에 화교 자원 원칙으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내놓았다. 1980년9월10일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소유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정부는 국외에 거주하고있는 화교들이 자원 원칙에 따른 국적선택을 찬성하고 권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 따르면 국외에 정착한 중국공민은 자원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혹은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중국국적의 자동적인 상실을 의미한다. 화교가 외국국적에 가입한 다음 비록 외국공민이 되지만 중국인민과는 여전히 친척관계를 유지한다.

### 해외유학인원들의 귀국복무에 관한 정책

(1).국가는 각 학과와 기술영역에서 해외유학인원들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세계에서 앞선 일부 학과와 전공,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합작연구개발항목에 대해 국가는 현행규정에 따라 경제적인 장려를 준다.

(2).해외유학인원이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합작단위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합리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단기 초빙유학인원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그 업적에 따라 쌍방의 협상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고 중개활동에 종사한 자는 중개비용 혹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합작연구에 참여하고 합자기업을 꾸린 유학인원들은 특허권, 발명, 전문기술, 관리 등 요소들에 의해 상응 보수분배에 참여한다.

(3).각 지구, 각 부문과 직장에서는 인재의 수요와 재력이 가능한 선에서 적당하게 출자하여 유학인원들이 나라를 위한 복무활동에 일정한 경비제공을 권장한다.

(4).해외유학인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유학인원의 전문지식, 기술특허, 과학연구성과 혹은 합작, 위탁을 통하여 연구개발해 낸 과학연구성과 등 방면에서 반드시 향유해야 할 지식권익을 보장한다. 해외 유학인원들은 개인과학연구성과가 지적 재산권수입분배 중에 차지하는 할당액에서 소득세를 징수한 다음 수입을 외화로 바꾸어 국외에 유출할 수 있다.

(5).국가에서는 각 지구, 각 부문과 직장에서 해외유학인원들이 국가 위해 복무하는데 양호한 사업,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지지한다. 또 그들이 국내 각 경제개발구에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이테크기술개발구, 유학인원 창업원에서 과학기술개발과 과학연구성과전환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국내에서 창업할 때 각 해당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를테면 기업등록, 토지사용, 공상, 세무, 상품검사 등 방면에서 수속을 간편화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현재 중국에서 취직하고 있는 귀국 유학인원 가운데 외국국적을 가진 하이테크 기술, 고급 관리인재들에게는 출입국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정착을 신청한다면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포함) 영구적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한다. 국외의 장기 거류권을 소유한 자는 중국여권, 그리고 부성급시 이상의 정부인사부문의 증명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자녀 입학, 취업 등 면에서 현지 거주민과 같은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 해외화교가 국내에서 자녀를 입양하는데 관한 규정

1. 화교가 국내에 와서 자녀를 입양하는데 아래와 같은 몇 개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 (1). 자녀가 없어야 한다. (화교가 3대 이내의 同輩旁系자녀를 입양하면 입양자가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 부양하고 교육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 (3).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는 의학에서 인정하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 (4). 반드시 만 30세 이상여야 한다.

2. 등록수속을 신청할 때 반드시 바쳐야 학 자료: 이미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에 거주하는 화교가 입양관계 성립에 관한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아래의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여권
- (2). 입양자의 연령, 혼인, 자녀의 유무, 직업, 재산, 건강, 형사처벌의 유무 등 인적 사항이다. 이 증명자료는 반드시 거주국 외교기관 혹은 외교기관위탁기구의 인정과 중국 주재국영사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과 이미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주재국의 영사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해외화교학생이 중국 대륙 대학교에 지망하는 정책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이 중국 대륙 대학교에 입학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기구인 보통대학교연합모집사무실을 설립하였다. (약칭은 聯招辦)

모집조건: 고등졸업수준을 가진 만 25세 이하의 품행이 단정하고 범죄기록이 없고 미혼이며 정신병 및 전염성 질병이 없는 몸이 건강한 학생과 국내에서 홍콩, 마카오, 대만 혹은 국외에 이민 간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 입학할 수 있다.

### 화교와 화인에 관한 법률 및 기구(기관, 단체 등의 사업단위)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리 보호법에 관한 법규

(1990년 9월 7일 제7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한, 근거하여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및 해외 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리와 이익 보호법 법규)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발표하였다)

제1조 귀국 교포 및 해외 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 법규를 제정한다.

제2조 귀교란 귀국하여 본국에 적을 둔 화교이며 화교란 국외에 적을 둔 중국공민을 말한다. 교권이란 화교, 귀교들의 본국 거주 가족을 말한다. 본 법규에서 이르는 교권은 화교, 귀교의 가족, 부모, 자녀 및 그 가족과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 외손녀, 외손자녀 및 화교, 귀교와 자녀 및 기타 친속들을 가리킨다.

제3조 귀교, 교권은 국가 헌법과 국가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향유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행할 공민의 의무를 가진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 기시하여서는 안된다. 국가는 나라의 현실 상황과 귀교, 교권의 특정에 근거하여 혜택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 혹은 국무원 주관 부문의 법정에 의한다.

제4조 현급이상 각급 인민 정부 및 화교업무를 책임진 기구(사업부문)는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관련된 사업을 조직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국가에서는 귀국하여 본국에 적을 두려는 화교에게 안치소를 준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인 수가 비교적 많은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마땅히 적당한 정원의 귀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7조 귀교, 교권은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한을 가지며, 수요에 따라 관련된 사회활동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사회단체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간섭하지 못한다.

제8조 중화전국화교연합회와 지방화교연합회는 귀교, 교권의 권리와 대표하여 법률에 따라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9조 국가에서는 귀교를 안치한 농장, 임장(삼림을 육성, 벌채하는 장소) 등 기업을 지원하고 지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귀교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침범하

여서는 아니되며, 그 귀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지 못한다.

제10조 국가에서는 지정한 법규에 따라 귀교, 교권들의 사회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귀교, 교권들을 채용한 사업체 및 그 자신들은 마땅히 관련된 사회보험에 가입, 참여하여야 하며, 당연히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력을 상실하였거나 경제래원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곤난한 귀교, 교권에 대해서 당지 인민정부에서 구제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 11조 국가 및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귀교, 교권들의 투자산업을 지지하여야 하며 특히 벤처기술기업의 사업을 발전시키며 또한 그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2조 귀교, 교권은 국내에서 공의사업을 시작할 시,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사업을 지지하여야 하며 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귀교, 교권의 친속에서 받은 물자를 국내의 공의사업에서 사용할 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세금 및 관세, 수입 중치세(부가세)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제13조 귀교, 교권의 국내에서의 사유(降唐)부동산 소유권은 국가 법규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귀교, 교권들의 합법적인(징용 또는 이주) 사유(降唐) 부동산에 대해 건설단위에서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귀교, 교권들의 취업에 대해 방조를 주며 필요시 지도적 역할과 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 귀교학생, 귀교자녀와 화교들이 국내에서 진학할 경우에도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제15조 국가에서는 귀교, 교권의 수입에 대해 보호한다.

제16조 귀교, 교권은 외국 친인척의 재산을 상속 혹은 증여 받을 권한을 가진다. 귀교, 혹은 교권은 국외 친속에서 상속받은 유산에 대해 법적보호를 받으며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제17조 귀교, 교권 및 국외 친우와의 내왕 및 통신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귀교, 교권은 출국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부문에서는 마땅히 규정된 기한 내에 수속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만약 귀교, 교권이 정말로 경외 직계 친속이 위독하거나 사망 또는 경외 재산을 기한내에 처리할 특수 경우가 발생할 시, 유관 주관부문에선 응당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증명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출국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19조 귀교, 교권은 또한 출국하여 친속을 방문할 권리를 가진다. 귀교, 교권의 신분인 직장인은 국가 관련법규에 따라 출국하여 친지방문을 할 수 있는 대우를 받는다.

제20조 귀교, 교권은 국가 관련부문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으며 국외에 정착 생활을 비준을 받은 데 대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합법적인 권리리를 침범하지 못하며 이직 휴양, 정년 퇴직, 퇴직한 귀교, 교권 신분인 직장인은 국외 정착 생활시 이직 휴양금, 정년 퇴직금, 퇴직금, 양로금은 원 그대로 발급한다.

제21조 귀교가 자비로 유학, 학술 강연 등으로 출국할 시 그 소속 단위와 관련부문에서는 마땅히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제22조 귀교, 교권의 국외에서의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적으로 맺은 조약 혹은 국제 관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을 시, 침해자는 관련 부문에 요구하여 법규에 따라 처리를 요청하고 혹은 인민법원에 기소하고 귀교화교연합회에서 그에 상응한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24조 국가기관 인원의 직책, 직권을 소홀이 하거나 마음대로 이행함으로 하여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이익이 침해를 받을 경우, 그 소속 단위 혹은 상급 부문에서는 명령을 내려 제지시키거나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범죄행위가 구성되었을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어떠한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귀교, 교권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범해서는 아니되며, 그들의 재산이나 기타 이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책임을 지거나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법으로 귀교, 교권이 사용하는 농장, 임장을 점유할 경우 관련부문에서 간섭하여 되돌려주도록 하며, 손실이 중대할 경우 경제적으로 손실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제27조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제적으로, 불법으로 귀교, 교권의 국내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 관련 부문에서는 간섭하여 되돌려 주거나 또한 손실이 엄중할 경우, 경제적으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

제28조 본 조례 제20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하여 정착생활을 하는 귀교, 교권의 이직 휴양금, 정년 퇴직금 등을 내어주지 않거나 멈추거나, 탐오하였을 경우 관련 부문 혹은 주관부문에서는 간섭하여 경제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손실을 배상하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손실을 조성한 사람들에게 행정적 처분을 준다. 범죄행위가 되었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9조 국무원에서는 본 법규에 따라 실시 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의 실시조례 방안에 따라 실시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조례 방안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리 보호법 실시방법

(2004년 6월 23일 제410호 국무원령 공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귀국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리 보호법》을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신분은 그 상주 호적 소재지의 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민 사무 담당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 인정된다. 학교, 귀국 교포와 장기간 부양관계를 가진 친족이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기관이 발급한 부양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3조 학교, 귀국 교포가 사망한 후 혹은 학교 신분이 변한 후, 그 국내 가족이 법에 따라 인정된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학교, 귀국 교포 및 그 자녀와 결혼관계를 없애고, 혹은 학교, 귀국 교포와 부양관계를 없애는 경우, 법에 따라 인정된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신분이 상실한다.

제4조 縣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리 보호를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縣급 이상 인민정부 교민사무 담당 기관은 관련 부처가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협조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의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친족의 권리 보호 법률, 법규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전개한다. 縣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 범위 안에서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리 보호작업을 해내야 한다.

제5조 학교가 귀국 정착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 출입국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라 귀국 정착증명을 발행한다.

제6조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귀국 정착할 학교에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를 한다.

제7조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및 지방 귀국화교연합회는 그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법에 따라 기타 사회단체를 설립하고,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필요한 합법적인사회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리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합법적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따라 보유하는 재산은 어떤 조직 및 개인이 점유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 교포를 배치하는 농장, 영림 등 기업의 경비를 전용해야 하며, 어떤 조직과 개인도 유용하거나 중간에서 불법 분배할 수 없다. 지방 인민정부는 귀국 교포를 배치한 농장, 영림 등 기업에 부축을 해야 한다.

제9조 귀국 교포를 배치하는 농장, 영림 등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산림, 간석지, 수면 등 자원에 대해, 기업이 법에 따른 사용권을 향유하고, 보유하는 생산수단, 농작물, 생산제품은 어떤 조직 및 개인도 점유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 교포를 배치하는 농장, 영림의 토지를 징수 및 징발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10조 귀국 교포를 배치하는 농장, 영림 등 기업 소재지에서 설치하는 학교, 의료보건 기관은 지방 인민정부 교육, 위생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사회보장 권익을 지킨다. 채용 회사 및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사회보험 요금을 납부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 지방 인민정부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에 대해 구제를 하고 생산, 취업에 대해 부축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수입이 없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제12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법에 의거한 황산, 황무지, 간석지, 농업, 임업 투자개발 및 목축업, 어업 생산에 지방 인민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제13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국내에서 공의사업을 창설하는

경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가 지지를 해야 하고, 그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국외 친척 혹은 친구의 기증물자가 국내 공익사업에 쓰이는 경우, 법에 따라 관세와 수입 부분의 부가가치 세 징수를 감하거나 면제한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및 그 국외 친척 혹은 친구가 국내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기증한 재산이 공익사업에 쓰이는 경우, 법에 따라 소득세 특혜를 받는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국외 친척 혹은 친구가 국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 縣급 이상 인민정부 교민 사무 담당기관은 관련 입국 수속을 하도록 협조하며, 기증인이 기증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법에 따라 기증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감독을 한다.

제14조 국가가 법에 따라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국내 사유 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그 사유 주택에 대해, 법에 따른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및 처벌권을 향유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을 하지 못한다.

제15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사유 주택을 대여하는 경우, 주인과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택 소재지 부동산 관리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임대 계약이 정지할 때에, 임대인은 주택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16조 법에 따라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사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가 국가 주택철거 관리규정에 따라 화폐보상을 주거나 주택 재산권의 교환을 실시한다. 정부가 규정하는 임대료 기준에 따라 대여하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사유 주택은 철거된 경우, 보상 배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관리부문이 관련부처와 협상 후 결정한다.

제17조 화교 자녀가 귀국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다닐 경우 현지 주민 자녀로 여겨 입학수속을 해야 한다; 귀국 교포 학생, 귀국 교포 자녀와 화교의 국내 자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 관련 기관은 국가 규정 및 본 지역 실제 상황에 따라 배려해주어야 한다.

제18조 교포로부터의 송금이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소득이고, 그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적게 주거나, 지불을 연기하거나, 대출을 강행하거나, 불법으로 동결하거나, 몰수할 수 없다.

제19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해외에 가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산을 받고, 증정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우리나라 외국 주재 외교(영사)기관 혹은 외교부가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외국주재 기관은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부탁에 근거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0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보호를 받고, 어떤 조직 및 개인이 불법으로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은닉하고, 파기하거나 훔칠 수 없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우편물을 잃어버리고, 훼손하는 경우, 우편 행정 부문이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출국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부서가 규정한 기한 안에서 법에 따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국외 직계 친족의 위독, 사망 및 국외 재산 처리 등의 특수 상황 때문에 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 관련부서는 신청자가 제공하는 유효 증명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국가 친척 방문 관련규정에 따라 출국하여 친척방문을 하는 대우를 누린다.

제23조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이직 휴양)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허가를 받아 출국 정착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퇴직(이직 휴양)의 대우가 변하지 않는다. 그 퇴직금은 남에게 수령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본래 직장 혹은 퇴직금을 지불하는 사회보험 기관에게 우리나라가 그 소재국에 주재하는 외교(영사)기관 혹은 소재국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생존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퇴직한(이직 휴양) 후에 출국 정착한 후 귀국해서 병원 다니는 경우,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료 대우를 누린다. 국가 퇴직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노동자가 허가를 받아 출국 정착을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 해임, 노동관계 정지 수속을 밟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용 퇴직비 및 관련 대우를 누린다. 이미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한꺼번에 비용을 청산하며,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관계를 정지시킨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허가를 받아 출국정착을 할 경우, 출국하기 전에 법에 따라 전 규정 이외의 기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

제24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이 출국국가(지역)의 입국비자를 얻기 전, 소재 직장 및 학교에서 출국신청 때문에 면직하거나 노동관계를 정지하고, 월급을 정지하거나 퇴학요청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국가 친척방문 관련규정에 따라 출국하여

친척방문을 하는 경우, 휴가 기간 안에서, 그 직장, 세내어 사는 관사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25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하거나 정착할 경우, 규정에 따라 환전할 수 있다; 출국 정착할 경우, 수령한 사회보험금, 주택적립금이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하여 부치거나 가져갈 수 있다.

제26조 우리나라의 외국 주재 외교(영사)기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하는 국제조약 혹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국외 합법적 권리와 보호한다.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은 국외에서 수령할 퇴직금, 위로금 등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 주재 외교(영사)기관은 그 부탁에 근거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27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게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혹은 인민법원에 기소를 한다. 경제 어려움이 있는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에게, 현지 법률 원조 기구는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의 귀국화교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을 해야 한다.

제28조 교민 사무 전문경비를 취급하는 기관,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교민 사무 전문경비를 유용하고, 중간에서 불법 분배할 경우 직접 담당하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따른 행정 처분 혹은 규율 처벌을 한다; 범죄에 해당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유용하고 중간에서 불법 분배한 교민 사무 전문경비는 그 주관부서가 도로 갖다 놓는 것을 명령한다.

제29조 국가기관 직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인정에 얹매여 부정한 일을 하며, 귀국 교포,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의 합법적 권리가 손해를 입게 할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따른 행정 처분 혹은 규율 처벌을 한다; 범죄에 해당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3년 7월 19일 국무원이 공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국 교포 및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 권리 보호법 실시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관련 법률 문서 (국가 및 중앙관련 부서, 위원회)

1950년 1월 1일, 《대외 화교 부동산 상속 및 기여문제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률 서남분원의 의견》

1950년 11월 6일, 《토지 개혁에 화교의 토지재산에 관한 중앙인민정무원의 처리 방법》

1955년 3월 9일, 《외국인이 중국에서의 유산 상속문제로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각지 외무처의 답변》에 관한 지시

1955년 8월 6일, 《화교의 국유 황산황지(荒山荒地)사용 신청 조례》

1963년 4월 14일, 《화교사무위원회, 국가부동산관리국이 화교의 부동산임대관련 사회주의 개조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보고》

1963년 5월 14일, 《서부독일의 라이퉁이 중국어머니의 부동산 상속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반공청, 외교부 영사사의 답변》

1963년 6월 28일, 《최고인민법원의 국외 거주화교가 타인에게 부동산양도를 위탁하는 공증수속문제에 대한 답변》

1964년 10월 29일, 《국무원이 화교사무위원회, 국가부동산관리국에게 하달한 홍콩, 마카오 동포들의 부동산임대의 사회주의 개정 문제에 대한 보고》

1966년 5월 25일, 《인쵸우룽바련의 유산 처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교부의 답변》

1978년 5월 20일, 《캐나다B.C성이 유산 상속에 관한 몇 개의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교육행정청이 외교부 영사사의 통지

1980년 1월 1일, 《재정부가 중외합자기업, 화교, 화교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자택, 및 국유토지 사용에서의 세금 면제 문제에 대한 통지》

1981년 4월 1일, 《국무원화교사업반공청, 국가도시건설총국이 화교의 저택구매, 건축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

1981년 11월 26일, 《국무원화교사업반공청, 국가도시건설총국 상해시에 전달한 화교 개인소유부동산정책 실행에 관한 통지》

1982년 6월 2일, 《최고인민법원이 화교 부동산상속문제관련 외교부영사사에 대한 답변》

1982년 6월 8일 《“문화혁명”기간에 빼앗긴 화교 개인주택관련 정책에 관한 약간의 정책》

1982년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 화교의 국내 자택매매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이미 폐지)

1982년 10월 21일, 중공중앙반공청, 국무원반공청이 하달한 《화교 개인 저택”@정책 회의기록》 등 세 서류

1983년 11월 3일, 중공중앙반공청, 국무원반공청이 국무원화교사업반공청과 농촌건설환경

보호부에 전달한 《화교 사택 정책의 실행 정황 보고》

1984년 4월 23일, 국무원 발[1983]139 서류사상 실행 요구에 의해 국민당 군, 정인원

이 폐기한 부동산을 대리 관리하는 작업에 대한 건설부의 통지  
1984년 7월30일, 《대만의 합법적인 상속인의 상속권이 보호를 받아야 할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84년8월25일, 《개인소유 자택관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건설환경보호부의 약간의 결정》

1984년12월24일, 중공중앙반공청, 국무원반공청 《화교 個人 자택 정책을 속히 실행 할 데 대한 문》 통지

1987년4월29일, 외국의 원 중국에서의 사적 소유 부동산회사에 대한 외교부, 재정부, 농촌건설환경부, 국가외화관리국, 중국은행의 보상 문제

1987년12월9일, 국민들이 조국에 친지방문 온 대만 동포의 가정, 혼인, 재산소송문제 등 면에서의 협조, 조직, 접대 처리에 대한 사법부의 통지

1987년5월23일, 중공중앙반공청, 국무원반공청의 《화교 개인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충 문》에 대한 통지

1987년8월11일, 외국국적 인원, 화교, 홍콩,마카오 동포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답변.

1988년8월9일, 인민법률처리에서 대만인민 관련된 민사소송 건에서의 몇 개의 법률 문제

1989년6월12일, 중국국민이 해외화교의 재산 기부 접수 순서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1989년2월24일,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동포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전에서 공증 서류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사법부의 지시

1989년11월9일, 조선, 몽고의 화교가 귀국 정착하는데 대한 국무원 화교사업반공청, 외교부, 공안부, 노동부, 재정부의 통지

1990년8월19일, 국무원이 화교와 홍콩, 마카오동포들의 투자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1992년12월2일, 재정부가 홍콩-,마카오-대만동포 및 해외동포, 외국국적인 화교의 건설투자에 의해 차지한 토지에 토지점유세를 징수할 데 대한 답변

1990년9월24일, 화교가 부동산 분양 시 분양금액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데 대한 국가 세무국의 답변.

1991년1월23일, 외국기업, 외국인 및 화교, 홍콩,마카오 동포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징수 할 데 대한 통지

1991년8월23일, 중공중앙반공청, 국무원반공청의 원 대만이주인원의 부동산문제처리에 대한 통지

1994년3월5일,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

1999년12월5일,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 투자보호법실시세칙

2000년10월31일, 중화인민공화국귀국화교가족 권리보호법

#### 화교사업관련 기구

중국해외교류협회: 1990년 11월 20일에 설립 되였으며 국내 각 민족 인사들이 결

성한 민간 단체이다.협회는 “광범하게 해외 화교 화인 및 단체들과 연락하여 우호적인 우의와 협작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신문 방송, 유람 관광, 체육 위생, 사회 복지 등 영역에서의 협작과 교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전국 정치협상회 부주석 웃웨이창이 회장직을 담당하고 국무원 화교사업 반공청 부주임 천위찌에등이 부회장 직을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화교 사업 반공청:** 국가총리를 협조하여 화교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주요직책은: 화교사업의 방침, 정책, 법규를 연구, 작성하며, 그 실행상황을 감독, 검사 한다. 중장, 국무원에 화교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화교 관련사업의 발전 방향을 기획한다. 총리를 협조하여 화교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기구와 사회 단체가 실행한 화교 사업에 대해 적당한 조절, 서포팅 역할을 한다. 화교 정책 작업의 정책 제의를 하며 화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화교 및 기타 민간 단체의 단결에 유리한 사업 전개한다. 귀국 화교, 화교 가족의 정당한 합법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관련 기구와 함께 귀국 화교, 화교 가족 관련 정책을 제정하며 귀국 화교, 화교 가족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인대화교위원회: 중국에서 제일 높은 권력기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아래 설립된 아홉 개의 전문기구의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칠십조의 규정이 1983년 제6기 전국인민제1차 회의에서 설립된 것이다.

전국인대화교위원회는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도아래,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권력을 행사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혹은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출, 제안한 화교 관련 의안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전국인대 주석단 혹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화교 관련 의안 및 법률 초안을 제출하고, 전국인대 주석단 혹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위탁한 질의 사항을 심의하며, 피질의 기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화교 업무 관련 법률, 법규의 실행 정황을 감독 검사하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화교관련 법률, 법규의 실행 상황에 대한 국가의 관련 행정 기구 및 사법기구의 보고를 청취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3. 화교 관련 새로운 정황과 중대한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관련 부문, 특히 화교 사업 관련 부문에 견의를 제출한다. 화교 및 귀국 화교와 화교 가족을 접대하고 서신을 처리하며 지방 인대의 화교사업부문과 전국인대 귀국화교대표들과의 컨택을 실시한다.

4. 전국 인대 화교위원회 관련 화교 해외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도하고 조직하는 외교 활동을 진행하며 전국인대 화교위원회 대표단을 협조하여 교포가 사는 거주국을 방문하여 교포들이 현지에서의 권익 확보 상황을 파악한다. 교포들의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건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화교 사업 건설에서의 의견을 청취한다. 교포 거주 국가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포가 거주국에서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전구구인대 화교위원회의 직속 기구

관공실: 1. 비서처 2. 국외처 연구실: 1. 의안처 2. 조사연구처

전국경협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9기 전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아래의 9개의 전문기구의 하나이다전국인민정치협상회(간칭"인민정협")는 중국인민의 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이고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다당합작의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이다. 중국 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 민주를 구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다. 인민정협의 주요 직책은 정치협상과 민주 감독, 그리고 정협의 각 당파, 단체와 각 민족 인사들의 참정 및 의정을 조직하는 것이다.

화교 사업 방면에서의 주요 내용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규정"(2000년3월수정판) 제15조에 의하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국가의 화교 사업 정책 실행을 홍보하고 협조한다. 해외 교포들과의 연락 및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을 조국의 건설 사업과 통일사업에 기여하기를 격려한다. 고로. 인민정협의 화교 사업은 인민정협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당과 국가의 화교 사무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

정협의 역대의 전국위원회의 화교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는 시종일관하게 해외 교포와 국내의 귀국 교포의 단결 및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중요한 직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있다.

1. 전국인대 화교위원회, 국무원 화교 판사처를 협조 하여 화교 립법 및 법률 사업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의 홍보 및 관찰 집행을 하는 것이다.
2. 위원을 조직하여 화교 업무에서 발생한 새로운 정황과 문제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중앙과 관련 부문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다.
3. 대단결의 주제를 파악하고 국내외의 교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애국 통일전선을 공고하고 확대한다.
4. 해외교포들이 중국의 각 분야의 건설에서와 조국통일대업에서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그들에게 참정과 의정의 무대와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이 중국민주정치생활에서의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5. 해외의 자금, 인재,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기 위하여 중개 작용을 하고 나라와 지방건설을 위하여 서포팅 한다.
6. 교포계의 사회 현황과 민의를 반영하고 해외 교포를 도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한다.

#### 사업기구:

전국 정협 홍콩,마카오,대만동포위원회 판사처("전국정협 홍콩-마카오-대만동포국"이라고도 함)는 전국 정협 홍콩-마카오-대만동포위원회의 판사기구와 전국정협판공청이 홍콩-마카오-대만관련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부문이다. 종합처, 홍콩-마카오-대만처, 화교처가 있다.

#### 주요직책:

위원회와 비서장의 지도하에 홍콩-마카오-대만위원회의 비서, 참모, 회의도우미, 서비스 및 연락 작업을 한다. 주요 사업은: 홍콩-마카오-대만교포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제정을 협조하여 제정하고 실행을 협조한다. 홍콩-마카오-대만교포위원회의 신문, 조사보고, 회의기록과 건의의 초안 작성 작업을 한다. 홍콩-마카오-대만교포위원회와 홍

콩-마카오-대만인사들의 의견과 전의를 수집, 연구, 정리하고 반영한다 홍콩-마카오-대만교포들과의 협력과 접대 사업을 하고 홍콩-마카오-대만교포들의 상황을 연구하고 이해한다. 관련 자료를 편집하고 연구하며 지방 정협의 대응하는 위원회와의 연락과 협작을 밀접히 진행한다. 관련 부문과 단위와의 연락, 배합과 협조 작업을 담당하며 정협 반공청이 위탁한 홍콩-마카오-대만교포관련 기자 사업을 담당한다.

#### 중국치공당:

치공당이라 약칭한다. 귀국 화교, 화교 가족의 중, 상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정치연맹의 특성을 갖고 있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바지한다. 주요 창립자는 사도메이탕(司徒美堂)과 천치유다.

치공당은 1925년 10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 되었다. 1931년 홍콩에 본부를 설립했다.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 치공당은 화교들을 동원하여 조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47년 5월, 치공당은 홍콩에서 제3차 대표대회를 거행하고 선언을 발표하여 국민당 당국의 내전을 발동하고 독재를 진행하는 사실을 피로하고 민주 정치를 위하여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1949년 9월, 치공당의 대표 천치유(?其尤), 황명천(?鼎臣)등은 정협 제1기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강령"의 제정에 참여하였다. 새중국이 설립된 후 치공당은 해외에서 국내로 전이 되었다. 1950년, 1952년, 1956년, 1979년, 1983년, 1988년, 1992년, 1997년에 각각 제 4,5,6,7,8,9,10,11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였다.

역대 주석은 천치유, 황명천, 뚉이추이고 현임 명의 주석은 뚉이추이고 부주석은 루어하우차이이다.

현재 치공당은 17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부를 설립했고 멤버가 1.8만여명이다. 치공당 중앙기관에는 반공청, 조직부, 홍보부, 연락부, 리서치부 등 5개 기능부서가 있다.

치공당이 편집 정리하는 내부 저널인 "중국치공"이 있고 중국치공출판사가 있다.

#### 중화전국귀국화교연맹회:

"중국교연"이라고 약칭한다.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전국의 구국화교, 화교가족이 구성된 전국적인 인민단체이다. 당과 정부가 광범한 귀국화교와 해외교포를 연락하는 다리역할을 한다.

중국교연은 1956년 10월 북경에서 설립 되었고 제1기 주석은 천짜위이고 현임주석은 린쪼우쑤이다. 중국교연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근본적인 행위준칙으로 하고 중국인민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귀국화교, 화교가족과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며 해외 교포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중국교연은 애국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본회 강령에 의하여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광범위하게 귀국화교, 화교가족과 해외교포를 단결시켜 전 세계의 평화와 중국의 진흥, 그리고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중국교연의 하설기관은: 반공청, 조직인사부, 연락부, 경제사

업부, 문화사업부, 법률사업부, 직속기관당위 등이 있다.

#### 화교농장:

광동성(廣東省)에는 현재 23개 화교농장이 전 성의 14개 지방급(地級) 이상의 시에 분포되어 있다. 토지면적은 1148km<sup>2</sup>, 그 중 경작지 면적은 163km<sup>2</sup>, 임지면적은 280km<sup>2</sup>이고 총인구는 289,346명,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4개 국가의 귀국피난화교(모종 원인으로 중국으로 귀화한 외국국적의 중국인)는 89,669명이다. 재직 직원은 69,262명, 그 중 피난교직원은 21,945명이다.

복건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교 향이기도 하고 귀국피난화교를 제일 많이 안치한 성시의 하나이다. 1953년부터 70년대 말까지 연이어 17개 화교농장을 설립하였는데 현재 토지면적은 48,187무, 총 인구는 75,919명, 그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국가와 지구의 귀국피난화교 32,664명, 직원인수는 1.6만명이다.

광서화교기업은 현재 화교농장 17개, 화교영림 5개, 학교공장 7개, 대내외무역회사 5개, 및 농장에서 꾸리는 81개 공장, 외국상인이 투자한 기업이 32개가 있다. 기업은 9개 지역, 15개 현에 분포되어 있고 총 인구는 12.5만 명, 그 중 직원은 4.8만 명이고 갖고 있는 토지면적은 155.3만畝, 그 중 농, 임업 이용면적은 72만畝이다.

1985년전, 광씨(廣西)화교기업은 중앙과 자치구인민정부가 이중으로 영도하는 관리체제를 실행하다가 1986년에 자치구인민정부가 자치구화교기업관리국에 위탁하여 직접 관리하게 하였다. 1997년에는 지방인민정부에서 주관하게 하였고 광서화교기업 관리국에서 업종관리직능을 행사하게 하였다.

1960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원난성(雲南省) 화교농(임)장은 12개 화교농장과 1개 화교인공삼림(林場)을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국가의 귀국피난화교 36,405명을 안치하였다. 현재 인구는 41,404명, 그 중 귀화한 화교는 21,764명이다. 토지면적은 424,291畝, 그 중 경작지면적은 83,331畝이고材林면적은 140,000畝이다.

하이난성(海南省) 쟁룽(興隆), 빈춘산(彬村山), 원창(文昌), 청마이(澄邁), 뚉황(東方) 5개 화교농장은 각각 해남성 동, 서부지역의 완닝(萬寧), 충하이, 원랑, 청마이, 뚉황 등 시, 현에 위치하고 있다. 이 화교농장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설립되어 귀국피난화교를 안치하는 화교기업에 속한다. 현재 인구는 56,811명, 직원은 16,352명이 있다. 그 중 귀국피난화교는 13,644명인데 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1개 국가에서 왔다. 토지 총면적은 508,351畝이고 개발 가능한 토지가 아직 10만畝가 있다. 현재 갖고 있는 고정자산은 32,271만원, 2000년 국내생산총액은 10,800만원이다.

jiangxi성(江西省)에는 아우산(敖山), 천평(金坪), 씨우꾸(秀谷) 등 3개 화교농장이 있다. 농장의 전신은 지방국영개간지에 속했으며 1957년 말에 설립되었다. 1979년에 국영화교농장으로 개칭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귀국피난화교와 및 그 자녀 1,442명을 안치하였다. 1979-1987년 화교농장은 농장이 속하는 성 화교사무실의 영도를 받았다. 1987년 성 정부에서는 3개 화교농장을 각기 권력을 상고(上高)현정부,

길안(吉安) 지방행정공서, 김계(金溪)현 정부에 분산하여 직접 영도하게 하였다. 3개 화교농장은 현재 총 인구가 15,134명, 그 중 귀국피난화교 및 그 자녀가 1,511명이 있다. 토지 총 면적은 107,354畝, 그 중 과수원의 면적은 21,000畝이다.

찌린성(吉林省) 부여화교농장(길림석유집단화교실업유한회사)은 1967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는데 부여 이가점농장의 1, 2분점 및 부여신민향 3개 지식청년이 거주하는 지점을 기초로 하여 중국교민위원회가 투자하여 건설한 장강이북의 유일한 화교농장으로서 취지는 조선에서 귀국하는 대량의 화교를 안치하는 것이었다. 선후로 길림성 부여 대연합농장, 길림성 백성지역 대연합농장으로 개칭하였다. 1979년 10월에 다시 금길림성 부여화교농장으로 고쳐 길림성 인민정부화교사무실에 직속되었다. 1991년 8월 2일, 길림성 인민정부의 비준으로 길림성 유전관리국에서 건설 기획함으로써 길림석유집단에 직속되는 여러 종류의 경영기업이 되었다. 전체 회사의 땅의 넓이는 47,525畝, 그 중 경작지는 18,600畝, 초원은 15,338畝, 수역면적은 6,030畝이다. 전체 회사의 총 인구는 4,070명, 현 직원은 1,700명, 그 중 퇴직, 휴양하는 직원은 480명, 귀국피난화교와 귀국피난화교 가족은 930명이 포함된다.

화교학교: 북경중국어학원(원명은 북경화교학생보습학교, 북경중국언어문화학교) 1950년에 설립된 이 학원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중국어교육에 종사하는 학원으로서 주요하게 많은 화교, 외국국적의 중국인과 홍콩, 마카오 동포들에게 한어와 중국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무원화교사무실에 소속되며 중국대외한어교육학회의 중요한 구성단위이다.

기남대학은 중국의 첫 국립 학교대학이다. "기남" 두 자는 "상서우공"에서 나온다. 그 의미는 중화문화를 멀고 먼 해외까지 전파하는 뜻이다. 학교의 전신은 1906년 청정부에서 창립한 남경의 기남학당이다. 1921년 동남대학과 함께 상해에서 중국의 첫 상과대학 상해상과대학을 공동으로 꾸렸다. 1927년 상해에서 국립기남대학이 성립되었다. 항일전쟁기간, 복건건양으로 이사하였고 1946년 다시 상해로 옮겼다. 1949년 9월에 운영을 중지하여 복단대학, 교통대학 등 대학과 합병하였다. 1958년 광주에서 다시 설립하여 중국과학원원사 전위장이 명예총장을 겸임하고 학교 제4기 이사회 이사장, 저명한 고체역학전문가 유인회교수가 총장을 담임하였다.

현재, 전일제학생은 12,360명, 그 중 화교, 홍콩, 마카오와 외국국적유학생 4,323명이 있다. 박사과정, 석사과정 연구생은 2,007명, 4년제 학생은 9,542명이고 그 외는 전문과목, 예과학생이고 이외 성인교육학생 5,716명이 있다.

화교대학은 1960년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화교, 외국국적의 중국인청년육성을 취지로 하는 종합성 고등학부이다. 이 대학은 중국역사에서 문화로 이름난 성시인 유명한 화교향 복건성 천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임총장은 걸출한 국무활동가,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부위원장 廖承志선생이다. 현재 총장은 전국정협위원회 위원, 경제학자 오승업교수이다. 화교대학은 국무원교민사무실에 소속되며 해외를 향해, 홍콩과 마카오 지역을 향해 학교를 꾸리는 것을 취지로, 응용형, 외향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는 현재 재학생 14,000명이 있는데 전국 각지와 열 몇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왔다.

**곤명화교학생보습학교**는 해외화교, 외국국적의 중국인, 홍콩과 마카오 동포 및 기타 외국인을 향하여 한어와 중화전통문화교육을 전개하는 것을 취지로 중외문화교류와 협작을 촉진하는 종합성언어문화학교로서 운남해외문화교육중심(YOCEC)과 협작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다. YOCEC는 해외를 향하여 학교를 꾸리는 취지를 견지하며 학교경영양식이 다양하고 학교교육제도가 원활하다. 이 학교는 언어문화교육을 위주로 중국전통문화의 전파를 보조적으로 하면서 중국전통문화에 일정한 이해가 있고 해외 사회의 각계 수요에 적응할 수 있고 능숙하게 중국어를 운용하여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배양에 힘쓰는 것이다. YOCEC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서 남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외한어교학을 전개한 학교이다. 2000년 4월, 국무원화교사무실에서는 중국어교육기지 "국무원화교사무실 중국어교육 곤명기지"로 확정하였다.

#### 등소평이 화교사무를 논하다.

최근 당 11대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임무를 제기하였습니다. 저가 이제 금방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 했으나 많은 일들은 아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하면 해외교민에 관한 사업을 일정에 옮려놓아 과거의 교민사무기관을 회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관이 없으면 이 일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는 아마 이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 교민사업의 정책은 모주석, 주총리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은 회복해야 하고 일부 문제에서는 개정하고 또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완벽하게 하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은 개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통일전선부를 회복하였습니다. 과거 "사인무리"들이 통일전선을 파괴하여 통일전선마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당"을 지어 "보살"로 하여금 안에서 관리하게 하여 애국인사, 민주인사, 종교인사 등을 더 단결시켜야 합니다. 교민사업의 회복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걸리고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경축활동에 참가한 화교, 외국국적의 중국인,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여행단체가운데의 일부 구성인원을 접견하였을 때의 연설(1977년 9월 29일)

교민사업 면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범죄"를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사당"을 지었고 늙은 "보살"은 바로 요승지 동지입니다. 그는 교민사업위원회주임을 담당한지 몇 년이 됩니다. "보살"이 영험한지 아닌지는 "보살"의 재주를 봐야 합니다.

국가경사활동에 참가한 화교, 외국국적의 중국인,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여행단체의 부분 구성인원을 접견하였을 때의 연설(1977년 9월 29일)

정책은 여전합니다. 과거에 올바른 것은 계속 가져가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완벽하게 해나가고 합당하지 않거나, 그릇된 점은 고쳐가는 것입니다. "사당"이 지어졌다고 금방 효험을 보거나 100%로 효험을 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당"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축활동에 참가한 화교, 외국국적의 중국인,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여행단체의 일부 성원을 접견하였을 때의 연설(1977년 9월 29일)

전국이래 국가가 해외교포들에 대한 관심은 비상하였습니다. 물론 이 12년이래 "사인무리"의 방해와 파괴를 받았습니다. 교민사업기구는 없어졌고 과거 화교사무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후에는 없어졌습니다. 해외교포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우리도 곤란에 부딪쳐 일부 문제는 응당 해결했어야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인무리"는 파탄되었고 과거 모주석, 주총리께서 제정한 방침, 정책은 국내에 대한 것이든 혹은 국외에 대한 것이든 화교정책을 포함하여 응당 회복해야 할 것은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화교사업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당신들이 모두 익숙히 알고 있는 요승지 동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양광화교대표를 접견하였을 때의 강화(1978년 1월 30일)

"4인방"은 과거의 정책을 파괴하고 개변시켰다. 이는 주로 국내의 이른바 해외관계문제에서 반영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의 친척들마저 차별대우를 받고 그들의 왕래도 지장을 받았다. 많은 해외교포들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는 실로 그릇된 정책이었다. 또한 화교들의 합법적인 권리도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하였지만 이도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작년 국경절에 나는 응당 "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간 조직이 없고 관리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반드시 "절"과 부처가 있어야 하며 요승지는 바로 "부처"이다. 전에 화교사무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현재는 교무사무실이라고 한다. 양자의 성질은 마찬가지로 "절"을 세우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절"과 "부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친구들은 자녀가 귀국할 수 있는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출국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기실 "절"만 있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주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 할 문제이었다. 출국하였던 사람은 귀국할 수도 있고 귀국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돌아왔던 사람들도 다시 출국할 수도 있어야 하기 마련이었다. 과거에 실로 일부 문제들은 합리적이 되지 못하였다.

북경참관중인 화교, 화인대표 접견 시에 하였던 연설 (1978년 4월 30일)

국내에서 모주석과 주총리가 제정하였던 교무정책은 과거에 임표, "4인방"의 방해로 화교뿐 아니라 중국인 후예들과의 왕래도 거의 불가능하였었다. 해외교포들과의 친척 관계, 친구 사이는 자칫하면 "해외관계"가 복잡하다는 누명을 썼다. "4인방"을 분쇄한 뒤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모주석과 주총리가 제정한 정책을 거듭 천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화교 또는 중국인 후예들과의 왕래에 편리를 주어야 하며, 국내의 친척들이 화교 또는 중국인 후예들의 사는 나라에 가서 거주하거나 친척방문을 할 시에도 응당 편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하지 못하였거나 불합리하게 처리를 하였을 경우,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정황을 반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 처리하는 일부 직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것이다. "4인방"이 방해를 주었던 과거에는 이 방면의 사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었다. 작년 국경절에 나는 "절"을 세우고 "부처"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현재 국무원에서는 교무관리사무실을 세웠다. 이로써 "절"이 있게 되었으며, "절"에는 "부처"도 있다. 주요한 부처는 바로 요승지이다.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으면 이 조직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일부 처리하지 못할 사정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에게 해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중국 친척들이 방문을 것을 기대하지만 부분적으로 특수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이 불 가능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럴 경우 여러분에게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만약 그들의 해석에 이해가 가지 않으면 비판을 진행할 수 있다.

태국 방콕에서 화교, 중국인대표 접견 시 하였던 연설 (1978年11月9日)

"4인방"의 방해와 파괴로 많은 손해를 받았다. 많은 일들이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해외교포와 대만동포 관리조직이 없어졌다. 국내에서 재를 입었을 뿐 만아니라, 여러분들로 피해를 받았다. 현재 당중앙에서 "4인방"을 분쇄하였기에 이러한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할 수 있다. "4인방"이 횡행하였던 과거에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회복하여야 할 문제는 회복하며 개선하여야 할 문제는 개선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하나 해결하여야 한다. "4인방"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주석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밥은 한입한입 먹어야 한다."4인방"이 파괴하였던 문제들은 비교적 크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결하여야 한다. 국경활동에 참가한 화교, 중국인, 대만 홍콩 마카오 동포 관광팀 부분적 사람들 접견 시 하였던 연설 (1977년9월29일) 이른바 "해외관계"가 복잡하여 신임할 수 없다는 설법은 반동적이었다. 현재 우리는 해외관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적다. 해외관계는 좋은 현상이다. 해외관계를 통하여 여러 방면의 관계를 개척할 수 있다. "4인방"은 화교를 "지주, 부자, 반동, 악"과 병렬시켰는데 이런 설법과 작법은 반드시 교정하여야 한다. 중앙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노력하여 정책교육을 진행할 결심을 내렸다. 나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유산계승, 결혼 등 원인으로 모두 나갈 수 있다. 돌아오려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환영한다.

국경절 홍콩 마카오 동포 대표단과 홍콩유지인사 이명택부부 접견 시 하였던 연설 (1977년10월2일)

금후 이러한 일들이 차츰 늘어날 것이다. 특히는 화교들의 가족 출국요구. 나는 정책을 느긋하게 하는 쪽으로 편향된다. 이렇게 하면 폐해가 적고 이익이 많을 것이다.

미국 친척의탁 신청편지에 내린 지시 (1977년12월20일)

"4인방"분쇄 이후, 우리는 교무정책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기존의 교무정책은 "4인방"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그들은 일체 해외관계를 적대관계로 여기였다. 이는 도리어 국내에 있는 화교친척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우리는 일관적인 정책을 정비하고 회복하였다. 우리가 정비한 교무정책의 주되는 요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화교들이 주재국 국적을 자원 선택하도록 격려한다. 화교가 많은 나라들에서는 화교들에 아주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화교들이 당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격려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주재국에 가입한 이상은 주재국인으로서 응당 그 나라에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우리는 중국국적을 보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재국국적가입을 강박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국적보류인들이 주재국의 발전과 양국 우의를 위하여 기여할 것을 요구하며 주재국의 법률을 지킬 것을 희망한다. 중국에서도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마련이다. 이 역시 국제관례이다. 셋째, 우리는 예로부터 이 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시종일관하게 실시하여 온 정책이다.

태국총리江?접견시의 연설 (1978년3월30일)

일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각 부문의 기본방침, 기본정책을 대체로 세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많은 작업이 수요되며 부단히 경험을 모아야 한다. 주로는 국내의 정책이다. 정확한 부분은 긍정, 회복하고 다시 천명해야 할 부분은 천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제정하여야 한다. 다시 천명하여야 할 정책은 모두 모주석과 주총리가 과거에 제정하였던 부분이다. 예를 들어, 교무정책은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 전부 과거에 제정하였던 그대로이다. 최근 태국에서 열린 교무예비회는 동남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총리는 동남아의 여러나라들에서 격정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모두 과거의 정책이지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며 다만 다시 천명하였을 뿐이라고 알려졌다. 단지 세조목에 지나지 않는다. 제1조, 화교의 주재국국적가입을 격려한다. 주재국 국적 가입 후에는 반드시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공민의 의무이다. 물론 화교들은 또 우리나라와 주재국 사이, 인민들 사이의 우의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에 이런 작용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후에도 이러한 것이다. 제2조, 화교는 반드시 자원으로 주재국국적에 가입하여야 하며 절대로 강박할 수 없다. 그들이 기존의 국적을 보류하였더라도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정부 또한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에도 일관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시하였다. 총리는 모두 듣고 나서 그렇다면은 안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에 그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부 다시 천명하여야 할 부분이다.

북경참관중인 화교, 중국인 대표 접견 시의 (1978년4월30일)

우리가 다시 천명하여 한다고 말하는 교무정책은 기실 모주석과 주총리가 제정하였던

교무정책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재 천명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일부 친구들,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 재 천명이 화교에 대한 중국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변화가 없음을 솔직하게 말한다.

제1조, 중국정부는 화교의 주재국 국적 가입을 격려한다. 만약 주재국 국적에 가입하였다면 소재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향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우리는 화교의 국적선택을 절대로 강요할 수 없다. 현재는 태국국적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장래에 자원적으로 가입하려 하면 우리는 찬성하고 격려한다. 하지만 중국 국적을 보류하고 태국국적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 하여도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의 사람들은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주재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주재국 인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또 있는 힘껏 주재국 발전을 도와야 한다. 또한 국제관례에 따라 이 부분 화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태국정부와 태국인민들은 화교와 아주 우호적이다. 물론 개별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총적으로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아주 만족하고 있다. 특히는 태국국적에 가입하고 중국국적도 보류한 화교들은 태국인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 태국방콕에서 화교, 중국인 대표 접견 시의 연설 (1978년 11월 9일)

림표 "4인방"이 횡행하던 시기, 교무정책은 아주 엉망이었다. 국내에서 화교 혹은 중국인 친척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으며 자칫하면 해외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관계만 있으면 매국이라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감방에 보냈다. 화교와 중국인들은 중국에 친척방문도 올 수 없었으며 서로 통신도 불가능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람은 중국내에 몇 천명도 넘어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화교와 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다시 천명하였던 것이다. 화교는 역사적으로 형성 되었다. 다시 말하여, 중국인이 세계 여러나라 특히 동남아에 가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위의 세가지 원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 (1) 중국만의 독특한 기회

중국인은 떨쳐 일어나야 한다. 대륙은 이미 상당한 기반 시설이 되어있다. 우리는 몇 천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해외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들은 중국이 흥성발달하기를 바란다. 이런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이다. 우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을 발전시켜야 하며 다른 나라의 일은 적게 걱정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제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부리지 않는다. 다음 세기 중국은 큰 희망이 있다.

《중화민족을 진홍시키다.》 (1990년 4월 7일),

《등소평문집》 제3권 제358쪽

희망컨대 당신들은 기회를 잘 포착하기 바란다. 중국을 놓고 볼 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다.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같지 않으며 자기만의 특유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예하면 우리는 몇 천만에 달하는 애국동포들이 해외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다.

상해 각 분야 인사들과의 새해맞이 좌담회에서 한 강화 (1993년 1월 22일),  
『인민일보』 1993년 1월 23일

외교부인사는 일부 화상학자들은 귀국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주은래동지는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 우리들은 조건을 창조하고 집도 지으면서 그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공작을 하여야 한다. 그들이 귀국하면 꼭 집이 있어야 하며 또 필요한 사업조건이 있어야 한다. 화교들이 귀국하는 것은 우리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한 가지 구체적인 조치이며 사람을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것도 한 가지 구체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또 국외의 유명학자들을 요청하여 세미나활동도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하고 우호적인 학자들이 많기에 그들을 요청하여 중국에 와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겠는가?

『과학과 교육 사업에 대한 몇 가지 견의』 (1977년 8월 8일), 『등소평문집』 제2권 제57쪽

기타 분야에도 모두 문제가 있다. 예하면 통일전선, 화교업무방면인데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총리께서는 삼년 내에 일부 과학자들을 모셔올 것을 계획하셨다. 어떤 과학자들은 돌아와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의 조건이 외국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주총리의 계획은 "사인무리"의 파괴로 날아가 버렸다. 주총리가 바로 그들이 반대하는 주요목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주총리의 그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조건을 창조하고 집을 쪄야 한다. 무릇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국내에 모두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셔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인재를 급히 요구하는데 안 모셔오면 어떻게 하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창조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연구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

국경활동에 참가하는 화교, 화인, 타이완 홍콩 마카오 여행단의 부분 성원들을 접견할 때의 강화 (1977년 9월 29일)

나는 유학생을 증가 파견하는 것을 찬성한다. 파견해서 주로 자연과학을 학습시킨다. 수천만씩 파견해야 하지 그저 열이나 여덟씩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연구하길 바라는데 이 방면에서 금전을 많이 쓸 만하다. 이것은 5년 내에 인차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교육수평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지금 우리의 발폭은 아직 작다. 온갖 수단을 써서 발폭을 크고 빨리해야 길

이 갈수록 넓어진다. 우리는 한 방면으로 우리의 대학수평을 제고해야 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사람을 외국에 파견해 학습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비교가 생기는데 우리가 자신의 대학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를 알 수 있다. 유학생 관리 제도도 개변해야 하며 너무 보수적이면 안 된다. 유학생은 학교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외국친구 집에 거주할 수도 있다. 방학이 되면 그들더러 귀국하여 국내정황을 요해하게 할 수 있다.

청화대학을 시찰할 때 교육부 여러 간부들의 담화(1978년6월23일)

외국의 지력을 이용하려면 외국인들을 청해서 우리의 중점건설 및 각 방면의 건설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고 결심이 크지 못하다. 현대화건설을 하려면 우리의 경험의 부족하기도 하고 지식도 결핍하다. 외국인을 청하는데 얼마만한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전문적인 한 프로젝트에 대하여서든 청해온 다음에는 그들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전에는 연회와 걸치례가 많았고 묻는 것이 적었으며 그들의 도움을 꺼렸으나 그들은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지금도 개방한 것이 철저하지 못하다. 서구라파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용하여 그들과 기술을 합작하여 우리들의 기술 개조가 될수록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동구라파국가와 합작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며 그들의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진보했다. 우리의 것도 그들이 수요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큰 시장으로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모두 우리나라와 합작하고 거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 문제이다.

(외국지력을 이용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자)(1983년7월8일) 《동소평문집》 제3권 제32쪽

『박사후』는 나에게 새로운 사물이며 새 명사이다. 너무 많은 박사후들이 귀국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른다. 때문에 박사후유동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양과 등용을 잘 결합시켜 채용하면서 배양하고 배양과 채용 중 더욱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열개의 박사후유동점은 너무 적다고 본다. 마땅히 백, 천개의 유동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주요한 것은 지점을 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돈을 지불하여 집 짓고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는 것이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미국적 화인교수 이정도를 만날 때 한 말씀(1984년 5월 21일)

우리들은 당의 11기3중전회 이후의 5년 사이에 많은 일들을 했고 또한 중화민족의 지식과 노동을 바쳤다. 지금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해외동포들의

지식과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이 더 많겠죠. 오늘 당신들과의 만남은 당신들의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후 더욱 많은 지식과 노동을 제공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해외친인과 친구들이 더 많은 지식과 노동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1984년10월2일)

중국인민은 일떠섰다. 다시는 세계의 이등공민이 아니다. 지금 우리들의 건설은 지식이 부족하다, 당신들은 지식인이기에 계속 노력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기여하기 바란다. 중국의 지식분자 문제는 특수한 문제로서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매우 절박하고 중요하다.

〈해외친인과 친구들이 더 많은 지식과 노동을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1984년 10월 2일)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대하여 나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유리한 조건을 봐야 한다. 이 몇 년 사이의 경제발전은 아주 빠르다. 경제는 기초이며 경제발전은 필연코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나라 시, 향(鄉과) 사회 각 계층에는 대단한 학교건설 열정이 내포되어 있다. 적지 않은 애국교포들이 돈을 지원하여 학교를 건설하고 있다. 지금 정확한 지침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각 관계자들이 열심히 잡기만 하면 교육문제는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착실히 몇 년 동안 잡다보면 중화민족의 교육사업은 전에 없었던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교육사업을 착실히 틀어쥐자〉(1985년 5월 19일)

인간은 제일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한테는 외국에 있는 몇 만 명의 유학생이 재부이며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하나는 박사후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구, 개방도시에서 유학생을 초빙하는 방법이다.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야 한다. 박사후는 다만 적은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방면으로부터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속박하기에 개혁하여야 한다. 초빙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명단이 있어야 하며 빨리 기획을 하여야 한다. 특히는 과학연구기구인데 지금부터 초빙해야 한다. 제일 우수한 사람부터 먼저 초빙하여 데려와야 한다. 공담을 적게 하고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실사이며 매 회사, 매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일 우수한 사람에게는 조건을 높여줘야 한다.

미국적 화교인 이정도 교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유관부문 책임자의 회보를 받을 때 한 담화(1985년7월16일)

교육은 한 민족의 제일 근본적인 사업이다. 4개 현대화건설의 실현은 지식에 의

거해야 하며 인재에 의거해야 한다. 정책상의 착오는 쉽게 고칠 수 있으나 지식은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재도 하루 이틀에 배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잡아야하며 어린이부터 잡아야 한다.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것은 장원한 근본 정책이다. 지금 우리는 지식이 결핍하고 인재가 결핍하다. 앞으로 갈수록 이 방면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발달한 국가와 비겨볼 때 우리가 많이 뒤떨어졌지만 모두가 낙후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원자탄, 유도탄, 수소탄이 있으며同步性이 하늘로 올라가고, 통신위성도 수출되고 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이런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하여 국가의 분량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는 아직도 낙후하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 지금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은 매우 빠르며 미국은 "성구대전", 유럽은 "유리카" 기획을 하고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 지를 불문하고 이것은 과학지식의 비약적인 전진을 대표한다. 이는 군사방면의 작용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공업과 기타 방면의 발전도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가만 있을 수 없다. 고과학기술영역에 투자를 하는데 적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기본 영역에 도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들보다 우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있어야 한다. 예하면 레이저, 생물공정, 입자속, 컴퓨터 등이다. 이런 것을 만드는데 기존의 인재를 이용하여야 하며 홍콩 인재도 용납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유학생, 화인학자들도 힘내기를 바란다. 화인중에는 인재가 아주 많다. 예하면 이정도, 양진우인데 이런 인재가 많았으면 좋겠다.

홍콩유명인사 포옥강, 왕관성, 확영동, 이조기를 접대할때의 담화(1986년4월 19일)

제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손실이다. 국외에서 공부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좋은 사업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귀국한 후 장점을 발휘하게끔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고과학기술센터를 꾸린 목적의 하나가 바로 인재를 흡인하여 귀국하게 하려는 것이다. 소수의 최고인재에 대한 대우는 더 좋을 수 있으며 또한 더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재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격적으로 승진시켜야 한다.

미국적화인 진성신교수와 부인을 만날때의 담화(1986년11월3일)

우리한테는 몇 만 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 사업할 조건을 창조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유학생은 돌아온 후 사업조건이 구비되지 않고 또 그들을 안배할 기관이 없다. 어떤 학과는 아직 우리한테 없다. 종합적인 과학연구센터를 꾸리고 약간의 전업을 설립하거나 현유의 일부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에 일부 전업을 세워서 이런 사람을 채용하여 이 분야를 연구하게 한다면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다.

《과학기술은 제일 생산력이다.》 (1988년 9월5일, 12일) 《등소평문선》 제3권 275쪽

근 몇 년래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많은 진보가 있었다. 90년대에는 더욱 빨리 진보하기 바란다. 각 분야에서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고과학기술분야에서 중국도 한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나는 문외한이다. 하지만 나는 과학기술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한 공헌과 쟁취한 명예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은 전학삼, 이사광, 전삼강 세대의 노과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하에서 兩彈一星과 많은 고과학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과학자들은 더 행복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요구도 더 높다. 내가 말했듯이 지식분자는 공인계급의 일부분이다. 노과학자, 중년과학자들도 중요하지만 청년과학자들도 아주 중요하다. 모든 출국하여 학습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과거의 정치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물론하고 모두 돌아올 수 있으며 합당하게 안배할 것이다. 이 정책은 변할 수 없다. 그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공헌을 하려면 귀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희망컨대 여러분들이 합작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의 빠른 발전을 위하여 실제적인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란다. 과학기술을 하려면 높을수록 좋고 새로울수록 좋다. 더 높고 더 새로우면 우리는 더욱 좋아할 것이다.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도 좋아할 것이며 국가도 좋아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국가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무창, 심천, 주해, 상해 등지에서 한 강화 요점》 (1992년 1월18일-2월 21일) 《등소평문선》 제3권 378쪽

#### (1) 조국통일 대업을 촉진하자

당신들이 중미 두 나라 인민들의 우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대만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통일조국대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을 바란다.

《미주화교일보》을 위하여 쓴 머리글 (1979년 2월5일)

여러분들이 자주 돌아와 보고 국내 정황을 더욱 잘 요해하면 국제상의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화상과 외국친구들에게 해석을 해 줄 수 있다. 희망컨대 여러분들이 조국의 통일과 네 가지 현대화를 촉진하는데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더욱 많은 공헌을 하시기 바란다.

국경활동에 참가한 화교, 화인, 타이완 홍콩 마카오 동포 여행단의 부분 성원을 만날 때 한 말 (1979년 9월29일)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 통일을 이루한다면 민족을 위하여 공을 세우고 인민들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와 국민당은 두 번 합작한 적이 있다. 현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은 역사의 조류에 순응하는 것이며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다. 우리는 대만 정부와 같이 조국 통일을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나서기를 바란다. 대만 동포들의 넘치는 애국심은 조국 통일의 대업을 위하여 큰 공헌을 할 것이다. 각 민주당파와 공상연합은 대만동포, 홍콩과 마카오 동포 및 국외교포와 광범한 연계와 영향이 있다. 당신들이 대만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과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을 바란다.

(각 민주당파와 공상연합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 힘이다.) (1979년10월19일) , 《등소평문선》 제2권 제206쪽

우리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타이완에 평화적 통일을 실행할 것을 주장한다. 연관 정책은 모다 다 알고 있는 것이며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중화민족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대세는 이미 조국이 언젠가는 꼭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쪽으로 기울었다. 희망컨대 홍콩, 마카오, 타이완 동포들과 해외 교포들을 포함한 전국 모든 민족동포들이 이 날이 빨리 오게끔 다 함께 촉진하기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성립3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말》(1984년10월1일) 《등소평문선》 제3권 제70쪽

마이클 화라스 : 타이완은 왜 대륙과 통일해야 합니까?

등소평 : 우선 이것은 민족의 문제이고 민족의 감정문제입니다. 무릇 중화민족의 자손은 모두 중국이 통일하기를 바랍니다. 분영상황은 민족의 의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만이 대륙과 통일하지 않는다면 타이완이 중국영토로서의 지위는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한 개 국가 두 가지 제도”的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대륙에서는 사회주의를 실시하고 타이완에서는 그의 자본주의 길로 나가면 됩니다. 이는 타이완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타이완인민에게도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완과 대륙의 발전정도를 비교할 때 이는 객관적으로 볼 문제입니다. 거리는 잠시적인 것입니다. 대륙을 놓고 볼 때 건국 37년 동안 비록 실수가 있어 지체되긴 했지만 대륙의 현행정책에 의해 그 발전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으며 그 거리도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대륙이 몇 년 사이에 적어도 타이완의 발전속도보다는 느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타이완은 자원이 부족한데 비하여 대륙의 자원은 풍부합니다. 만약 타이완이 이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했다면 대륙은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았으며 이 잠재력은 곧 발휘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역량으로 말할 때 현재 대륙은 타이완보다 아주 많이 강합니다. 때문에 타이완의 국민평균소득이 대륙 보다 좀 높다는 것으로 비교하면 전면적이 안됩니다.

《미국기자 마이클 화라스에 대한 답변》 《등소평문선》 제3권 제170-171쪽

최근 타이완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지금 타이완의 일부 사람은 “일국양

부”를 하려고 하고, 연합국의 규면마저 바꾸려 한다. 실지로는 두 개 중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연합국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정부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하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 부분이라고 한다. 어떻게 타이완을 중국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건 아니다. “한 개 국가, 두 가지 제도”的 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다. 타이완은 “한 개 국가, 두 가지 제도”를 실시한다 해서 손해 볼 게 없다. 지금 타이완에게는 기회이며, 전체 민족에게도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타이완을 추동하여 통일로 나가야 한다.

대륙은 중국의 주체이며 11억 인구를 갖고 있다. 그중 한족은 92%를 차지하며 소수민족은 8%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민족정책은 정확하며 진정한 민족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민족의 이익을 돌보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중국의 중요한 특점중의 하나가 바로 큰 민족내분이 없는 것이다.

대륙 동포,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동포, 그리고 해외화교들은 모두 중화민족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다 함께 분투하여 조국통일과 민족 진흥을 실현하여야 한다.

《함께 노력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자》 (1990년9월15일) 《등소평문선》 제3권 제362쪽

우리는 반드시 전국 각 민족인민의 대단결을 강화하고 공인계급이 영도하는 공업농업연맹을 기초로 하고 애국민주당파, 애국인사와 타이완동포, 홍콩 마카오동포, 해외교포들을 포함한 통일전선을 발전시키고 모든 적극요소들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전국경축활동에 참가한 화교, 화인, 타이완 홍콩 마카오동포들을 위하여 준비한 초대회에서 한 축사(1977년 9월29일) 《인민일보》 1977년9월30일

타이완동포, 홍콩 마카오동포와 국외교포들의 마음은 조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각오가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조국통일대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조국의 현대화건설을 지원하고 국제폐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날로 중요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새 시기의 통일전선과 인민정협의 임무》 (1979년6월15일) 《등소평문선》 제2권 제186쪽

새 시기 통일전선은 사회주의 노동자와 애국자의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애국자의 범위는 아주 넓은데 장경국을 포함하여 타이완이 조국에 돌아오는데 애국의 행동을 했다면 된다. 현재 세 차례의 국공합작을 말할 수 있다.

현 단계의 통일전선은 혁명적 애국 통일전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일 큰 통일 전선문제는 타이완이 조국으로 돌아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도 애국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들도 조국을 사랑하는데 이는 사회주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회주의 조국이 건립된 후 비록 지난했으나 그들은 군세계 견디어냈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과거

에는 확실히 기시를 받고 다른 사람보다 한 등급 낮았는데 조국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들이 피부로 느낀 감수이다.

통일전선의 대상은 그 이름대로 아주 명확하다, 모든 연합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연합하고 범위는 좁아서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을수록 쉽고 이익도 크다.

통일전선의 성질은 혁명적 애국통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사회주의 노동자와 애국자의 연맹이다.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지고 광범위한 성질을 갖게 된다.

『새 시기 통일전선은 사회주의 노동자와 애국자의 연맹이다』 (1979년 9월1일) 『등소평이 통일전선을 논함』 제 158-159쪽

우리나라 혁명적 애국 통일전선은 역사상 가장 큰 광범성을 갖고 있다. 이 전선은 사회주의와 애국주의 기초에서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는 진일보로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통일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나라 통일전선과 인민정협이 사회주의 제도 우월성을 발휘하는 실천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하여야 한다.

『통일전선과 인민정협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발휘하는데 공헌을 하여야 한다.』 (1980년 8월28일) 『등소평이 통일전선을 논함』 제239쪽

어떤 사람이 사회주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 조국은 추상적이란 말인가?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의 새 중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사랑하겠는가? 홍콩, 마카오, 타이완, 해외의 애국동포들에게 모두 사회주의를 옹호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주의 새 중국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영도하의 매 공민, 매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더 높다.

『사상전선상의 문제에 대한 담화』 (1981년 7월17일) 『등소평문선』 제2권 제392쪽

오년 이래, 특히는 중공 11기 3중전회 이후, 통일 전선의 사업과 인민 정협의 공작은 크나큰 발전을 가져 왔으며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전에 그 어떠한 시기보다 더 광범하였으며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애국자 및 조국 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한 제일 광범한 애국통일 전선이며 그 앞길은 원대하고 큰 작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우리는 반드시 "장기공존, 상호감독", "간담상조, 영육공존"의 방침을 견지하고 각 민주당파, 무당파 민주인사 및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당 외 친구들과 협작할 것이며 공통으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모습, 애국통일 전선의 새 모습, 인민

정부 사업의 새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애국 통일 전선의 전경은 원대하며 큰 작용이 있을 것이다.』 (1982년 11월 24일), 『등소평 통일전선』 제250쪽

아편전쟁 이후 한 세기동안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기시와 굴욕을 당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이후 중국의 형상을 개변하였으며 오늘의 형상은 청 정부도 아니고 북양군벌도 아니고 짱씨부자가 창조한 것도 아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형상을 바꾼 것이다. 중화의 아들딸들은 어떤 복장을 입든지 어떤 입장에 서든지 중화민족이란 한가지로 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 개 나라, 두개 제도』 (1984년 6월 22일, 23일), 『등소평문선』 제3권 60쪽

나는 홍콩, 마카오동포들이 전국 각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국가 면모를 보고 국가의 변화를 보기 바란다, 우리에게 이런 구호가 있지 않는가. 『중화민족대단결만세』. 민족의 입장에 서기만 하고 민족이란 대국을 수호하려고만 한다면 정치관점을 갖던지, 공산당을 욕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단결해야 한다. 희망컨대 홍콩동포들도 같이 단결하고 함께 노력하여 홍콩의 번화와 온정을 수호하고 1997년 정권이 순리롭게 넘어오는데 공헌해야 한다.

『홍콩의 번영과 온정을 유지하자』 (1984년 10월3일) 『등소평문선』 제3권 제76쪽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신들 영씨가족은 우리나라 민족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공로가 있었으며 중화민족에게 공헌을 하였다. 민족공업의 발전은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추동한다. 그 속의 자본주의 소극적 요소는 다른 일이다. 이번 당신들 친인들 간의 만남은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 대단결의 체현이며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쟁취해야 한다.

당신들은 재간이 있고 지식이 있기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당신들은 아는 사람과 친구들이 많기에 그들과 우리나라의 사실을 많이 이야기하기 바란다. 그들이 돌아와 보게끔 하고 한번 보고 모자라면 몇 번 더 보면 비교적 잘 이해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일부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후 점차 개선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 2000년도에 종류사회를 건립하는 것이다. 너무 큰 이상을 가져도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실제에 맞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한 종류사회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다. 우리는 사회주의 나라인 만큼 국민수입 분배가 합당하여 너무 부유한 사람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활이 좋게끔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 되면 우리의 국민생산 총액이 일만 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이런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힘은 커지고 그때 되면 일을 하여도 지금처럼 어려움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생산총액의 5퍼센트 즉 500억 달러를 교육에 투자한다면 지금의 78억 달러보다 넉넉할 것이다. 만약에 5퍼센트를 국방에 투자한다면 군비도 넉넉하다. 그러나 우리는 군력 경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총 수입은 국민의 생활환경을 편하고 좋게 하는데 쓸 것이며 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본 세기말의 기초 위에서 30년 내지 50년 시간이 더 지나면 일당 국민 생산총액이 두 배로 될 것이며 그때 되면 중국은 더 강대해 질 것이며 세계평화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해외 교포와 동포들이 모두 전망이 보이는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바란다.

우리는 독립자주 및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그 어떤 집단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와 교류할 것이고 모두와 친구로 될 것이며 그 누가 패권주의를 원하면 반대할 것이고 그 누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말을 하고 공정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국가의 정치 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정책은 좋은 결과를 보아 왔으며 우리는 끝까지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해외의 화교, 화인들이 돌아와서 보는 것을 환영한다. 첫째는 우리의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어떤 일들에 참여하여 힘을 다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나는 국외의 화교, 화인들이 우리나라의 건설 사업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쟁취하자』 (1986년6월18일), 『등소평문선』 제3권 161-162쪽

우리의 정책은 아직도 여전한데 외국에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재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격려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외국국적을 가졌어도 조국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은 두 국가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축활동에 참가한 화교, 화인, 타이완 홍콩 마카오동포여행단의 일부 성원들을 만날 때 한 말 (1977년9월29일)

많은 해외교포들은 장기간 거주국인민과 함께 거주국가의 경제와 문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하였으며 조국의 혁명과 건설 사업에 열정적인 지지를 주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거주국인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거주국의 법률을 지킬 것을 바란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화교들이 자원적으로 거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찬성하며 이미 소재국 국적에 가입한 모든 친구들도 중국인민의 친인이다. 우리는 그들이 소재국국가의 발전과 중국인민과 각 나라 인민의 우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

몇 년래, 많은 교포와 친구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인민의 우의와 상호요해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더욱 많은 교포들과 친구들이 중국에 돌아와서 보고 각국 인민들의 우의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

전국경축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화교, 화인, 타이완 홍콩 마카오동포들을

#### 위한 초대회에서 한 축사 (1977년 9월29일)

화교사무의 중요정책은 교포들이 자원적으로 주재국국적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다. 아세아국가 특히 동남아국가에 화교들이 비교적 많고 주재국은 이 문제를 비교적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화교들이 자원적으로 주재국 국적에 가입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가와 주재국과의 관계에 좋다. 하지만 주재국 국적에 가입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보류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강박해서 주재국 국적에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정책의 다른 한 면은 바로 교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화교와 주재국인민이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발전과 주재국우호관계와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얀마에서 양곤화교대표들을 접대할 때의 말 (1978년1월30일)

이번 우리 대표단의 일본공식방문은, 오늘까지 성공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발전관계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방면에서 두 나라 정부, 많은 일본친구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포들은 많은 일을 하였다. 이런 결과를 얻어서 매우 기쁘다. 우리가 좋은 국제평화 환경을 쟁취하고 네 개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표단은 아주 만족하고 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당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하여 친절한 문안을 전하며 매 대표분들에게 모든 교포들에게 이 문안을 전해주시기 바란다.

일본 방문시 여일 화교대표를 만난 다과회에서 한 말(1978년 10월25일)

중국과 태국 두 나라 인민의 장기간 교류에서 적지 않은 중국사람들은 태국으로 이주하여 갔다. 그들은 태국인민과 사이좋게 한 집안처럼 지냈으며 중국과 태국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에 친인 같은 깊은 감정을 증가시켰다. 현재, 그들 중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태국국적을 가졌으며 당시 인민과 융합되었다. 이는 기뻐할 현상이다. 우리나라 정책은 줄곧 화교들이 자원적으로 태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찬성하고 격려해왔다. 무릇 태국국적을 얻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들은 응당 태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중국국적을 계속 갖고 있는 화교들은 태국의 법률을 지키고 태국인민의 풍속관습을 존중하며 태국인민과 우호적으로 보낼 것을 희망한다. 그들의 정당 권리와 이익은 보장되어야 한다. 희망컨대 여태교포들은 계속 중국과 태국의 우의를 위하여 태국의 경제, 문화와 사회공익사업을 위하여 마땅한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

태국을 방문할 때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강화 (1978년至 11월8일)

중국과 태국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아주 좋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후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우리 두 나라와 인민사이의 우정은 시험을 받

아낼 수 있다. 여기 있는 각 대표들이 이 뜻을 모든 화교와 화상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두 나라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태국만곡에서 화교, 화인대표들을 만날 때 한 말(1978년11월9일)

콘스탄틴 자틀린

러시아 연방 국회 의원

독립국가 연방 및 동국인 연구소(CIS문제) 소장

## 러시아와 신생 독립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 재외동포

### ○ 주요 내용

1. 러시아 재외동포의 간략한 역사
2. 러시아 국경 밖에 거주하는 러시아 민족
3. 현재 해외 거주의 러시아인 문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담당하고 있는가
4. 러시아의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러시아와 외국의 국제협약
5. 러시아 민족의 현 상황

### ○ 부록 (Appendix)

1. 구소련 독립국가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러시아 국가 기관의 호소와 선언서
2.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현재의 국제 정책 (문서 목록)
3. 독립국가 연방 공동 계약서에 러시아 재외동포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문제 (문서 목록)
4. 러시아 재외동포의 권리와 자유와 관련, 독립국가연합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관, 사회단체 등이 발표한 문서 (문서 목록)

## 1. 러시아 재외동포의 간략한 역사

러시아 재외동포는 대부분 20세기에 형성되었다. 힘들고 비참한 사고에 의해 수백만 동포들이 모국을 떠났다. 재외동포들이 대규모로 형성되는 것은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서였다. 러시아의 문화와 전통이 단절되고 "적(赤)"과 "백(白)", 자기와 남,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 작가들과 철학가 분야로 러시아인들이 분할되었다. 러시아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이른바 "철학 선박"에 태워져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러시아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규모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국외 거주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제1기, 제2기, 제3기의 러시아 망명 파도가 생겼다. 제3기의 망명 파도는 예외적인 특성이 있으나, 대체로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소련 지도부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적이라고 보았다. 망명자를 배신자로 보았다. 마치 부인을 버린 남자와도 흡사하게 보았던 것이다. 집에서 도망나갔기 때문에 "나쁜 놈(소용 없는자)"이고, 더우기 돌아오지 않고 있으므로 두 배 더 나쁜 놈으로 망명자를 보았던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소련은 러시아 민족이 러시아 종교로부터 받은 지대한 정신적, 도덕적 덕목의 가르침을 도외시하고 이념을 최우선시하는 무신론을 보급 시켰다.

소련 붕괴 결과로 20세기 말 러시아 재외동포 수는 거의 4천만 명에 이르렀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의 소련 인구는 2억9천3백만 명이었다. 그 중 러시아연방에는 1억4천7백만 명이 거주했고, 발트 3공화국에는 9백만 명, 나머지 공화국에서 1억3천7백만 명이 거주했다. 소련 붕괴 후에 거의 5천만 명이 모국 밖에서 살기 시작했다. 당시 소련에서는 러시아 밖에서 3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러시아연방에는 1억2천만 명의 러시아 민족이 살고 있었다. 한 시간 만에 러시아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산 민족이 된 것이다.

세계 정의의 구제(메시아) 사상으로 보았던 공산주의의 실패는 소련 국민임을 느끼고, 러시아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국민들의 역사적 낙관론을 잃게 하였다. 공산주의 실패 후의 새로운 사상은 (consolidate idea) 형성되지 않았다. 각처에서는 광포한 개인주의, 경쟁과 성공 윤리(승배)가 난무했다. 이러한 개체주의는 러시아 "미르 (MIR, 러시아세계, 러시아공동체, '평화')"의 사상과 모순 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자기 정체성(self identification)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가장 먼저 우리가 거주하는 모국 러시아 연방을 흔들었다.

물론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우리 재외동포 정책에, 현재 러시아 디에스포라 정책의 내용에 많은 이론과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정치적 배려를 이유로 구체적

으로 디에스포라라는 개념에 아직 동의하지 않는 정치가와 학자가 있기 때문에 "디에스포라"라는 용어 대신 "재외동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개념상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러시아의 공식적인 법규나 문서 혹은 정부의 여러 행사,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입법기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구로서 "러시아연방국회 독립국가연방 및 재외동포문제 위원회 (State Duma's Committee on CIS and Compatriots Affairs)"가 있다. 필자는 최초의 러시아 두마 (하원의회)에서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제4대 러시아 연방 하원의회 본 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 2. 신 러시아 국경 밖에 거주하는 러시아 민족

현재 필자는 CIS문제연구소(디에스포라와 통합문제 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련 붕괴 후에 생겨난 모든 신생 독립국가들은 단일 민족의 전형적인 민족국가로 건설되었다. 때문에 새로 생긴 국가들에서 러시아인(민족) 혹은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언어 사용자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즉, 러시아로 망명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먼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는 문화적, 언어적으로 동화하고, 민족적으로 소멸되는 것에 동의하라는 요구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소멸 요구로 인해 모든 구소련 러시아인들은 일종의 광범위한 우울증과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물론 신생 독립국가의 사회경제적 형편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화국에는 산모의 사망률이 2배나 증가하였다. 구소련에 살던 모든 민족이 최근에 이러한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독립국가의 인구는 구소련인구와 비교하면 6백만 명 감소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루지야, 몰다비아, 발트 3국 등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제일 많은 인구 소실을 겪은 민족은 러시아 민족이다. 구소련의 영토에서 러시아 인구는 1천1백만 명 감소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미국, 유럽 등의 외국으로 약 50만 명 정도가 이주했고, 러시아인들의 사망수도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반영된 대규모의 러시아인 사망자 수의 증가는 러시아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광범위한 우울증과 침체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카자흐스탄 주 (카자흐 독립국가)의 1996년 1천명 인구 중, 러시

아인의 출생률은 카자흐스탄인들보다 2~3 배가 낮고, 사망수는 1.6배 높았다. 카자흐 민족의 인구상태도 소련시대보다 어려워졌지만 1천명 인구에서 1년에 8.5명이 증가하였다(소련시대에는 13.5명). 러시아인들의 인구는 1천명 중 7.4명이 해외 이주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소련 붕괴가 러시아 민족의 수적 감소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러시아 "미르(공동체)"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자면, 신생 독립국가들이 민족국가로 탄생함으로써 젊은 세대는 역사의 새로운 이상을 교육받게 되었고, 과거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은 단절되게 되었다. 현재의 새로운 역사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은 적(敵)이고 식민지의 착취자로 설명되고 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 학자, 노동자들이 1930년에서 1960년 사이에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산업,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고, 1950년대에는 미개척지를 농업사업에 추가시켜 현재의 카자흐스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책임자 중 러시아인의 비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다른 곳에서도 원주민들이 많이 고생했고, 러시아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역사적 변화에 의한 어려움은 비단 러시아인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민족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로 러시아 언어 사용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러시아 언어로 교육받고, 러시아어로 생각하고, 러시아어로 설명하는 원주민 대표자들이 독립국가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직장을 잃고 있다.

구소련 국토에서 새로 생긴 이들 민족국가들은 러시아인들의 태생적 의미를 무시한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 제국 시대에 겪었던 일종의 공포감을 러시아인에 대해 표출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민족국가의 지배층은 러시아인들이 이 새로운 민족 국가들의 방침에 대해 너무 천천히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소련시대 가지고 있던 민족적 압박에 대한 저항력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러시안 민족의 전통과 신화, 일상문화 등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아직도 각 나라에서의 새로운 정책의 규칙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규칙의 원리를 숙달하지 못한 채 이에 대한 자위의 방법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재외동포들은 자기 가치에 충실히 수 있는 생활의 영유,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대한 권리, 자손들의 모국어 교육 등을 위해 투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항의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현저한 편

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라트비아의 러시아인 및 러시아 언어 사용자들은 이에 비해 특별한 사례이다. 이들은 해당 정부가 수행하는 교육 개혁에 반대 항의하였다. 라트비아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말미암아 2004학년도(9월)부터 중학교 과정에서 러시아로 공부하는 가능성이 많이 줄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동화가 이루어지고, 민족적 자기 정체성과 동일성을 잊어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트비아 정부의 교육개혁이 러시아 언어, 러시아 문화를 지키려는 러시아 민족의 정치 활동을 촉진하였는데, 최근에는 "연합된 라트비아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라고 불리는 연대체가 라트비아 세임(국회)에 원내 단체를 조직했고, 유럽 국회에 (Europe Parliament) 의원도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대부분의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언어자들은 자기의 불행, 희망과 고통의 운명을 러시아와 맺고 있다. 1991년 러시아는 4천만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을 양산하고 말았지만, 이들 동포들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주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

### 3. 현재 해외 거주의 러시아인 문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담당하는가

러시아는 오랫동안 동포들의 규합체 조직에 협조해달라는 동포들의 요청과 부탁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1991년에 형성된 새로운 러시아도 재외동포의 운명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옐친 정부는 만일 새로운 독립 국가에서 러시아인들의 생활조건이 힘들어지면 러시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주장을 했지만 아무런 실행도 동반되지 않았다. 1991년 8월,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 민주파 의원들이 재외동포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해 첫 재외동포 대회를 조직하였다.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크렘린내의 사원 앞에 러시아 종교회의 족장(가장) 알렉세이가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단체들과 연합하여 신 러시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선언 준비를 했던 그날 러시아의 8월 쿠데타가 발발했다. 때문에 알렉세이의 선언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들을 수 없었다.

그 때 옛날 이주자들과의 화해를 위하여 첫 걸음을 했지만, 정부는 발트 3국, 피리드네스트리비아 등에서 각 신생 독립국가의 민족주의적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던 러시아인 사회단체들과의 교류는 해롭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은 민족적 차별의 결과로서 망명자들과 피난민들이 대거 러시아로 이주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

을 위한 청을 조직했고 관련 국제 협약 등에 비준했다.

러시아인들이 대규모로 러시아로 이주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재외동포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1994-1995년도에 러시아 정부는 재외동포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입장을 밝혔다. 1999년 5월 24일 러시아 대통령이 연방 법률 "재외동포에 관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정책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에 서명한 것이다.

러시아의 재외동포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이전의 법률로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1994년 8월 11일 발표한 명령 #1681에 따라 정부가 1994년 8월 31일에 공포한 "러시아의 재외동포에 관한 국가정책의 중요 방향 규정" #1064가 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994년 12월 11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당국 "재외동포위원회" 법규를 공포했고 본 법규에 따라 재외동포위원회가 독립국가연합과 발트 3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재외동포가 긴급히 요구하는 여러 보호 문제를 수행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구소련 가맹공화국 - 신 독립국가에서 러시아인과 러시아 언어사용자들을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러시아인들을 법적으로 이주시키는 정책 (mechanism), 러시아 언어, 문화에 대한 차별, 러시아 언어로 공부하는 민족학교 폐쇄의 정책, 원주민 출신이 아닌 공무원들을 책임있는 직책 특히, 정부 기관에서 추방 하는 정책, 러시아인들 단체를 해산시키고 단체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정책,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던 러시아인들의 운명, 연금을 받는 러시아 민족 군인들의 운명, 러시아 종교 신자들의 운명에 대한 걱정을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국회)가 공포한 많은 법률 문서에서 볼 수 있다 (부록 1 참조). 러시아 연방 국회가 1995년 12월 8일 공포한 "러시아 디에스포라 지원"과 러시아 재외동포 보호 선언서" (#1476-1)가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을 정하는 법규였다. 이어 1995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예산 항목이 정해졌다.

1995년에는 러시아 국회에 부속된 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95년 4월 5일 러시아연방의회 하원 의회 결의 # 636-1 "국회부속 재외동포위원회").

재외동포위원회는 의회의 사전조사 기구(임시의회)로서 국회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등을 사전 조사하고 재외동포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본 위원회는 러시아 국회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하였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독립국가연합성(부)이 재외동포 문제를 담당하였는데, 이 부처에서 국회의 재외동포위원회 소사무국이 활동하였다. 거꾸로 올라가면, 1992년부터 러시아 재외동포 망명 문제를 다루는 동포 이주청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는 독립국가연합성(부)과 이주청이 해산되고, 이 두 곳이 관할하던 업무는 "연방, 민족 및 망명 문제성(부)"으로 옮겨졌고 2000년 해체되었다. 그 후,

2004년 여름 내무부 내에 이주청이 다시 조직되었다.

2000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정부 #785 규정은 연방 예산에서 할당되는 독립국가연합과 발트 3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관한 방안을 공포했다. 본 규정은 예산에서 나오는 재정이 우선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사용될 것을 공포하는 내용이었다.

1. 독립국가연합과 발트 3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사회단체들과 (이하 재외동포라고 한다)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
2. 독립국가연합 국가와 발트 3국에서 러시아 언어로 공부하는 학교와 대학교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들과 책, 서류, 필요 기계 등을 구입, 수송하고 전달하는 목적
3. 러시아 내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과학 분야의 행사, 또는 의료와 건강 관련 사업의 실시 목적
4. 재외동포들이 모국 언어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
5.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지내는 재외동포에게 무상으로 인도적인 물질 원조를 하는 목적
6. 재외동포 기준의 권리와 자유 보호에 도움이 되는 목적.

2000년부터 2002년 동안 이러한 여섯 가지 방향으로 재외동포를 위해 활동하는 취지의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담겨있다.

2002년 5월 22일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법규 #330으로 2000년 10월 16일 발표한 규정 "연방 예산에서 할당하는 독립국가연합과 발트 3국 거주 재외동포 조치에 사용하는 방안"을 폐지했다. 대신에 "연방 예산에서 할당하는 재외동포들을 원조하는 조치에 사용하는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의 공포와 함께 국가 예산에서 재외동포를 위해서 할당하는 돈의 사용 원칙과 방향은 정부의 재외동포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동포에 대한 지원 문제는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1996년 6월 15일 발표된 "러시아연방 국립 민족정책 개념"의 명령 #909, 러시아 연방 정부가 2001년 2월 9일 공포한 "러시아연방 국경 부근 협력 개념" #196-p, 2002년 11월 1일 공포된 "러시아 교육서비스 지원 조치 계획" #1536-p, 러시아 연방 정부가 2002년 11월 8일 공포한 "러시아 재외동포 지원 주요 방향" #1663-p 등 규정이 있다.

#### 4. 재외동포 권리 보호를 위한 러시아와 외국 간의 국제협약

위에 설명한 러시아의 동포 관련 국내 법규는 재외동포의 인권 보호와 소수민족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법적 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독립국가연합 내에 설립하며, 또한 러시아가 신생 독립국가 전 소련 가맹공화국들과 양국 계약서를 체결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이다.

소수민족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수민족은 어떤 국가에서도 수적으로 원주민보다 적은 민족으로서 해당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은 민족이다. 이러한 소수민족은 주류 다수 민족과는 민족적으로, 인문적으로, 언어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자기의 문화와, 전통 및 언어를 보호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민족이라는 용어는 아래 세 가지의 특징을 종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 다른 나라의 지도적 위치의 주류 민족에 대해 자기 정체성을 표시한다. 대부분 거주국은 소수민족의 의견을 국제무대에서 보호한다.
2. 거주하는 국가에서 사회적 지위 상승에 한계 (주류 민족 이상이 되지 못하는)를 갖고 있다.
3. 거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없다.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국제법은 인간의 권리와, 단체(조직, 집단) 권리의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이를 보증한다. 국제적 보증이란 것은 어떤 국가나 국가들 조직이 국제 법률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보하는 것이다. 국민적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권,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인종, 민족, 언어, 종교 관계없이 부여하고, 거주 사회에서의 자유권을 보유한다. 그 보호 대상은 민족의 집단(조직)이 아니고, 민족을 대표하는 각 인간의 권리이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인권만 보호해서는 소수민족의 문화, 전통을 보호하지 못한다. 집단의 권리 개념 즉, 소수민족을 집단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은 1980년대 말에 등장하였다. 동유럽 국가의 변화가 이러한 관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최근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국제 제도는 부록 2로 실린 법규에 잘 나타나 있다.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러시아 재외동포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법규는 독립국가연합에서 공포하였고 러시아 정부가 비준했다. 관련 문서의 목록은 부록 #3에 있다. 독립국가연합 내에 활동하는 국제기관 관련 협정서는 목록 #4에 실었다.

#### 5.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재외동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약을 암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를 공식 방문하여 재외동포 대표들과의 만남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2001년 10월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재외동포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재외동포에 관한 일을 러시아 정부는 너무나 미미하게,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하였다. 물론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다. 아직도 범적인 공백도 있고, 공포된 많은 법률은 불완전하고, 분규 분란하고, 또 실행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지난 수년 간의 정부의 재외동포위원회 활동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최근에 본 위원회 활동이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요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명확하고 명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우선 과제로서 먼저 해결해야하는 사항들을 밝혀두고자 한다.

오랫동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대처의 비효율성의 문제는 정부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관료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재외동포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리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이 너무 많아 정부기관, 당국 실무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 빚어진다. 예부터 '유모가 많으면 오히려 아이는 방치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러시아에는 재외동포의 제대로 된 유모가 없다. 그러므로 재외동포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하나를 설립해야한다".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이 있은 후 많은 논란 끝에 재외동포 대회가 끝난 5일 뒤, 2001년 10월 16일 대통령의 "연방 집행권 구조문제"라는 명령이 공포되었다. 본 명령에 따라 당시에 재외동포문제를 담당했던 연방 정책 기구인 민족 및 이주 정책성은 폐쇄되었다.

본 성의 기능은 외무부, 내무부, 경제, 무역부로 분배되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명령 받았다. 이주문제는 내무부에 옮겨졌다. 3년이 흐른 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회의론이 현실로서 드러났다. 외무부가 재외동포 문제를 포괄할 수 없고, 또한 내무부(경찰)의 주된 일은 망명문제가 될 수 없다. 양 부처가 재외동포문제에 관한 업무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외동포문제와 재외동포 러시아인 이주 문제를 억지로 인력으로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한 손에 진두지휘, 관리를 할 지도부가 필요하다. 3개월에 한번씩 소집되어 회의하는 재외동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없다. 재외동포 대표자들과 모스크바 루즈코프 시장이 수차례 대통령께 재외동포 문제와 망명문제를 담당하는 연방 집행기구를 조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하는 신청서를 올린 바 있다. 현 러시아 연방 국무총리와 필자 역시 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몇 달 상태를 보면 러시아 정부 기관에서는 재외동포에 관한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하다. 현 러시아 하원의회에서 재외동포위원회의 활동은 아직 시작도 못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하원의회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니까.

최근에 러시아 국가 통치 개혁 실행의 과정 중에서 정부의 재외동포 위원회 활동은 끝났고 새로운 재외동포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고 있다.

몇 달 전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 보호 활동은 연방 정부와 의회에 한해서만 활동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지방(주, 공화국 등)기관은 재외동포 문제 관련 집행 권한에서 제외되었다. 러시아 연방 재외동포 법률 하에서는 지방기관은 재외동포들에 관한 활동 권리를 받았었다. 이런 상태가 러시아 재외동포 정책 실행에 비참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꿈던 재외동포 보호·지원의 3분의 2는 지방정부의 (특히 모스크바시) 재정이다. 2004년 연방 예산의 재외동포 보호 지원에 쓰인 재정규모는 2억 5천 2백만 루블 (8백 63만 미국 달러)이고, 이 중 모스크바시는 1억 5천 8백만 루블 (5백 41만 미국 달러)을 지원한다. 모스크바시는 러시아 언어 교육을 (특히 발트 3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과 재정 부담의 형태로 참가한다. 모스크바는 독립국가 연합국가에 거주하는 노병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흑해 해군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법적으로 지방 정부가 재외동포 관련 프로그램에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된 상태다.

러시아 정부는 금년 가을 (다가오는 몇 주내에) 연방정부는 지방 정부가 재외동포 문제에 관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재외동포에 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현실에서, 재외동포란 용어는 이론적 의미의 역할로서만 느껴진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1995년에 러시아 국회에서 독립국가연합과 재외동포들과의 교류 위원회가 조직한 제1회 러시아 재외동포 대회를 준비할 때 정의된 재외동포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 대회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 발표하였는데, "러시아의 재외동포는 스스로가 재외동포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러시아 외의 신생 독립국가에서

민족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구소련에 거주하였던 민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러시아 국경 밖에서 거주하는 러시아인, 따따르 민족, 아르그 민족, 바슈키르 민족들이 러시아 동포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다민족 국가 소련 붕괴의 특별한 함의를 설명하고 있고, 러시아와 구소련 땅에 있어서의 재외동포에 관한 과도기 상황의 성격을 느끼게 한다.

유감스럽지만, 러시아의 재외동포에 관한 국가 정책의 앞길, 운명에 많은 걱정을 필자는 하고 있다. 본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러시아 디에스포라 뿐 아니라 러시아 전체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러시아 재외동포들 간의 상호 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다. 마태복음서 12조 시25에 따르면 "속에서 갈라진 국가에 공고한 존속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부록>

부록 1. 구소련 독립국가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러시아 국가기관 호소와 선언서

1.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 1992년 7월 17일 공포한 “발트 3국 인권 문제” 성명서 № 3326/1-1
2.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 1992년 7월 17일 공포한 “에스토니아 인권 문제” 규정 № 3326/1-1
3.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라트비아 공화국 최고 소비에트에 보낸 호소문. 1992년 12월 23일
4. 러시아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1993년 7월 1일 공포한 “에스토니아 공화국에서 인권 침해 관한 조치” 규정 № 5311-1
5. 러시아 연방 국회 독립국가 연합 및 재외동포 교류 위원회의 “1994년 4월 12일 페트로파вл롭스크에 러시아 국민 브. 프. 수프루눅 체포에 관한” 설명서 1994년 4월 22일
6. “라뜨비아공화국 공민권 법률 채택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1994년 7월 6일 성명서 № 159-1ГД
7. 러시아 연방 의회 라뜨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에스토니아 공화국 국회, 대통령 및 정부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의회 호소문의 규정. 1995년 4월 12일 № 686-1ГД
8. 리투아니아 공화국에서 러시아 국민 그룹을 강제추방 준비하는 문제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의 리투아니아 공화국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 1995년 1월 18일 № 468-1ГД
9. 러시아 연방 의회 에스토니아 공화국에 경제 제재 규정. 1995년 3월 24일 № 621-1 ГД
10. 러시아 연방 의회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에스토니아 공화국 국회, 대통령 및 정부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의회 호소문. 러시아 연방 의회 1995년 4월 12일 규정을 통과. № 686-1ГД
11. 러시아 연방 국회 독립국가연합 및 재외동포 교류 위원회의 “1994년 4월 12일 파블로다르 시에 시베리아 까자끄 부대 이르띄슈 선 대장 앤. 이. 시바노프 체포에 관한” 성명서 1995년 5월 6일.
12.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러시아국민과 러시아 동국인들 인권 침해에 관한 러시아 연방국회의 설명서. 1995년 5월 26일
13.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의원 독립국가연합 및 재외동포문제 위원회 위원들에게 비자 (사증) 발행 거부 관련한 설명서. 러시아 연방의회 규정으로 1995년 6월 23일 통과되다. № 931-1ГД
14. 세비스토플 시의 러시아단체 강제 해산 과 러시아 언어 신문 폐쇄 시도에 관한 러시아 연방의회 설명서. 러시아 연방국회 규정으로 1995년 10월 6일 통과. № 1172-1ГД
15. 유엔 50주년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설명서. 러시아 연방 의회 규정으로 1995년 10월 18일 통과. № 1201-1 ГД
16.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러시아 국민 국제 인권법 침해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설명서. 러시아연방 의회 규정으로 1995년 11월 17일 통과. № 1338-1ГД
17. 러시아 연방 의회 1996년 3월 22일 통과된 규정, 러시아 연방 의회의 라트비아 대통령에 대한 설명서. № 190-11ГД
18. 러시아 연방 의회가 1996년 3월 22일 리투아니아 공화국 국회에 보내는 설명서. № 191-11ГД

19. 러시아 연방 의회의 에스토니아 공화국에서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동포들 인권 침해 문제로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설명서. 1996년 3월 22일. № 192-11ГД
20. 에스토니아 공화국에서 러시아 종교회 신자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설명서. 1996년 3월 22일. № 193-11ГД
21. 라트비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차별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설명서. 1996년 6월 21일, № 501-11ГД
22. 러시아연방 의회 규정 라트비아 공화국과 에스토니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러시아 대통령 선거하는 헌법적 권리에 관한 설명서. 1996년 6월 7일, № 452-11ГД
23. 에스토니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차별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께 보내는 설명서. 러시아 연방의회 1996년 6월 21일 규정 통과, № 501-11ГД
24.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러시아인들을 계속 박해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독립국가연합 및 재외동포 교류 위원회 설명서. 1996년 9월 18일, № 3.17.-1106ГД
25. 러시아 연방 국회 규정 라트비아 공화국 의회에서 이른바 라트비아 점령 선언서에 관한 러시아 연방 국회 설명서. 1996년 10월 4일, № 652-11ГД
26. '라트비아 공화국에서 정치적 재판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호소문. 1996년 10월 18일, № 710-11ГД
27. 러시아 국회 규정 라트비아 공화국 기관이 아. 루비스 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럽 연방 의회와 국제의회 동맹에 보내는 러시아 국회 호소문. 1996년 12월 18일, № 942-11ГД
28. 리투아니아에서 앰. 뷔러까비추스 와 유. 예르말라위추스 역사 학자 교수 재판에 관한 유럽 안보와 협력 기관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 국회의 호소문. 1997년 2월 5일, № 1066-11ГД
29. 리투아니아에서 앰. 뷔러까비추스 와 유. 예르말라위추스 역사 학자 교수 재판 관한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회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 국회의 호소문. 1997년 2월 5일, № 1066-11ГД
30. 러시아 연방 의회 규정 1999년을 푸쉬키의 기념회 공포에 관한 독립국가연합 대통령들과 의회, 라뜨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대통령들과 의회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 의회 호소문. 1997년 5월 15일, № 1429-11ГД
31. 러시아 연방 의회 규정 아.프. 루비스 방면에 관한 라트비아 의회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 의회 호소문, 1997년 6월 4일, № 1466-11ГД
32. 러시아 연방 의회 규정 리가시 승리 기념관 폭방 관한 러시아 국회 설명서 1997년 6월 24일, № 1641-11ГД
33. 라트비아 공화국에서 러시아 국민 브. 이바노브를 재판하는 것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설명서. 1997년 9월 12일, № 1704-11ГД
34. 러시아 연방 의회 규정 러시아 국경 근방에 구성하는 군사 연습에 관한 러시아 연방 의회 설명서, 1997년 9월 26일, № 1756-11ГД
35. 러시아 연방 의회 규정 미국과 라트비아 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에스토니아 공화국이 파트너쉽 (partnership) 선언서 서명에 관한 러시아 연방 국회 설명서, 1998년 1월 23일, № 2143-11ГД
36. 라트비아 공화국 정권 세계에서 인정된 인권 침해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께 보내는 러시아 연방 의회 호소문. 1998년 3월 6일. № 2261-11ГД
37. 라트비아 공화국 정권 세계에서 인정된 인권 침해 관한 독립국가연합 의회, 유럽 연합의회, 국제의회동맹에 보내는 러시아 연방 의회 호소문. 1998년 3월 6일. № 2261-11ГД
38. 러시아와 라트비아 공화국 관계 러시아 연방 의회 설명서. 1998년 3월 6일, № 2261-11ГД